

# 映像콘텐츠 關聯立法의 改善方案

- 映像著作物을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Video  
Contents-Related Laws

2005. 11.

연구자 : 현 대 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Hyeon Dae-Ho

## 국문 요약

최근 영상콘텐츠 시장의 급성장과 영상산업의 발달은 영상저작물에 관련된 입법의 체계적·종합적인 개선을 요구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영화와 비디오물에 관련된 입법체계의 복잡성과 그 규율내용의 모호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영상저작물의 입법체계와 관련내용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저작권법’의 영상저작물에 관한 조항, ‘영화진흥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비디오물에 관한 조항 및 ‘영상진흥기본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입법을 마련하고자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영상저작물의 보호를 규율하는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영상화계약을 보충하고자 하고 있으나, 관련내용이 미흡하여 독일의 저작권법처럼 보다 강화된 내용의 입법이 요구됨을 지적하였다.

셋째, 영화의 유통을 규정하고 있는 ‘영화진흥법’은 교육영화 등의 경우에 사업자에 의한 자율등급부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이 필요하고, 또한 연소자라는 개념 대신에 18세미만의 자를 청소년으로 변경하는 개선이 요구된다. 비디오물의 유통을 규정하고 있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도 ‘영화진흥법’과 유사한 내용의 개선이 요구되며, 아울러 비디오물의 등급보류제도를 삭제하여 헌법에 부합하도록 함이 필요하다.

넷째, 영화와 비디오물에 관련된 산업진흥은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하여 그 지원방법과 지원대상을 특정하여 입법화하여야 하며, 관련된 진흥기구도 일원화함이 요구된다.

※ 키워드: 영화, 비디오, 영상저작물,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법, 청소년보호법

## Abstract

Recently, as video content markets show sharp growth with the development of video industry, it is required to improve cinematographic works-related laws in a systematic and integrated way. In particular, we need to simplify complicated legal systems governing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nd to remove the vagueness of the relevant provisions. Accordingly, this study presents the policy measures to improve the current cinematographic works-related laws and other related provisions.

First, it proposes policy measures to integrate into a single Act the provisions of cinematographic works in the Copyright Act, the provisions of video products in the Promotion of the Motion Pictures Industry Act and the Sound Records, Video Products, and Game Software Act, and the provisions of the Framework Act on the Video Industry Promotion.

Secondly, the Copyright Act, which includes the protection of cinematographic works, adopts the special cases concerning cinematographic works to supplement the provisions of cinematization contracts, but it is not yet up to the mark. The Copyright Act should be amended to more activate cinematization contracts as the Copyright Act of Germany does.

Thirdly, the Promotion of the Motion Pictures Industry Act, which contains the provisions concerning the distribution of movies, should be amended to allow movie enterprisers

to autonomously rate their education movies, etc., and to change the term 'minor' in said Act to 'youth below the age of 18 years'. Also, the Sound Records, Video Products, and Game Software Act, which includes the distribution of video products, needs to be amended as in the Promotion of the Motion Pictures Industry Act, as well as to delete its provisions on the deferment of classification for video products to make it 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Lastly, it is required to specify the methods and objects of assistance necessary to promote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related industries in a more concrete and detailed way, as well as to unify the relevant promotion organs.

※ **Key Words :** movies (motion pictures), videos, cinematographic works, Korea Media Rating Board, Promotion of the Motion Pictures Industry Act, Juvenile Protection Act

## 목 차

국 문 요 약 .....	3
Abstract .....	5
제 1 장 서 설 .....	11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1
제 2 절 연구의 범위 .....	12
제 2 장 기초분석 .....	13
제 1 절 개 관 .....	13
제 2 절 외국의 입법례 .....	13
I. 베른협약 .....	13
II. 미 국 .....	14
III. 독 일 .....	15
IV. 일 본 .....	17
제 3 절 영상저작물에 관한 입법체계 .....	18
I. 영상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입법 .....	19
II. 영상저작물의 유통에 관한 입법 .....	19
III.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입법 .....	20
IV. 문제점과 개선방안 .....	21
제 3 장 영상저작물의 보호 .....	23
제 1 절 개 관 .....	23
I. 영상저작물의 개념 .....	23
II. 영상저작물의 발달 .....	25
1. 영화의 역사와 발전 .....	25

2. 영화와 비디오물 등의 관계 .....	26
Ⅲ. 저작물의 영상화와 계약 .....	27
1. 저작물의 영상화와 그 대상 .....	27
2. 영상화계약 .....	28
제 2 절 영상저작물의 성립요건 .....	34
I. 문학, 학술 또는 예술에 속해야 한다. ....	35
II.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이어야 한다 .....	36
1. 독창성 .....	36
2. 일정한 형식으로 객관화될 것 .....	37
3. 영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표현물에 해당될 것 .....	38
제 3 절 영상저작물의 권리귀속과 내용 .....	39
I. 영상저작물의 귀속 .....	39
1. 저작권자와 영상제작자와의 권리관계 .....	40
2. 영상제작자와 실연자와의 권리관계 .....	40
II. 영상저작물의 권리와 내용 .....	41
1. 저작자의 권리 .....	41
2. 영상제작자의 권리 .....	41
3. 실연자의 권리 .....	47
III.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	47
IV. 문제점과 개선방안 .....	48
제 4 장 영상저작물의 창작, 이용 및 유통 .....	51
제 1 절 개 설 .....	51
제 2 절 영 화 .....	52
I. 영화의 제작 및 수입 .....	52
1. 개 관 .....	52

2. 종래 영화제작업의 등록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	53
II. 상영등급분류 .....	53
1. 개 관 .....	53
2. 등급분류와 그 목적 .....	55
3. 등급분류의 종류와 그 기준 .....	55
III. 영화의 상영 .....	65
IV. 등급분류기관 .....	66
1. 개 관 .....	66
2. 영상물등급위원회와 헌법재판소의 판단 .....	69
3. 문제점과 개선방안 .....	71
제 3 절 비디오물 .....	72
I. 영업의 신고 또는 등록 .....	72
1. 개 관 .....	72
2. 종래 등록업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	74
II. 등급분류제도 .....	75
1. 개 관 .....	75
2. 등급분류의 종류와 그 기준 .....	77
3. 등급의 표시 .....	79
III. 문제점과 개선방안 .....	79
제 5 장 영상산업의 진흥 .....	81
제 1 절 개 설 .....	81
제 2 절 영화산업 .....	82
I. 진흥시책·진흥기구·진흥금고 .....	82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82
2. 영화진흥위원회 .....	83
3. 영화진흥금고 .....	84

II. 영화의 제작진흥 .....	84
1. 추천영화 .....	85
2. 프로젝트영화 .....	85
3. 단편영화 .....	85
4. 시나리오 .....	86
III. 영화배급(또는 판매)의 진흥 .....	86
IV. 영화상영의 진흥 .....	86
V. 그 밖의 진흥조치 .....	87
1. 인재양성 .....	87
2. 연구·합리화 및 개혁의 진행 .....	87
3. 영화의 의무상영제도 .....	87
VI. 문제점과 개선방안 .....	89
제 3 절 비디오산업 .....	90
I. 개 관 .....	90
II. 판매의 진흥 .....	90
III. 대여의 진흥 .....	91
IV.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 .....	91
V. 문제점과 개선방안 .....	92
제 6 장 결 론 .....	93
◆ 부 록	
독일의 영화진흥법 .....	97
참 고 문 헌 .....	145

## 제 1 장 서 설

### 제 1 절 연구의 목적

최근 우리 나라에서는 영화, 비디오, 음악 및 게임 등의 콘텐츠 관련산업이 비약적으로 발달하고 있으며 해외시장에서도 급격한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각국에 있어서도 영화는 문화적·경제적 파급효과가 중시되어 국가차원에서 관련산업을 지원·육성하여 왔고 국제적으로도 영화의 보호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영화는 보통 극장을 통하여 유통된 후에 테이프나 CD 등에 담긴 비디오물의 형태로 유통된다. 그래서 영화는 극장이라는 공공장소에서 상영되는 경우와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에서 이용제공되는 경우로 나누어지고, 이와 같은 유통방법의 차이는 해당 콘텐츠의 유통규제와 산업진흥에 대한 입법에도 미묘한 차별화를 가져온다.

우리 나라의 경우 영화와 비디오물은 저작권법에서 영상저작물로 보호하고 있고, 영화와 비디오물은 그 유통방법의 차이에 따라서 영화의 경우 영화진흥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비디오물의 경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이라 한다)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입법체계는 최근 영상콘텐츠 시장의 급성장과 영상산업의 발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즉 우리 나라의 경우 영상물에 관련된 입법체계의 복잡성과 입법내용의 모호성 등은 영상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급변하는 영상콘텐츠 시장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어렵게 한다. 또한 VOD(Video-on-Demand) 방식에 의한 영화의 유통에 대하여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도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다. 따라서 올해 정부와 국회는 영상저작물의 보호, 유통 및 산업진흥에 관련하여 종합적인 입법방안을 도출하고 관련입법의 체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상황하에 본 연구에서는 영화와 비디오물의 보호, 유통 및 산업진흥에 대한 입법체계와 입법내용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입법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의 범위

이 연구에서 범위의 설정은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첫째, 여기서 영상콘텐츠라 함은 통상 영상저작물(또는 시청각저작물)과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아니하는 단순한 연속적인 영상형태의 표현물도 포함하지만, 연구의 편의상 영상저작물에 한정하여 다룬다. 즉 영상콘텐츠 중에서 영상저작물에 관한 입법개선방안의 연구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자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영상진흥기본법에서 영상물과 영상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sup>1)</sup> 저작권법, 영화진흥법 및 음비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상저작물, 영화 및 비디오물의 개념보다도 광의의 개념에 해당되며 이와 같은 포괄적인 개념의 설정은 적어도 산업진흥과 관련해서는 적합한 용어에 해당된다.

둘째, 여기서는 연구목적에서 밝힌 것처럼 영상저작물 중에서 영화와 비디오물의 보호, 유통 및 산업진흥에 한정하여 다루고자 하며, 영상저작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에 대하여는 다루지 아니한다.<sup>2)</sup>

- 
- 1) 영상진흥기본법에서 “영상물”이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테이프·디스크 기타 유형물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를 의미한다고 하고, 또 이 법에서 “영상산업”이라 함은 영상물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 및 그 기술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 2) 현행 음비계법에서는 영상저작물의 한 유형으로 게임물의 유통과 산업진흥을 규정하고 있다. 올해 음비계법의 분법화 방안에서는 게임물에 대하여 별도의 독립된 입법(“게임물 및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 제 2 장 기초분석

### 제 1 절 개 관

이 연구에서는 앞에서 밝힌 것처럼 영상저작물의 보호, 유통 및 산업진흥에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 이들 영역에서 영화와 비디오물은 입법체계가 복잡하고 규율하고 있는 내용도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또한 영화의 새로운 유통방법, 즉 VOD방식으로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이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가 문제되고 있다.

영상저작물과 관련된 입법체계의 분류는 크게 3가지의 분야(영역)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영상저작물의 보호에 관련된 입법으로 각국의 저작권법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영상저작물은 일찍부터 ‘어문 및 예술저작물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이하 ‘베른협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보호가 구체화되어 왔다. 우리 나라와 독일의 경우 저작권법에서 영상저작물을 독립된 장 또는 절로 보호하고 있다. 둘째는, 영상저작물의 유통에 관련된 입법으로 독일의 청소년보호법과 우리 나라의 영화진흥법, 음비게법 및 청소년보호법이 여기에 해당된다. 셋째는, 영상저작물에 관련된 산업진흥에 관한 입법으로 독일의 영화진흥법과 우리 나라의 영화진흥법 및 음비게법이 여기에 속한다.

### 제 2 절 외국의 입법례

#### I. 베른협약

베른협약은 영상저작물(choreographic works)과 가장 긴밀한 관련성을 가진 국제협약에 해당되고, 이 협약은 거의 모든 무역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자국법에 의하여 저작물(영상저작물과 음반 등을 포함)을 보호할 수단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협약은 영화저작물(cinematographic

works)에 대하여도 명시적으로 문학·예술저작물에 포함시키고 있는데,<sup>3)</sup> 이 협약에서 영화저작물은 일반저작물과 달리(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50년)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영화저작물을 공중에 제공한 날로부터 50년 후 또는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영화저작물이 제작된 후 50년 후에 소멸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sup>4)</sup> 또한 이 협약은 영화저작물을 원저작물로 보호하고 영화저작권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sup>5)</sup>

## II. 미 국

미국에 있어서 영상저작물에 관련된 연방법은 영상저작물의 보호(저작권법)와 영상저작물의 보존(국가영상물보존법) 등에 관련된 몇 개의 조항외에는 대부분 주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먼저, 미국의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과 관련해서 시청각저작물(audio-visual works)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그 하위개념으로 영화(motion pictures)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영화와 기타 시청각저작물을 저작권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sup>6)</sup>

다음으로, 미국에서 영화 및 비디오는 극장 등 전통적 배포방법 이외에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배포되고 있는데, 미연방법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보급과 관련하여 전신, 전화, 라디오 즉 통신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제47장에서 VOD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와 같은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물의 보급은 일반 통신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sup>7)</sup> 영화와 비디오에 대한 전통적인 오프라인의 유통방식은 대부분 주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는데, 비디오물의 유통은 연방행정규칙에 의하여 비디오물의 제작과 관련하여 음란 비디오물 등의 제작자에게 그 비디오물의 제목 또는 제작자의 다른 작품과 구별할 수 있는 표지, 제작연도 및 주소를 부착하도록 하고 제작자가 기관인 경우에는 비디오

---

3) 베른협약 제2조제1항

4) 베른협약 제7조제2항 참조

5) 베른협약 제14조의2 제1항

6) 17 U.S.C. sec. 102

7) 47 U.S.C. sec. 522.

물에 대한 기록유지의무자의 명칭, 지위, 영업소 등의 설명서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sup>8)</sup>

마지막으로, 미국은 영상산업에 대하여 시장의 자유경쟁을 통하여 발전하는 것을 고수하고 있어서 연방차원에서 관련산업을 위한 독자적인 진흥법은 가지고 있지 아니된다. 다만, 연방법 차원에서 영화제작을 지원하고자 해안경비대의 임무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 영상물의 제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sup>9)</sup> 200달러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비용의 지급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10)</sup> 또한 미국의 저작권법으로 흑백 영상물의 채색화, 형식변경 등의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영상저작물의 형식 등의 변경을 금지하는 국가영상물보존법(National Film Preservation Act)을 마련하고 있다. 주차원에서 캘리포니아 주가 2000년에 “캘리포니아 영화 우선정책(The Film California First, FCF)”을 시행하여 캘리포니아 주에서 제작되는 영화에 대한 재정 및 조세지원 등을 하고 있다. 과거 플로리다주는 1992년 한시적으로 “플로리다 영화 및 텔레비전 투자법(The Florida Film and Television Investment Act; FFTIA)”을 제정하여 플로리다주의 영화와 텔레비전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자 했으며 1999년 이 법은 폐지되었다.

### III. 독일

독일에서는 영상저작물과 관련해서 저작권법, 영화진흥법(Filmförderungsgesetz, FFG), 청소년보호법(Jugendschutzgesetz, JuSchG) 및 청소년매체보호협약(Staatsvertrag über den Schutz der Menschenwürde und den Jugendschutz in Rundfunk und Telemedien, Jugendmedienschutz Staatsvertrag- JMStV) 등을 마련하여 영상저작물의 보호, 유통 및 산업진흥을 규율하여 왔다.

먼저, 영상저작물의 보호는 독일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이 법은 영상물에 대하여 ‘제3장 영상물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관련된 조항을

8) 28 C.F.R. sec. 75.6.

9) 14 U.S.C. sec. 659

10) 14 U.S.C. sec. 659

마련하고 있으며, 또 이 법에서는 영화(Filmwerke)와 연속영상(Laufbilder)으로 나누고 영화만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하는 저작물로 다루고 있다. 즉 독일의 저작권법은 제64조에서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70년 후 소멸한다』라고 하고 있고, 동법 제65조제2항에서 영상저작물 및 영상저작물과 유사하게 제작되는 저작물의 경우에 『저작권은 주감독, 시나리오작가, 대화작가, 관계된 영상저작물을 위해 지어진 음악작곡가 중 최후로 생존한 자의 사후 7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영상저작물의 유통은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매체보호협약 등이 적용된다. 즉 독일의 청소년보호법<sup>11)</sup>에서는 영화 및 비디오에 대한 등급분류와 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은 2003년 4월 1일 제정되었으며 기존의 ‘공공장소에서의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Gesetzes zum Schutz der Jugend in der Öffentlichkeit, JÖSchG)’과 ‘청소년 유해문서와 유해매체의 전파에 관한 법률(Das Gesetz über die Verbreitung jugendgefährdender Schriften und Medieninhalten, GjSM)’이라는 양 법률의 내용을 합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sup>12)</sup> 또한 2003년 4월 1일 청소년보호법의 발효와 동시에 연방 각 주간에 청소년매체보호협약<sup>13)</sup>이 체결되어 있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영상물에 대한 등급표시는 청소년보호법 제12조와 제14조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법에 의하면 기존의 영상물 이외에도 영상게임프로그램(Bildschirmspielprogramm)과 프로그램화된 데이터베이스의 상영에 있어서도 등급표시를 할 의무가 추가적으로 규정되었다. 청소년매체보호협약은 방송, 텔레서비스 및 미디어서비스에 적용되는 청소년 보호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적용되지만,<sup>14)</sup> 공공장소에서의 영화상영이나 영화 및 영상물에 대한 표시는 계속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마지막으로, 영상저작물의 창작 및 제작지원은 영화진흥법에서 구체화되어 있는데, 이 법은 제1장에서 ‘영화진흥공사’라는 명칭하에 제1절 설

11) BGBl. I S. 2730

12) 이들 법률에 대한 자세한 것은 현대호, 청소년보호법상의 매체물에 관한 개선방안, 현안분석(한국법제연구원), 2005. 27-30면 참조.

13) 2003년 4월 1일부터 효력 발생.

14) 독일의 청소년매체보호협약 제2조제1항

립·업무, 제2절 기관·상임위원회, 제3절 정관·회계·감독을, 제2장에서 ‘영화진흥’이라는 명칭하에 제1절 영화제작의 진흥(제1관 추천영화의 진흥, 제2관 프로젝트 영화의 진흥, 제3관 단편영화의 진흥, 제4관 시나리오의 진흥), 제2절 판매의 진흥, 제3절 영화상영의 진흥, 제4절 그 밖의 진흥, 제5절 일반 절차규정을, 제3장에서 ‘재정·기금의 사용’이라는 명칭하에 제1절 재정과 제2절 수입의 사용을, 제4장에서 ‘신고’를, 제5장에서 ‘경과규정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독일의 영화진흥법에 대하여는 [부록]의 번역물을 참조).

#### IV. 일본

일본의 경우 영상저작물이라는 용어 대신에 영화저작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영화저작물의 보호는 저작권법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있고 영화저작물의 유통과 산업진흥에 관련된 단일법을 찾기는 어렵다. 즉 일본에서는 영화저작물의 진흥을 위한 기본규정이나 저작권에 의한 보호규정, 우수영화의 교육목적활용을 위한 심사나 문부성영화·환등화의 반포를 위한 규정 그리고 음란물과 관련된 일부규정 등이 있으며, 영화저작물에 한정하여 별도의 입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먼저, 일본의 저작권법은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영상제작자의 개념정의, 제2조제3항에서 영화저작물에 대한 개념정의, 그리고 제10조제7호에서 영화저작물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일본의 저작권법은 제17조에서 영화저작자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영화저작자를 개념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2장제3절제4관에서 ‘영화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이라는 조항을 마련하여 영화제작자에 영화저작물의 귀속여부를 보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영화저작물(비디오물)이 아동포르노를 담고 있는 경우에는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계된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sup>15)</sup> 동법에 규정된 아동포르노란 사진, 비디오

15)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계된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오테이프 기타 물건으로써 아동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성교 또는 성교 유사행위에 관계된 아동의 모습을 시각에 의하여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묘사한 것, 또는 타인이 아동의 성기등을 접촉하는 행위 또는 아동이 타인의 성기등을 접촉하는 행위에 관계된 아동의 모습으로서 성욕을 흥분시키거나 자극하는 것을 시각에 의하여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묘사한 것, 또는 의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 않은 아동의 모습으로서 성욕을 흥분시키거나 자극하는 것을 시각에 의하여 인식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묘사한 것을 말한다.<sup>16)</sup> 또한 비디오물이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특히, 동법의 규제대상인 점포형성풍속특수영업(店鋪型性風俗特殊營業)의 유형 중에는 점포를 두고 전적으로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사진, 비디오테이프 기타 물품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판매 또는 대부하는 영업이 포함된다.<sup>17)</sup>

마지막으로, 일본은 영화저작물의 진흥에 대한 독립된 입법은 없다. 그렇지만 일본도 21세기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지적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지적재산을 진흥하고 지적재산입국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법적 결과물로서 ‘지적재산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최근에는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 제 3 절 영상저작물에 관한 입법체계

우리 나라의 경우 영상저작물의 보호는 저작권법의 특례조항에서, 영상저작물의 유통은 음비게법과 영화진흥법에서, 그리고 영상산업의 진흥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영상진흥기본법·음비게법·영화진흥법 등에서 규율하고 있다.

16)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계된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제3항

17)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계된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제6항제5호

## I. 영상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입법

영상저작물의 보호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보호와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는데, 이 법은 모든 저작물의 보호에 적용되는 입법에 해당된다(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라는 독립된 입법으로 분법화되어 있다). 따라서 영상저작물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데,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이 다른 저작권과 구별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별도의 장(‘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을 마련하여 나름대로 입법화를 하고 있다. 즉 저작권법은 제2조제10호와 제11호에서 영상저작물의 개념과 영상제작자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영상저작물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저작권법 제38조의2에서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고 제74조에서 저작물의 영상화, 제75조에서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및 제76조에서 영상제작자의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 II. 영상저작물의 유통에 관한 입법

영상저작물의 유통에 관련하여 음비게법과 영화진흥법이 마련되어 있다. 먼저, 음비게법은 비디오물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관련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의도한다.<sup>18)</sup> 이 법은 비디오물에 적용되는 입법이고 규율하고 있는 내용을 크게 나누어서 유통규제와 산업진흥으로 나눌 있다(산업진흥은 아래에서 살펴본다). 음비게법에서는 (i)비디오물의 등급분류, (ii)비디오물의 수입, 표시 및 광고, (iii)비디오물 영업의 신고·등록·운영 등에 관련된 조항을 두고 있다. 다음으로, 영화진흥법도 영화의 유통규제에 관한 사항과 영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산업의 진흥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살펴본다), 이 법은 영화(예술)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영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하여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

18) 음비게법 제1조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으며,<sup>19)</sup> 이 법은 영화의 제작, 유통, 상영과 관련하여 (i)영화제작 등의 신고의무 (ii)영화의 유통 등 (iii)영화의 등급 등 (iv)영화의 상영 등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 Ⅲ.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입법

위에서 살펴본 영화진흥법과 음비게법에서는 산업진흥에 관한 조항도 두고 있고 이들 법률외에도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영상진흥기본법에서도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화진흥법은 그 법명에도 불구하고 법문에서 유통규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산업진흥에 대한 조항도 발견된다. 즉 영화진흥법은 제3장 ‘영화진흥위원회’와 제6장 ‘영화진흥금고’를 두고 있으며 기타 영화진흥에 대한 개별적인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이들 산업진흥에 관한 조항이 포괄적인 형태라고 하여도 산업지원의 근거와 관련 진흥기관을 입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크다

둘째, 음비게법도 영화진흥법처럼 비디오산업의 진흥에 관련하여 제3조(비디오물 등 관련 진흥시책의 수립·시행), 제4조(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 제45조(모범 유통관련업자의 지원) 등의 조항을 마련하여 포괄적인 형태의 입법을 하고 있다.

셋째,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의도한다.<sup>20)</sup> 여기서 문화산업이라 함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예컨대, 영화와 관련된 산업, 음반·비디오물·게임물과 관련된 산업,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캐릭터·애니메이션·디자인·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등을

19) 영화진흥법 제1조

20)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조

포함한다. 이 법은 (i)문화산업진흥에 대한 국가의 책임, 진흥계획 (ii) 문화산업의 창업·제작·유통 (iii)문화산업기반조성 (iv)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 (v)문화산업진흥기금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넷째, 영상진흥기본법은 영상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향상 및 영상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sup>21)</sup> 이 법에서는 창작의 자유 등 보장과 영상산업의 진흥시책 등에 관련된 조항을 두고 있으며,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1995년에 제정된 법률로 당시 영상산업의 발달에 따라서 정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입법화되었는데 현재는 그 실효성이 낮다.

#### IV.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영화와 비디오물에 관한 보호법, 유통법 및 산업진흥법이 마치 별개의 대상을 규율하고 있는 것과 같은 입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들 법률은 그 내용의 대부분이 보호와 유통에 치우쳐 있으며, 산업진흥은 상대적으로 적어서 미흡한 면이 있다. 그렇지만 최근 콘텐츠의 새로운 입법방안(‘음악산업진흥법(안)’, ‘게임물 및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중에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있어서 최근의 시장동향을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단순히 영화진흥법과 음비게법의 비디오물에 관한 조항을 형식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별개의 장과 절로 구분하고 있어서 통합의 의미와 효과는 낮다. 영화와 비디오물에 관한 입법을 통합하는 것은 영화의 또 다른 유통방법에 불과한 비디오물을 별도의 입법으로, 그리고 별도의 진흥기구와 진흥시책으로는 효과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화와 비디오물에 관한 입법을 모두 통합하여 하나의 입법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21) 영상진흥기본법 제1조

즉 저작권법의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와 관련 보호조항, 음비게법에서 비디오물에 관한 조항, 영화진흥법, 그리고 영상진흥기본법을 통합하는 입법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입법방안은 영상저작물의 보호, 유통 및 산업진흥을 통일적으로 규율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나 일반인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을 높여주고 또 영상콘텐츠 시장의 안정적 발달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 제 3 장 영상저작물의 보호

### 제 1 절 개 관

영상저작물은 저작권법에서 일반저작물과 함께 보호된다. 따라서 영상저작물도 저작권법상의 보호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 침해시에 일반저작물과 동일한 보호를 받는다. 그렇지만 영상저작물은 일반저작물과 달리 하나의 저작물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저작물의 복합물이고 여러 명의 참여자에 의한 공동작업으로 새로운 영상저작물이 창작되는 것이 통상의 경우이다. 이렇다보니 영상저작물은 일반저작물과 구별되는 여러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영상저작물의 제작에는 많은 개별저작물 예컨대, 스토리가 되는 시나리오의 원작, 음향의 기초가 되는 음악저작물, 배경이 되는 미술저작물 등이 이용되므로 이렇게 이용되는 저작물의 저작자로부터 어떠한 내용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새로이 탄생한 영상저작물은 원저작물과 구별하여 저작권법상의 독립된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가?

둘째, 영상저작물의 제작과정에는 상기한 개별저작물의 저작자들 외에도 배우, 음향·무대장치·조명·녹음·의상·촬영·편집 등의 전문가와 감독·연출자 및 영상제작자 등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므로 영상저작물은 종합저작물이자 공동저작물이라 하겠다. 따라서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가 문제된다.

셋째,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기여한 많은 이해관계인들은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갖는가가 문제된다.

넷째,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은 다른 저작물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도 문제된다.

#### I. 영상저작물의 개념

영상저작물이라는 용어의 이용과 관련해서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시청각저작물이라고 표현하고 독일, 일본 및 베른협약에서는 영상저작물(또

는 영화저작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저작권법에서 『“시청각저작물(audiovisual works)”이란 저작물이 수록되어 있는 필름이나 테이프와 같은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物과 무관하게 본질적으로 영사기(projector), 확대투사기(viewer) 또는 전자장치와 같은 기계 혹은 장치의 사용에 의하여 보여지도록 하는 일련의 관련 영상(image)으로 구성된 저작물이다』<sup>22)</sup>고 정의하고 있고, 이 개념의 하위개념으로 『“영화(motion pictures)”란 연속적으로 보게 되면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주는 일련의 영상으로 구성되고 소리를 수반하는 시청각저작물이다』라고 용어정의를 한다.<sup>23)</sup> 일본의 경우에는 영화저작물이란 영화의 효과에 유사한 시각적 또는 시청각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표현되고 또한 물건에 고정되어 있는 저작물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sup>24)</sup> 영화저작물을 저작권법의 저작물로 명시하고 있다.<sup>25)</sup> 우리 나라의 경우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sup>26)</sup>고 정의하고 있고, 그 하위개념으로 영화진흥법에서는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디스크 등의 매체에 담긴 유성 또는 무성의 내용물로서 상영을 목적으로 한 것을 말한다』<sup>27)</sup>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비계법에서는 『“비디오물”이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다만, 게임물과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영화·음악 등의 내용물이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다』<sup>28)</sup>라고 정의하고 있다.

---

22) 17 U.S.C. §101

23) 17 U.S.C. §101

24) 일본의 저작권법 제2조제3항

25) 일본의 저작권법 제10조 7

26) 저작권법 제2조제10호

27) 영화진흥법 제2조제1호

28) 음비계법 제2조제2호

이와 같이 각국의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또는 시청각저작물)을 보호하고 있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영화진흥법에서는 영화에 대한 개념정의를 극장에서 상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고, 이외의 것을 음비게법의 비디오물로 분류하여 그 입법을 달리하고 있는 점에서 입법체계상으로는 특이하다. 다시 말해서 각국은 영화와 비디오물의 보호에 있어서는 특별히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여 저작권법에서 규율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영화와 비디오물의 유통과 산업진흥을 별개의 입법(영화진흥법과 음비게법)을 통하여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체계상 이례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 II. 영상저작물의 발달

### 1. 영화의 역사와 발전

영화는 프랑스의 루이·뤼미엘이 씨네마토그루프를 발명한 1895년에 등장하였다. 그 해 2월 10일 뤼미엘은 발명특허를 내고 3월 22일에는 최초의 시연회가 렌즈가의 국민공업장연회에서 열렸고 처음으로 영화된 필름은 ‘뤼미엘 공장 공원들의 퇴근’이었다.<sup>29)</sup> 뤼미엘의 영화에서는 컷페이지에 기록하여 그의 씨네마토그래프 발명의 공적을 인정하고 있지만, 뤼미엘보다 앞서서 영화의 선구라 할 수 있는 사진술의 연구에 이바지 한 사람들도 많다. 뤼미엘이 씨네마토그래프를 발명할 무렵에 미국의 토머스 에디슨도 움직이는 사진을 발명하였다.

처음에는 씨네마토그래프가 탄생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었을 때 이것을 대중에게 보여주는 새로운 양식의 예술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없었고 또한 한 기업이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조르쥬 멜리에스에 의해서 씨네마토그래프의 구경꺼리, 즉 씨네마가 탄생하였다. 멜리에스는 세계최초의 프러직션 ‘스타필름’을 만들었으며 그는 구경꺼리로서의 영화의 중요성을 인식한 최초의 사람이며 대중에게 영화를 구경시키고 대중에게 영화취미를 불어 넣어 준 사람이었다.<sup>30)</sup>

29) 김수일, 저작권법상의 영상저작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서울대), 1989. 14면 참조.

30) 이영일, 영화개론, 상영문화사, 1964. 118면.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활동사진은 다만 구경거리에 불과하였으며 연극을 흉내내는 무감각한 복사기였으나 미국의 D.W. 그리피스에 의해서 비로소 영화는 영화언어를 가지게 되었다. 그 이후 토오키 영화와 채색영화, 대형영화의 등장으로 영화는 대중예술로 성장하게 되었다. 발명직후의 초기에 영화의 내용은 주로 사건의 보도(뉴스영화), 풍경의 소재(관광영화), 구경거리의 사진영화 등 사실의 묘사에 이용되다가 점차 일정한 스토리를 갖는 극영화의 모습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 2. 영화와 비디오물 등의 관계

영화는 사진으로부터 진보하여 왔지만 사진과 영화는 엄연히 구별되고 저작권법에서도 양자를 구별한다.<sup>31)</sup> 영화와 비디오물에 대한 종래의 구분은 첫째, 영화가 한 후레임 한 후레임을 카메라에 비추어 앞에서 정지한 독립된 사진의 연속 동작에 의해서 영상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에 해당되고, 비디오는 이미지를 전자신호로 바꾸어서 전자테이프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둘째, 영화와 비디오는 화면 사이즈가 다를 뿐만 아니라 이미지의 표현에서도 차이가 있다. 셋째, 사진 이미지인 영화는 1993년부터 컬러 필름화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현상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과 비슷한 정도의 고감도 필름이 개발되었고 밝은 렌즈의 개발로 보다 선명하고 깊이있는 영상표현이 가능하여 작품의 심리묘사나 색조를 보정할 수 있고 컬러 밸런스를 콘트롤할 수 있으나 이에 비교해서 전자 이미지인 비디오의 경우는 화면의 사이즈가 좁기 때문에 이미지 표현에 있어서 디테일 묘사는 할 수 없다라는 등의 근거가 주장되기도 하였다.<sup>32)</sup> 또 전자이미지인 텔레비전 영상과 비교하면 TV의 경우 우리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전달해 주고 있고 또한 오락매체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 이에 비해서 필름의 사진이미지는 우리들의 과거를 생각나게 하고 우리들의 현실을 비추주고 또한 우리들의 미래를 비추주는 영상매체로서 기능한다. 비디오의 매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흘러 지나쳐

31) 저작권법 제4조제1항 참조

32) 문병록, 영화와 비디오의 함수관계, 영화 118, 1988년 5월, 28면 참조.

버리는 텔레비전의 영상을 기록해서 다시 시청할 수 있고 보전할 수 있으며 특수한 장소에서 돈을 지불하고 영화를 감상한 후에 또 다시 돈을 지불하고 감상하는 불편도 해소해 준다는데 있다.

이와 같은 영화(또는 TV)와 비디오의 차이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 특성을 지적한 것으로 범규범적인 차원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드물다. 다시 말해서 우리 나라의 경우 영화와 비디오물을 구별하고 있고 관련법령에서도 독립된 입법을 하고 있지만, 영화와 비디오물의 구별은 내용물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유통방법의 차이에 기인하는 규제방법의 차이이다.

### Ⅲ. 저작물의 영상화와 계약

#### 1. 저작물의 영상화와 그 대상

##### (1) 영상화의 의미

영상저작물의 작성에는 기존의 저작물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풍경영화나 기록영화 등),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존의 저작물을 영상저작물의 작성에 이용하는 것을 영상화(Verfilmung)라고 한다. 이용되는 저작물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소설·각본 등의 어문저작물은 물론이고 미술저작물과 음악저작물도 이에 해당된다.<sup>33)</sup>

한편, 영상화를 허락할 수 있는 자는 저작재산권자이다. 우리 나라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기존의 저작물을 영상저작물에 이용하는 것은 경제적 이용에 관한 것이므로 저작재산권자가 영상화를 허락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그런데 저작재산권의 일부가 이전되어 각 권리자가 다를 경우에 문제가 있다. 즉 복제권자, 공연권자, 방송권자, 전시권자, 배포권자, 2차적 저작물 등의 저작권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 누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33) 어문저작물에 한정한다는 견해(허희성, 신저작권법축조개설, 법우사, 1988. 323면)와 미술저작물, 음악저작물 등도 포함한다는 견해(최현호,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상), 계간 저작권, 1992년 봄호, 62면; 박원형, 영상저작물의 이용과 귀속, 계간저작권 1988 여름호, 69면)가 있다.

허락할 수 있는가? 궁극적으로는 저작재산권자의 분류와 그 범위에 관한 매우 어려운 문제에 귀착된다. 어문저작물의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자가 허락권자이고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등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2차적 저작물등의 작성권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저작물을 구성하는 편집저작물의 경우와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없고 저작권법 제41조제2항의 적용상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저작자의 보호에 충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존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등의 영상화 허락이 없이 영상화한 경우 등의 법률관계는 2차적 저작물의 이론이 그대로 적용된다.

## (2)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영상저작물은 저작권법에서 일반저작물과 함께 보호되고 있지만 일반저작물과 달리 다양한 저작물의 복합저작물에 해당되어 나름대로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영상화계약의 특수성과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은 1986년에 제3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였다. 구체적으로 저작권법 제74조는 고전적 저작자의 저작물 즉, 소재저작물의 이용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상화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일반이론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영상제작자의 보호를 위하여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보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저작권법 제75조는 작성된 영상저작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이 근대적 저작자에 관한 것이고 제2항이 고전적 저작자에 관한 것이며(고전적 저작자에게는 저작권법 제74조도 중요) 제3항이 실연자에 관한 것이다. 저작권법 제76조도 제1항은 근대적 저작권자에 관한 것이고 제2항은 실연자에 관한 것이다. 저작권법 제77조는 보호기간에 관한 특칙이다.

## 2. 영상화계약

저작권자는 원래 자기의 저작물을 복제, 출판, 연주, 상영 등에 의하여 이용하는 권리와 함께 그 번역, 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이용

하는 권리도 가지고 있는데, 후자에 해당하는 저작자의 권리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한 형태이며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의해 창작된 저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 하고 그 자체가 별개의 저작물로 보호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영상화권은 기존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여 영상저작물이라고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창작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영상저작물 제작의 준비단계로서 기존의 저작물을 영상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계약에 의해서 ‘영상화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 이용허락에 관한 계약이 바로 ‘영상화계약(Verfilmungsvertrag)’<sup>34)</sup>이다. 영상화계약은 기존의 저작물을 영상저작물의 작성에 이용하는 계약으로 보통 영상저작물의 제작자와 소재저작물의 저작자사이에 체결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그 밖에 영상저작물의 작성에 창작적으로 참가하는 자 또는 실연자로서 참가하는 자와의 계약과 구별되며,<sup>35)</sup> 이미 완성된 영상저작물을 이용하는 계약(Filmlizenvertrag 또는 Filmbestellvertrag)과도 구별된다.<sup>36)</sup>

### (1) 계약의 해석

#### (가) 이용허락의 허여

저작물의 영상화에 대한 이용허락은 당사자가 정한 명시적 합의조건과 묵시적 합의조건에 따라서 그 허락의 유형과 범위가 결정된다. 이용허락의 허여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계약상의 권리는 계약체결시 요구되는 이용

34) 대법원의 판례는 영상화계약의 특성에 대하여 도급계약의 일종으로 보아 수급인의 협력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즉 판례는 「영상물 제작공급계약상 수급인의 채무가 도급인과 협력하여 그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영상물을 제작하여야 하므로 도급인의 협력 없이는 완전한 이행이 불가능한 채무이고, 한편 그 계약의 성질상 수급인이 일정한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기행위인 사안에서 도급인의 영상물제작에 대한 협력의 거부로 수급인이 독자적으로 성의껏 제작하여 납품한 영상물이 도급인의 의도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도급인의 의도에 부합하는 영상물을 기한 내에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할 수급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케 된 경우, 이는 계약상의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수급인은 약정대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대판 1996. 7. 9. 96다14364,14371).

35) 저작권법 제75조제1항 및 제3항 참조

36) 최현호, 위의 논문, 65면.

허락자의 통제 내에 있었던 저작권의 범위로 한정된다. 즉 명시적 합의에 따라서 이용허락의 유형과 범위가 결정되는데, 그러한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 이용허락에 의한 묵시적 권리는 계약당시에 이용허락자의 통제 내에 있는 권리에만 적용된다. 이용허락의 범위에 관한 조건은 영상화권과 상거래의 맥락에 비추어 계약해석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즉 “매체를 이용할 모든 권리”, “모든 매체에 현재 알려진 또는 장래 개발될 모든 권리”, 또는 이와 유사한 조건의 허여는 현재나 장래 개발될 것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허여시에 예상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 의하여 현재나 장래 창설될 모든 권리, 이용, 미디어, 배포방법 및 전시방법을 포함한다. 우리 나라의 대법원 판례에서도 ‘녹음물 일체’에 관한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음반제작계약시에는 상용화되지 않은 새로운 매체인 시디(CD)음반으로 제작·판매한 것이 이용허락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도 있다.<sup>37)</sup>

37)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저작권에 관한 이용허락계약의 해석에 있어서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은 매체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분쟁의 대상이 된 새로운 매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녹음물 일체’에 관한 이용권을 허락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을 뿐 새로운 매체에 관한 이용허락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 과연 당사자 사이에 새로운 매체에 관하여도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원칙은, ①계약 당시 새로운 매체가 알려지지 아니한 경우인지 여부, 당사자가 계약의 구체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 경우인지 여부, 포괄적 이용허락에 비하여 현저히 균형을 잃은 대가만을 지급 받았다고 보여지는 경우로서 저작자의 보호와 공평의 견지에서 새로운 매체에 대한 예외조항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책임을 저작자에게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인지 여부 등 당사자의 새로운 매체에 대한 지식, 경험, 경제적 지위, 진정한 의사, 관행 등을 고려하고, ②이용허락계약 조건이 저작물 이용에 따른 수익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적은 대가만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어 중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인지 여부, 이용을 허락 받은 자는 계약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매체의 범위 내에 들어간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어떠한 사용도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 등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른 계약의 합리적이고 공평한 해석의 필요성을 참작하며, ③새로운 매체를 통한 저작물의 이용이 기존의 매체를 통한 저작물의 이용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만일 계약 당시 당사자들이 새로운 매체의 등장을 알았다더라면 당사자들이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으리라고 예상되는 경우인지 여부, 새로운 매체가 기존의 매체와 사용, 소비 방법에 있어 유사하여 기존 매체시장을 잠식, 대체하는 측면이 강한 경우이어서 이용자에게 새로운 매체에 대한 이용권이 허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그와 달리 새로운 매체가 기술혁신을 통해 기존의 매체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측면이 강한 경우이어서 새로운 매체에 대한 이용권이 저작자에게 유보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새로운 매체로

## (나) 이용허락의 유형

원저작물의 영상화에 대한 라이선스<sup>38)</sup>와 관련해서는 배타적(또는 독점적)인 라이선스를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우리 나라의 저작권법은 제74조제2항에서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허락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그 저작물을 다른 영상저작물로 영상화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74조제2항의 법문에서는 이용허락의 성격이 ‘배타적’인지 또는 ‘비배타적’인지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그 해석이 문제된다. 즉 저작권법 제74조제2항은 영상화권이 배타적인지 또는 비배타적인지에 대한 선택을 당사자의 의사에 맡겨두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계약상 배타적 특성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영상화권은 비배타적인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영상제작물 제작에는 많은 자본이 들기 때문에 배타적 이용허락을 인정

인한 경제적 이익의 적절한 안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았다(대판 1996. 7. 30. 95다29130).

38) 지적재산권이나 정보와 같은 무형적인 법익은 그 자체가 배타성이 없으므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지적재산이나 정보에 대한 배타적 이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사자사이의 합의조건에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 즉 지적재산권의 라이선스계약은 당사자의 합의조건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배타적 라이선스와 비배타적 라이선스로 나누어진다. 먼저, 비배타적 라이선스(nonexclusive license)란 라이선스허락자가 동일한 범위에서 동일한 계약상의 권리를 제3의 라이선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 라이선스를 의미하고, 다른 표현으로는 라이선스이용자가 제3자에게 독자적으로 라이선스를 수여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村上政博, 特許ライセンスの日本比較(第3版), 弘文堂, 2000. 128頁). 여기서 비배타적 라이선스에는 저작권법에서 통상이용권이라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비배타적 라이선스의 이용범위는 그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의하여 결정되고, 비배타적 라이선스는 라이선스 허락자의 동의없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으로, 배타적 라이선스란 라이선스허락자가 라이선스이용자 이외의 제3자에 라이선스를 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村上政博, 前掲書, 127頁). 배타적 라이선스는 유일의 라이선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비배타적 라이선스(복수도 가능하다)의 존속을 전제로 배타적 라이선스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사이에 배타적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한 경우 명시적 합의가 없는 한 과거의 라이선스에 대하여 라이선스허락자가 침묵하고 라이선스이용자가 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체결된 배타적 라이선스계약은 유효한 배타적 라이선스를 허여한 것이 아니다. 배타적 라이선스는 비배타적 라이선스와 마찬가지로 채권계약에 불과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사이에에서만 배타적 효력이 있다.

하지 않는다면 경쟁자의 출현으로 투하자본 회수가 어렵고 영상예술의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없어서 투하자본 회수에 필요한 최소기간 동안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결국 고전적 저작권자와 영상제작자사이에 영상화계약에서 배타적 영상화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74조제2항의 문구해석에 기초하면 명시적으로 이를 계약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고 하여도 영상화계약의 특성에 고려할 때 비록 저작권법 제74조제2항의 문구해석에 반한다고 하여도 개별적인 경우에 법원에 의한 보충해석(일종의 입법행위)를 통하여 영상화계약의 특성이 반영되어 배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남아있다고 사료된다. 이와 관련해서 독일의 저작권법은 제88조제1항에서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의 영상화를 타인에게 허락한 경우에 의심스러운 때에는 그 허락에는 그 저작물을 영상저작물로 제작하기 위하여 변경함이 없이 혹은 수정 내지 변형하여 이용하고 당해 영상저작물 및 번역물과 기타 영상적인 개작물을 알려진 모든 이용 방식으로 이용하는 배타적 권리의 부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용허락의 조건

원저작물의 영상화에 대한 허락은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다른 방법의 이용은 계약위반이 된다. 예컨대, 영상제작자에게 “X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경우와 “X만 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경우에 있어서 영상제작자가 X를 초과하거나 또는 X와 다른 방법으로 행위를 한다면, 명시적으로 제한된 허여에 위반되므로 소송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명시적 제한 이외에 묵시적 제한을 담고 있는 이용허락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영상제작자는 기타 방법으로 이용을 할 수 없다. 다만, 묵시적 제한이 법에 의하여 허용된 공정한 이용에 관련된 경우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도 위반이 아니다.

예컨대, 저작자로부터 저작물의 TV용 영상화 허락을 받은 영상제작자 등이 완성된 영상저작물을 TV로 재방영하거나 또는 영화관에서 상영하거나 비디오테이프나 비디오 디스크로 만든 경우에 영상화 허락을 한 저작자는 이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이러

한 사용료 청구권을 영상화계약에서 유보하면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특약이 없을 경우가 문제된다. 우리 나라의 대법원은 방송작가의 극본에 입각해 제작한 TV극을 한국방송공사가 작가의 승낙없이 임의로 그 산하단체인 주식회사 한국방송사업단으로 하여금 VTR-TAPE에 복사하여 판매케 한 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라 하여 손해배상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원심측인 방송작가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저작권법의 개정이 있기 이전의 것이지만 저작권 개정으로 제74조가 신설된 현행법상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동조 제1항의 제2호와 제4호의 충돌이 그것이다.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4호에 의해 제2호는 제한을 받는다고 봄이 타당하겠다. 즉 제4호는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은 방송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비디오 테이프나 비디오디스크 등에 사용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방송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영상저작물은 방송에 이용할 수 없으므로 영화관 상영중 영상저작물을 TV에 방영할 수 없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위의 판례와 같은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TV극을 재방송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으면 재방송료는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제74조제1항제4호에는 1회 방송이라고 한정하지 아니하여 방송의 회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라) 이용허락의 기간

당사자가 이용허락의 기간을 약정한 경우 그 기간 동안에 이용허락은 존속한다. 당사자가 이용허락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허락 된 객체와 상거래의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간 동안에 존속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허락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그 저작물을 다른 영상저작물로 영상화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sup>39)</sup> 이 규정은 보통 영상저작물의 작

39) 저작권법 제74조제2항

성에는 많은 자본이 투입되므로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때 5년 내에 이용하여 투입자본회수에 도움이 되도록 한 것이다. 이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받은 자가 5년 동안에 영상화권을 가진다.<sup>40)</sup> 독일의 경우 저작권법 제88조제2항에서 『저작자는 의심스러운 경우에 계약 체결 후 10년이 경과된 후에는 자신의 저작물을 별도의 영상적인 방법으로 이용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sup>41)</sup>

## (2) 영상화의 의무

영상화계약에 의해서 기존저작물의 저작자로부터 영상화권을 취득한 자는 반드시 영상화하여야 하는가? 즉 영상화의무가 있는가? 이에 관한 독일의 통설과 판례는 명시적인 계약상의 합의가 없는 한 영상화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다. 즉 독일의 판례에 의하면 영상화계약은 출판계약이 아니고 독특한 종류의 계약이므로 출판의무에 상응하는 제작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우리 나라의 저작권법은 침묵을 지키고 있으나, 독일의 경우처럼 일반적으로 영상화의무는 지지 않지만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영상화의무가 있다.

## 제 2 절 영상저작물의 성립요건

저작권의 기본적인 목적은 저작자의 노동에 대해 보상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학과 실용예술의 발달을 촉진시키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서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독창적인 표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대신 타인이 저작물에 담긴 아이디어와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영상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의 저작물에 해당되어야 한다. 즉 저작권법의 영상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저작물의 보호요건, 즉 ‘학문·학술 또는 예술의

---

40) 이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5년간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는 견해도 있는데, 문구해석을 넘어선 해석이고 영상화권의 특성에 비추어 5년간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이 역시 법문의 문구해석을 넘어선 것에 해당된다.

41) 독일의 저작권법 제88조제2항 참조.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되어야 하며 또한 영상저작물의 개념정의에 포함되어야 한다.<sup>42)</sup>

### I. 문학, 학술 또는 예술에 속해야 한다.<sup>43)</sup>

저작권법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만을 보호한다. 문학·학술·예술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하여는 그 의미를 탐구하기 보다는 총체적으로 보아 지적 문화적인 포괄 개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공업소유권의 객체인 발명, 고안 등과 구별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저작물에 요구되는 사상, 감정은 철학적이거나 숭고한 것을 요하지 않으며 지적창작물로서의 저작물에 정신적인 내용이 표현되면 족하다고 본다. 우리 나라 저작권법은 이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나, 일본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정의함에 있어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sup>44)</sup>이라고 하여 이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사상, 감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같은 무체재산권의 대상인 특허의 발명 및 실용신안의 고안과 구별하기 위한 것이지만 오늘날 기계, 기술의 발달로 저작물의 이용방법의 증대와 더불어 저작물의 표현형식이 중요하므로 학문,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한다는 요건은 이 요건속에 용해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sup>45)</sup> 그리고 오늘날 세계적인 추세는 새로운 과학기술에 속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칩'까지도 저작권법 내지 저작물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인정해야 할 것이다. 결국 저작권법 제4조제1항에서 열거한 저작물에 해당되어야 하고 영화와 비디오물은 영상저작물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에는 성립요건으로 적법성을 문제삼는 경우도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저작물의 요건으로서 적법성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음

42) 저작권법 제2조제10호 참조

43) 베른협약은 보호받는 저작물로 'literary and artistic works'라고 하며 'literary, scientific and artistic domain'에 속하는 것이라고 한다(동 협약 제2조). 세계 저작권협약은 보호받는 저작물로 7개를 예시하며 'literary, scientific, artistic works'라고 한다(동 협약 제1조).

44) 일본의 저작권법 제2조제1항제1호

45) 황적인·정순희·최현호, 위의 책, 223면.

란비디오와 같은 불법 영상저작물도 저작물성이 인정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음란비디오를 제3자가 무단이용하게 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된다.

## II.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이어야 한다

창작물의 의미에 대해서는 보통 (i)독창성 (ii)일정한 형식으로 객관화 될 것(또는 대외적 표현)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서 영상저작물의 경우 연속적인 영상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한다.

### 1. 독창성

독창성(originality)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문에 어떠한 규정도 없으나 상대적·비교적 개념이라는 데 학설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독창성이란 다른 저작물로부터 모방이나 모작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창작한 것을 말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독창성은 특허법상의 신규성(novel)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즉 독창성은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지 아니한 독자적인 창조물이면 충족된다. 따라서 저작물은 복제하지 아니하는 한 우연히 타인의 저작물과 유사성을 지니고 있고 심지어 동일하다고 하여도 창작성은 인정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신규성이 아니라 독창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저작물은 약간의 창의성을 가미하므로써 보호된다.<sup>46)</sup> 우리 나라의 판례도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

46) 독창성의 요건과 관련하여 종래 편집저작물의 보호가 문제되었다. 편집저작물(compilation)은 기존의 자료(material)를 선택, 구성, 배열의 방법으로 얻어진 저작자의 창작적인 저작물을 가리킨다. 예컨대, 전화번호부·데이터 베이스 및 잡지가 편집저작물에 해당된다. 독일도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기준에 의하여 선택된 또는 개인적인 관점에서 배열된 자료이고, 자료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지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창작성만 있으면 독자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일본과 우리 나라도 편집물이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것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다. 독창성의 요건과 관련하여 편집물은 그 자료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독자적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독창성과 관련해서 원저작물을 기본으로 하여 영상화한 극영화와 같은 2차적 영상저작물도 그 원저작물로부터 독립한 저작물이 되느냐 하는 것이 독창성과 관련하여 문제되나, 저작권법은 이러한 저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 하여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입법례이다. 이것은 원저작물을 근거로 하여 특별한 지식과 창작적인 정신적 노력으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 경우에 이를 보호한다는 취지이다. 베른협약도 제14조의2 제1항에서 「영화적 저작물은 영화저작물에 이용된 원저작물의 저작권과는 별개 독립의 창작적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규정하여 영상저작물의 독립된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있다.

## 2. 일정한 형식으로 객관화될 것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대외적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없고 또한 법이 보호하려 해도 보호대상이 없으므로 저작물로서의 보호의 대상이 되려면 외부로부터 지각할 수 있도록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그 표현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며 또한 표현의 완성도 요구되지 아니한다. 즉 저작물은 유형적인 매체에 고정(fixation)되어야 하고, 저작물은 유형적인 매체에 적절히 고정되는 순간부터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유형적 매체는 시각·청각의 감각적 수단에 의하여 항구적인 형태로 고정될 수 있는 것이면 족하다.

미국을 비롯한 영미법계의 저작권법에 있어서는 저작물의 성립요소로서 유형물체의 고정을 요건으로 하나, 독·불을 중심으로 한 대륙법계에서는 유형물체의 고정을 필요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우리 나라는 후자에 속한다. 베른협약에서는 유형물체의 고정의 요건에 대해서는 동맹국의 국내입법에 유보하고 있다.<sup>47)</sup> 그렇지만 ‘유형물체의 고정’과 ‘일정한 형식

47) 베른협약 제2조제2항

으로 객관화'는 근본적으로 저작물의 존재를 입증하려는 요건이라는 점에서 같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일정한 형식으로 외부에 표현되는 것은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영사기, 비디오 레코더 등에 의하여 영상저작물을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영화필름만이 아니라 비디오테이프와 같은 녹화물도 포함한다.<sup>48)</sup>

### 3.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표현물에 해당될 것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되어야 하므로 하나의 영상이 독립적으로 나타난 사진 등은 영상저작물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둘 이상의 슬라이드가 연속되어 하나의 창작물이 될 때에는 영상저작물로 볼 수 있다. 영상이 수록된 것으로 음만이 유형물에 고정된 음반과는 구별된다. 또 영상이 수록되면 음의 수반여부를 가리지 아니하므로 일반영화 뿐만 아니라 무성영화도 영상저작물이 될 수 있다.

종래 영상저작물에 극영화, 뉴스영화, 보도영화, 만화영화, 무성영화 등이 포함되는 데는 의문이 없지만 비디오, 레이저 디스크, 비디오 게임, 텔레비전 필름 등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었다. 그렇지만 비디오나 레이저디스크는 영상저작물로 보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 저작권법 상으로도 영상저작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흔히 동전으로 조작되는 비디오게임의 경우에도 영상저작물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영상저작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미국과 일본의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

48) 한편, 이 경우 유형물체의 고정은 영상저작물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 유형물체의 고정의 요건을 모든 저작물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녹화되지 않은 TV생방송은 유형물체의 고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저작권법상의 영상저작물은 될 수 없지만 TV생방송이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일 경우에는 저작물로서 보호됨은 물론이다. 다만,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데 녹화되지 않은 TV생방송의 경우에 적용이 있느냐가 문제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영상저작물에 관한 규정중에서 유형물체의 고정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를 제외한 그밖의 규정에는 성질이 허락하는 한 유추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견해도 있다(황적인·정순임·최현호, 위의 책, 222-223면 참조).

## 제 3 절 영상저작물의 권리귀속과 내용

### I. 영상저작물의 귀속

전술한 바와 같이 영상저작물의 작성에는 매우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사람들은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크게 3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이른바 고전적 저작자(classical authors), 근대적 저작자(modern authors), 실연자(performer)가 그것이다. 먼저, 고전적 저작자란 영상저작물의 작성에 기존의 자기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즉 소설가, 방송작가, 시나리오작가, 미술저작물의 저작자, 음악저작물의 저작자 등을 말한다. 고전적 저작자의 저작물이 영상저작물의 작성에 소재 내지 자료로 이용된다는 의미에서 그 저작물을 소재저작물(Stoffwerk)이라고 하고, 그 저작자를 소재저작물의 저작자(Stoffwerkauthor)라고도 한다. 다음으로, 근대적 저작자란 감독, 연출, 촬영, 미술 등을 담당하는 자로 영상저작물의 작성에 저작자로서의 활동을 한 자를 말한다. 따라서 보통은 감독, 촬영감독, 조명감독, 미술감독 등을 말하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이들이 언제나 근대적 저작자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연자란 배우나 가수 등을 말하는데 이들은 저작자가 아니나, 저작인접권자로 자기의 실연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를 갖는 것이 보통이고 저작권법은 이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sup>49)</sup> 이들과 관련하여 주로 문제되는 권리주체는 고전적 저작권자와 영상제작자 또는 영상제작자와 실연자이다.

영상저작물은 일반저작물과 달리 통상적으로 다수의 사람이 참여하여 제작되는 2차적인 창작물에 해당되며 2차적 저작물로서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sup>50)</sup> 그리고 기존저작물을 각색하여 창작된 영상저작물은 과연 누구에게 귀속되는가가 문제된다. 이 문제의 해결은 영상저작물의 창작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결정된다. 다시 말해서

49) 저작권법 제63조 내지 제65조

50) 저작권법 제5조제1항

계약에서 정한 자에게 창작된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이 귀속되고 해당 영상물저작권자는 일반저작권자와 마찬가지로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 그렇지만 영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기초하여 만들어진 저작물이고 또 영상저작물의 제작과정에 다수의 참여자가 참여하므로 이들이 가지는 권리(예컨대, 저작인격권)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

### 1. 저작권자와 영상제작자와의 권리관계

고전적 저작권자나 근대적 저작권자와 영상제작자사이에 새로 창작된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에 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저작권법 제75조제1항에서는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영상제작자에게 귀속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 경우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각본·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등의 저작재산권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sup>51)</sup> 독일의 저작권법도 소설, 각본 및 영상음악과 같이 영상저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이용된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은 이로 인하여 영향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sup>52)</sup>

### 2. 영상제작자와 실연자와의 권리관계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복제권, 실연방송권 및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sup>53)</sup> 실연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받는 권리는 그 영상저작물을 복제·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sup>54)</sup>

---

51) 저작권법 제75조제2항

52) 독일의 저작권법 제89조제3항

53) 저작권법 제75조제3항

54) 저작권법 제76조제2항

## II. 영상저작물의 권리와 내용

### 1. 저작자의 권리

#### (1) 고전적 저작자의 권리

고전적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진다. 저작재산권 중에서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에 기초하여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영상화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베른협약에서는 「문학 또는 예술적 저작물로부터 파생된 영화제작물을 기타 다른 예술적 형태로 각색하는 것은 영화제작물의 저작자가 허락하는 것을 해치지 않는 한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허락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55)</sup>

#### (2) 근대적 저작자의 권리

근대적 저작자는 영상저작물의 저작자를 말한다. 영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기존저작물을 각색 등을 통하여 영상물을 창작한 자인데, 영상저작물의 참여자 중 과연 누구를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를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우리 나라의 저작권법은 아무런 규정이 없지만 일본의 경우 저작권법에서 영화저작물의 저작자는 그 영화저작물에 있어 번안되거나 복제된 소설, 각본, 음악 그 밖의 저작물의 저작자를 제외하고, 제작·감독·연출·촬영·미술 등을 담당해 그 영화저작물의 전체적 형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56)</sup>

### 2. 영상제작자의 권리

영상제작자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sup>57)</sup> 통상의 경우 영상저작물의 제작에는 막대한 자금과 인력이 동원된다. 따라서 영상제작자에게 영상저작물에 관하여 일정한 권리

---

55) 베른협약 제14조제2항

56) 일본의 저작권법 제16조 참조

57) 저작권법 제2조제11호

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영상화계약에 의하여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귀속되지만 그 권리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에 우리 나라의 저작권법 제74조 내지 제76조에 의하여 영상제작자에게 영상저작물에 관한 많은 권리가 부여된다.

(1) 고전적 저작권자에 대한 권한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i)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ii)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것 (iii)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iv)전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 (v)영상저작물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배포하는 것 (vi)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승낙한 것으로 추정한다.<sup>58)</sup> 독일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89조제1항에서 「영상물의 제작에 있어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당해 영상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의심스러운 때에는 영상저작물 및 번역물, 기타 영상적 개작물 혹은 변형물을 이미 알려진 모든 이용방법으로서 이용하는 배타적 권리를 영상제작자에게 부여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권리의 유형

(a) 각색권

우리 나라의 저작권법은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이라고 하여 영상제작자에게 각색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경우의 각색은 저작권법의 2차적 저작물을 작성권으로 각색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통상 일반저작물의 경우 2차적 저작물의 작성에는 원저작자의 동의가 불필요하며 2차적 저작물은 독창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는 것이 저작권법의 태도이다.<sup>59)</sup> 그렇지만 영상화계약에

58) 저작권법 제74조 참조

59) 저작권법 제5조제1항

서 대부분의 경우 기존저작물의 각색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특약으로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기존저작물을 각색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저작권법은 제88조 제1항에서 『변경함이 없이 또는 수정 내지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sup>60)</sup>

#### (b) 공개상영권

우리 나라의 저작권법에서 공개상영이란 극장 등의 공개적인 장소에서 상영하는 것을 말한다. 즉 영상저작물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상영하는 것을 의미하고, 기존저작물을 각색하여 창작된 영상저작물은 당사자가 계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상영이 된다. 그렇지만 당사자가 영상화계약에서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영상제작자가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우리 나라의 저작권법은 제74조제1항제2호에서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 영상제작자에게 공개상영권을 인정한다.

#### (c) 방송권

우리 나라의 저작권법에서 방송권이란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방송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나,<sup>61)</sup> 여기서 주의할 것은 방송의 경우는 당초부터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의 방송에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초에 방송목적으로 영상화의 허락을 한 영상저작물이 방송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또는 처음부터 방송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영상화의 허락에 의하여 제작된 영상저작물을 방송할 수는 없다. 우리 나라 대법원의 판례는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8호는 방송이란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방송에는

60) 독일의 저작권법 제88조제1항제1호

61) 저작권법 제18조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와 달리 방송이 서버(Server)까지만 송신이 되고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그에 접속하여 비로소 서버로부터 개인용 단말기까지 송신이 이루어지는 인터넷방송과 같은 전송도 포함된다.<sup>62)</sup>고 보았다. 영상저작물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계약에서 방송여부를 정하지 않았다면, 저작권법 제74조제1항제3호가 적용되어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의 방송권을 가진다.

(d) 전송권

우리 나라의 저작권법에서 전송이란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sup>63)</sup> 영상제작자는 저작권법 제74조제1항제4호가 적용되어 영상저작물을 방송외의 전기적 방법을 이용하여 배포할 수 있다.

(e) 복제·배포권

우리 나라의 저작권법에서 복제란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고, 복제권이란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sup>64)</sup> 영화나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그 복제물을 제작할 권리를 의미한다. 또 저작권법에서 배포란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일반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의미하고,<sup>65)</sup> 배포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sup>66)</sup> 여기서 영상저작물의 배포는 영상저작물의 화체물인 필름과 같은 것을 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방송

62) 대판 2003. 3. 25, [2002다66946]

63) 저작권법 제2조 9의2

64) 저작권법 제16조

65) 저작권법 제2조제15호

66) 저작권법 제20조

이나 극장용의 영상저작물을 비디오테이프화 또는 레이저 디스크화하는 경우에 문제된다. 영상저작물의 복제·배포권도 당사자가 계약에서 정한 바가 없다고 하여도 영상제작자는 복제·배포권을 가진다. 즉 우리 나라의 저작권법은 제74조제1항제5호에서 『영상저작물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배포하는 것』이라고 하여 영상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할 권한을 영상제작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 (f) 같은 방법으로 번역물을 이용할 권리

오늘날 영상저작물은 국내적인 이용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이용도 성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영상저작물의 국외수출 또는 외국 영상저작물의 국내적 이용에 있어서 원래의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영상저작물에 더빙하거나 자막으로 삽입하여 원래의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sup>67)</sup> 즉 우리 나라의 저작권법은 제74조제1항제6호에서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하여 번역권한을 영상제작자에게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저작권법 제74조제1항제6호의 문구에서는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해석이 문제된다. 즉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하여 2가지 견해가 있다. 제1설은 좁게 공개상영용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이라면 공개상영하는 것, 방송용이라면 방송하는 것을 말하고 방송용을 공개상영하거나 공개상영용을 방송하는 것은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반하여 제2설은 번역된 영상물을 복제·배포·공개상영·방송하는 것도 영상화의 허락속에 특약이 없는 한 포함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한다.

#### (나) 권리의 양도

통상 저작물의 라이선스권은 저작재산권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sup>68)</sup> 따라서 영상화권도 일종의 라이선스권에 해당되어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지만 우리 나라의 저작권법은 제75

67) 저작권법 제75조제1항제5호 참조

68) 저작권법 제42조제3항

조제3항에서 영상제작자가 근대적 저작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양도 또는 질권의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76조제2항에서도 영상제작자가 실연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양도나 질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영상저작물의 저작자가 용익권을 이미 제3자에게 부여한 경우에 저작자는 계속하여 이 권리를 제한하여 혹은 제한없이 영상제작자에게 부여할 권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sup>69)</sup>

## (2) 근대적 저작권자에 대한 권한

우리 나라의 경우 영상제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료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받는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공개상영·방송·전송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sup>70)</sup> 독일의 경우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에 수록되어 있는 녹화물 또는 녹음·녹화물을 복제, 배포, 공개상영, 방송 또는 공중전달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영상제작자는 또한 그 녹화물 또는 녹음·녹화물에 관하여 가지는 영상제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위험이 있는 녹화물 또는 녹음·녹화물의 각 왜곡 또는 축약을 금지할 권리를 가진다.<sup>71)</sup> 영상저작물의 제작시 발생하는 사진과 사진저작물의 영상화 이용을 위한 권리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가진다.<sup>72)</sup> 이 경우 해당 권리는 양도할 수 있으며, 영상제작자는 자신에게 유보된 이용방법에서 개별적이거나 전체적으로 타인에게 녹화물 또는 녹음·녹화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sup>73)</sup> 일본의 경우에 영화저작물의 저작권은 그 저작자가 영화제작자에 대하여 해당 영화저작물의 제작에 참가할 것을 약속한 경우에는 해당 영화제작자에게 귀속하고,<sup>74)</sup> 오로지 방송사업자가 방송을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서 제작한 영화저작물의 저작권중 (i)저작물을 방송할 권리 및 방송된 그

69) 독일의 저작권법 제89조제2항 참조

70) 저작권법 제76조제1항

71) 독일의 저작권법 제94조제1항

72) 독일의 저작권법 제89조제4항 참조

73) 독일의 저작권법 제94조제2항

74) 일본의 저작권법 제29조제1항

저작물을 유선방송하거나 또는 수신장치를 이용하고 공공에 전달할 권리 (ii)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복제물에 의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반포할 권리는 영화제작자로서의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귀속한다.<sup>75)</sup>

### (3) 실연자에 대한 권한

우리 나라의 경우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복제권, 실연방송권 및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sup>76)</sup> 이 경우 이들 권리는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sup>77)</sup>

## 3. 실연자의 권리

우리 나라의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의 참여한 실연자의 권리에 대하여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 따라서 실연자가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가가 문제된다. 즉 저작권법 제4장제2절의 ‘실연자의 권리’를 가지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경우에는 영상저작물을 제작함에 있어서 실연자가 자신의 협력에 관한 계약을 영상제작자와 체결한다면,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실연자에게 유보된 이용방법으로 실연을 이용할 권리가 부여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sup>78)</sup> 이 경우 실연자가 이 권리를 사전에 양도했거나 제3자에게 이용권을 부여했다고 하여도 실연자는 영상저작물의 이용권을 영상제작자에게 양도하거나 권한을 부여할 권능을 가진다고 한다.<sup>79)</sup>

## Ⅲ.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일반적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후 50년간 존속한다. 이에 비교하여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

75) 일본의 저작권법 제29조제2항

76) 저작권법 제75조제3항 참조

77) 저작권법 제76조제2항 참조

78) 독일의 저작권법 제92조제1항 참조

79) 독일의 저작권법 제92조제2항 참조

존속하고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sup>80)</sup> 베른협약에서도 저작물의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50년간 보호하고 있는데,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영상저작물을 공중에 제공한 때로부터 50년 또는 제작된 날로부터 50년 후에 소멸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sup>81)</sup> 독일의 저작권법은 제94조제3항에서 「위 권리는 녹화물 또는 녹음·녹화물이 발행된 후 50년이 경과되면 소멸하는데, 공개재현을 위하여 허락을 얻은 최초이용이 발행이전에 행해졌다면 그 이용 후 50년이 지나면 소멸하는바, 위 녹화물 또는 녹음·녹화물이 당해 기간내에 발행되거나 허락을 얻어 공개재현되도록 이용되지 않는다면 제작후 50년이 지나면 위 권리는 이미 소멸한다.」을 두고 있다. 일본의 경우 영화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물의 공표 후 70(저작물 창작 후 7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았을 때는 창작 후 70년)년을 경과하기까지의 사이에 존속하고,<sup>82)</sup> 영화저작물의 저작권이 그 존속 기간 만료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해당 영화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원저작물의 저작권은 해당 영화저작물의 저작권과 동시에 소멸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sup>83)</sup>

#### IV. 문제점과 개선방안

위에서는 영상화계약의 보충(내지는 보완)을 위한 저작권법 제74조, 제75조 및 제76조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sup>84)</sup> 영상화계약의 해석과 일반

80) 저작권법 제38조의2

81) 베른협약 제7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82) 일본의 저작권법 제54조제1항

83) 일본의 저작권법 제54조제2항

84) 우리 나라 저작권법의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특례조항에 대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황적인, 위의 책, 374-380면 참조). 첫째, 독일 저작권법상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본받음으로써 용어선택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둘째, 독일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필요한 독일 저작권법의 내용 중에서 빼먹은 부분이 있다(영상제작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셋째, 독일 저작권법은 저작권 일원론에 입각하여 입법되었고 우리 저작권법은 이원론에 입각하여 입법되었으므로 권리구성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 넷째, 영상저작물의 저작자가 누구인가에 관하여 독일 저작권법의 해석으로 감독이 저작자 또는 저작자 중의 1인(공동저작물로 될 경우)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 저작권법은 실연자를 ‘실연을 하는 자 및 실연

적인 라이선스과의 해석상 구별되는 특수성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다수의 자가 관여하고 엄청난 비용 등이 소모되며, 또 영상제작자의 보호를 통한 영상산업의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제74조, 제75조 및 제76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런데 저작권법 제74조, 제75조 및 제76조에서는 2가지의 입법홈결이 발견된다. 첫째는, 실연자의 권리에 대하여 아무런 명시적인 조항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서 권리관계가 모호하여 입법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요구된다. 독일의 경우에 영상저작물의 실연자는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복제권, 실연방송권 및 전송권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저작권법에서 이를 인정함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는 우리 나라의 저작물권에서는 영상저작물의 저작인격권에 대한 조항이 없는데, 이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영상화계약에 의해 재산적 저작권 중의 일부분은 양도 내지 배타적 이용허락을 하더라도 인격적 저작권은 일신전속성 때문에 저작자에게 유보되고, 영상화의 허락을 받은 영상제작자 등은 각색이나 영상제작을 함에 있어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저작인격 중에서 특히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이 중요하다. 성명표시권에 의해 영상저작물에는 저작권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원저작자, 시나리오작가 등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한편, 동일성유지권이라 함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인데, 원저작물을 각색함에 있어서 또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서 동일성유지권과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동일성이 침해되었느냐의 여부는 구체적인 측면에서 그 영상저작물의 제작의도, 목적과 기존저작물의 형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을 지휘·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제5호)라고 정의하여 감독등을 실연자로 보고 있다. 독일 저작권법의 해석은 동법 제89조제1항의 해석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이 규정을 우리 저작권법 제75조제1항이 거의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저작권법 제2조제5호와 제75조제1항은 서로 충돌하게 되는데 그 해석을 어떻게 하여야 할까? 다섯째, 우리 저작권법은 영상제작자를 정의하여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저작권법 제9조의 단체명의저작물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특히 우리 저작권법의 단체명의저작물에 관한 규정과 그에 상응하는 독일 저작권법의 규정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여섯째, 단체명의저작물과 영상저작물의 적용관계는 어떠한가?

판단하여야 한다.<sup>85)</sup> 독일의 경우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및 그 제작을 위하여 이용된 저작물의 저작자 그리고 인접보호권자로서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하는 자와 자신의 급부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이용된 자는 당해 영상저작물의 제작 및 이용에 관하여 그들의 저작물 혹은 급부가 중대하게 왜곡되거나 기타 중대하게 침해된 것만을 금지할 수 있다.<sup>86)</sup> 다만, 형평에 어긋난 비용이 든다면 영상물에 협력한 개별 각 실연자의 표시는 요구되지 않는다.<sup>87)</sup>

---

85) 우리나라의 경우 동일성유지권에 관련하여 「TV방영판권 양수인이 영화제작자(영화감독)의 동의 없이 극영화의 장면 중 일부를 삭제하거나 극영화에 포함되어 있던 한글 자막이 없이 TV로 방송되도록 하였다면 이는 TV방송의 기술적 제약으로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의 사례도 있다(대판 2002. 3. 15. 2001다72272).

86) 독일의 저작권법 제93조제1항

87) 독일의 저작권법 제93조제2항

## 제 4 장 영상저작물의 창작, 이용 및 유통

## 제 1 절 개 설

영상저작물은 종래 언론·출판의 자유에 해당하는 하나의 표현물로 보호되는 것으로 미국의 판례<sup>88)</sup>와 우리 나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확인한 바가 있다.<sup>89)</sup> 즉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헌법 제2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의사표현의 자유는 바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속한다. 따라서 의사표현의 매개체를 의사표현을 위한 수단이라고 전제할 때, 이러한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헌법 제21조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의사표현·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88) Joseph Burstyn Inc. v. Wilson. 사건에서는 영상물이 표현자유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다는 이전의 판결을 뒤집고 보호를 인정하였다. 1952년까지만 해도 영상물이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 법원은 보호를 부정하는 이유로 영상물의 제작, 배포, 상영이 사적이익을 위한 경제적 행위라는 점을 들었다. Joseph 사건에서 외국영화의 배급자인 Joseph는 ‘기적’이라는 영화의 미국 내 상영권을 취득하였다. 뉴욕교육부 영화담당처는 최초에는 영화상영을 허가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항의문서가 빗발치자 결국 동 영화가 신성모독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상영허가의 취소를 명하였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상영허가의 취소판결을 유지하였으나 연방대법원은 이를 뒤엎고 영상물이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됨을 인정하였다(Joseph Burstyn Inc. v. Wilson., 72 S. Ct. 646 (1972)).

89) 게임물과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는 「의사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속하고, 여기서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 게임물은 예술표현의 수단이 될 수도 있으므로 그 제작 및 판매 배포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보장을 받는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기본권으로 보장된다고 하여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헌법이 제21조제2항에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 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고 특별히 규정하여 언론·출판의 자유(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허가나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헌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법률로써도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허가나 검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헌재 2002. 2. 28, [99헌바117])고 보았다.

제한이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견해이다. 즉 담화·연설·토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사진·조각·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영화도 의사형성적 작용을 하는 한 의사의 표현·전파의 형식의 하나로 인정되며, 결국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되는 의사표현의 매개체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라고 보았다.<sup>90)</sup> 따라서 영화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간섭은 배제되어 왔으며 이와 같은 원칙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나 예술의 자유에 해당하는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데에는 매우 우수하다.

그렇지만 헌법 제3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표현의 자유나 영화의 자유의 일반원칙도 청소년의 보호와 음란물의 차단 등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이 요구된다. 따라서 영상저작물에 관한 입법은 주로 유통의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개인의 언론·출판의 자유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여 왔다. 다시 말해서 영화는 하나의 예술로 다루어져 왔고 영화가 가지는 산업적인 측면은 최근에서야 부각되기 시작했다.

## 제 2 절 영 화

### I. 영화의 제작 및 수입

#### 1. 개 관

현행 영화진흥법은 영화의 제작과 수입에 관련해서 주로 유통질서의 확립과 건전한 영상문화의 조성이라는 차원에서 규제적인 내용의 입법이 이루어져 왔다. 즉 영화업자의 신고의무와 영화제작자의 신고의무를 두고 있으며, 공동제작한 영화의 경우에 한국영화의 인정여부를 판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90) 헌재 2001. 8. 30, [2000헌가9]; 헌재 1996. 8. 29, [94헌바15]

## 2. 종래 영화제작업의 등록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과거 영화법에서는 영화제작업을 등록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영화법에서 영화의 제작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영화산업의 육성발전을 촉진하고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영화제작업자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그 기능이 공공의 이익과 질서유지에 합당하게 지속적으로 유지·발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화법 제4조제1항 및 제32조제1호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내용을 간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주무행정관청의 기본업무인 행정상의 절차와 행정업무상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게 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는데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입법부가 그러한 규제를 함에 있어서 입법재량을 남용함으로써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는 등 자의적인 입법을 하지 않는 이상 그 규제입법 자체를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다.<sup>91)</sup> 현행 영화진흥법은 영화제작업을 신고업으로 하여 그 규제의 정도를 완화하였다.<sup>92)</sup>

## II. 상영등급분류

### 1. 개 관

#### (1) 상영등급제도

영화는 상영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사전심의를 받아서 그 등급에 따라 상영한다. 이와 같은 영화의 상영등급제도는 청소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즉 영상물등급제도의 목적은 영상물에 대하여 유해성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 영상물로부터 청소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영화협회의 등급분류 목적은 부모들에게 영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아동들에게 어떠한 영화를 보게 할 것인가를 결

91) 헌재 1996. 8. 29, [94헌바15]

92) 영화진흥법 제4조제1항 참조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등급분류의 목적은 순수한 아동 보호에 있으며 등급이 작품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즉 영상물등급제도는 영상물의 작품성이나 음란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물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생물학적 성숙도에 따라서 그에 적합한 내용물을 제공하여 청소년을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이익의 실현에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영상물등급제도가 요구된다.

## (2) 종래 영화의 등급보류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종래 영화는 상영되기 이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해 당해 영화의 심의 및 상영등급분류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과정에서 당해 영화의 내용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영등급분류가 보류되었다. 여기서 영화의 상영등급분류보류제도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화의 상영 이전에 영화의 상영등급을 분류함에 있어 당해 영화가 일정한 기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영화에 대한 등급분류를 일정 기간 보류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영상물등급심의제도의 연혁을 살펴볼 때, 영화의 상영 이전에 영화의 내용을 검토하여 당해 영화의 내용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상영을 금지함으로써 폭력·음란의 과도한 묘사로부터 청소년 및 공서양속을 보호하고, 기타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를 위해 대중성·오락성·직접성이 그 특징인 영화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등급분류보류의 횟수제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등급분류보류기간의 상한선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효과가 있었다. 즉 종래 법률조항에 의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급분류를 보류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3개월 이내의 일정한 등급분류보류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등급분류보류의 원인이 치유되지 않는 한, 즉 영화제작자가 자진해서 문제되는 내용을 삭제 내지 수정하지 않는 한 무한정 등급분류가 보류될 수 있었다. 이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등급분류보류’에 의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무한정 영화를 통한 의사표현

이 금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93)</sup>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영화에 대한 등급보류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구법하에서 영화에 대한 등급보류 결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로 인하여 영화진흥법에서는 등급보류제도를 폐지하고 제한상영가제도를 도입하였다.

## 2. 등급분류와 그 목적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영상물등급제도의 목적은 영상물로부터 청소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그 구체적인 실현방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영상물에 대하여 유해성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영상물등급제도는 영상물의 작품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물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생물학적 성숙도에 따라서 그에 적합한 내용물을 제공하여 청소년을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이익의 실현에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가치 중립적이고 비검열적인 영상물등급제도가 요구된다. 또한 영상물등급제도는 지배세력의 이데올로기나 정부의 사전검열이 아닌 형태로 운영되고 마련될 것이 요구되고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공공성을 지닐 수 있는 자율적인 기관에서 등급부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 3. 등급분류의 종류와 그 기준

### (1) 등급의 종류

우리 나라의 경우 영화의 상영등급은 전체관람가, 12세관람가, 15세관람가, 18세관람가, 제한상영가라는 5단계의 등급이 있다. 미국의 경우에 미국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MPAA)

93) 등급분류보류제도가 헌법 제21조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이고,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우리 재판소가 사전등급제 자체는 사전검열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또한 수반되는 강제수단들이 이러한 사전등급제를 관철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등급분류보류결정은 등급분류의 일환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등급분류보류가 결정된 영화에 대해서도 이러한 강제수단들이 적용된다. 따라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보류제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라는 요건도 충족시킨다.」고 보았다(헌재 2001. 8. 30, [2000헌가9]).

는 G(General Audiences), PG(Parental Guidance Suggested), PG-13(Parents Strongly Cautioned), R(Restricted), NC-17(No One 17 and Under Admitted)의 5단계의 등급분류를 두고 있고, 독일의 경우도 청소년보호법에서 연령 제한 없이 상영가, 6세 이상 상영가, 12세 이상 상영가, 16세 이상 상영가, 청소년상영금지를 두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자율심의기구인 영화윤리규정관리위원회에서 G(General Audiences), PG12(Parental Guidance Suggested), R-15(Restricted), R-18이라는 4단계의 등급을 부여한다.

## (2) 등급의 기준

위에서 살펴본 영화의 등급종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등급기준이 요구된다. 즉 등급종류는 실무상으로 해당 등급을 정하는 추상적 규범에 불과하여 보다 세부적인 지침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추상적인 등급분류와 상영기준만을 적용할 경우 구체적·개별적인 경우에 심사위원의 개인적인 견해에 의하여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등급부여상의 기준차이에 의한 실무상의 등급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등급부여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비디오 심의규정’을 제정하여 해당 등급의 등급분류를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미국 및 독일의 등급기준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전체관람가

전체관람가는 모든 연령의 관람객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를 의미하고, 이 등급에 해당하려면 (i)주제 및 내용을 모든 관람객이 이해할 수 있을 것 (ii)대사 및 영상에 있어서 음란·폭력 기타 모든 연령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을 것 (iii)기타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 모든 연령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표현이 없을 것에 해당되어야 한다.<sup>94)</sup>

94) 영화·비디오 심의규정 제3조 참조

우리 나라의 전체관람가에 해당하는 등급은 미국의 경우 G등급이 여기에 해당된다(미국의 경우 “PG등급”도 있다<sup>95)</sup>). G는 모든 관객에게 관람이 허용되는 영화를 말한다. 이는 주제, 언어, 성, 폭력성 등에서 어떠한 부정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G가 곧 아동용 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G영화에서는 강한 언어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으며 폭력성은 최소한에 그친다. 육체적 노출이나 성적인 장면은 존재하지 않으며 약물과용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독일의 경우 “연령제한없이 상영가등급”이 여기에 해당된다(독일의 경우 “6세이상 상영가 등급”도 있다<sup>96)</sup>). 독일의 “연령제한 없이 상영가 등급” 경우 이 등급의 영상물들은 통상 15분 이내의 영상물이며, 상영시간이 15분을 초과하는 영상물인 경우에는 사실상 이 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등급의 영상물들은 아동들에게 교육적인 방식으로 상영되는 비상업적인 아동물이라는 특징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요소가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다. 따라서 상업적이거나 다소 교육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는 영상물들도 이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다. 언어면에 있어 이 등급의 영상물에 사용되는 언어들은 아동들이 쉽게 이해가 가능하여야 하며, 너

95) 미국의 PG등급 경우 PG는 부모의 지도가 요구됨을 의미한다. 아동들에게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PG등급을 받은 영화는 아동의 관람 전에 부모에 의한 점검을 필요로 한다. PG영화에는 신성모독의 내용이나 폭력성, 짧은 시간의 신체 노출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그 정도에 있어서 강하지 않아 지도를 넘어 부모의 강한 주의를 요구하지는 아니하며, 약물사용에 관한 내용은 PG 등급영화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96) 독일의 “6세 이상 상영가 등급” 경우 이 시기의 아동들은 외부적 환경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상물내의 개별 장면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영상물의 개별적 내용이 전단계의 등급과 비교할 때 시종일관 긍정적인 내용은 아니고 부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들은 긍정적인 요소들에 의해 배제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후반부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결말을 맺도록 하여야 한다. 비록 6세 이상의 아동들에게 상영 가능한 등급이 부여되기는 하지만 이 등급의 영상물 심사에 있어 주로 고려되는 사항은 6-8세의 어린이들이 시청가능한가의 여부이다. 또한 10-12세의 아동들은 6-8세의 아동들보다 일반적으로 미디어와 영상물에 대한 경험이 많으므로 자신이 당해 영상물에 대하여 다소나마 비판의식이 있을 수 있으나, 여전히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영상물에서 묘사된 세계가 아동들의 의식 속에 병존할 수 있으므로 긍정적이고 감성적인 경험을 줄 수 있는 영상물이어야 이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다(Vgl. Hönge, Folker, Kriterien für die Jugendprüfung, <http://www.spio.de/2FRAMES/FSK/FSK4.HTM>).

무 과도한 양의 언어를 사용하거나 지나치게 속도가 빨라서도 안 된다. 또한 배경음악 역시 지나치게 시끄럽거나 공격적이고 위협적이어서는 안 된다. 내용면에 있어서도 아동들은 당해 영상물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므로 이 연령의 아동들에게 상영되는 영상물은 아동들을 즐겁고 흥미롭게 하며, 영상물을 통해 재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동물들이 출연하는 경우 동물들은 이러한 아동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의 출연여부도 이 등급을 부여하는 데에 있어 고려의 대상이 된다.<sup>97)</sup>

(나) 12세관람가

12세관람가는 12세 미만의 관람객이 관람할 수 없는 영화(다만, 부모 또는 이에 준하는 보호자 동반시 관람가)를 의미하고, 이 등급에 해당하려면 (i)주제 및 내용을 12세 미만인 자가 이해할 수 없으나 부모 또는 이에 준하는 보호자의 직접적 도움을 받아 관람할 경우 이해할 수 있을 것 (ii)대사 및 영상에 있어서 12세 미만인 자가 정상적인 가족관계나 학교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접할 수 없는 수준의 유해한 표현이 있으나 영화의 경우 보호자의 직접적 도움을 받아 관람할 경우 이해할 수 있을 것 (iii)기타 12세 미만인 자가 보호자의 도움 없이 관람할 경우 정신적·육체적으로 해를 미칠 수 있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표현되어 있을 것에 해당되어야 한다.<sup>98)</sup>

미국의 경우 PG-13등급이 유사하다. PG-13은 영화상의 일정 내용이 13세 이하의 아동들에게 부적절할 수도 있으므로 부모들의 강한 주의를 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모들은 영화관람시 10대 이하의 아동이 같이 관람할 것인지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PG-13은 폭력성, 노출정도, 성적인 표현, 언어 기타 내용 면에서 PG등급의 한계를 넘어섰으나 R등급에는 미치지 않는 영화를 말한다. 약물사용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영화는 적어도 PG-13등급을 받게 된다. 만약 노출의 정도가 성

97) Vgl. *Höngel, Folker*, Kriterien für die Jugendprüfung, <http://www.spio.de/2FRAMES/FSK/FSK4.HTM>.

98) 영화·비디오 심의규정 제3조 참조

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PG-13등급을 받을 수 없으며 폭력성의 정도가 강하거나 지속적이어도 R등급을 받게 된다. 보다 강하게 성적인 경향을 가진 언어의 1회의 사용은 단순히 부가적인 것이라 하여도 PG-13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그러한 언어의 1회 이상 사용은 이들 언어들이 성적인 맥락에서 사용된 경우와 더불어 R등급을 받게 된다. 그러나 R보다 낮은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 미국 학부모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반영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투표에 의하여 이들 영화에 대하여 더 낮은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12세 이상 상영가 등급”이 여기에 해당된다. 통상 12세 이상 정도의 청소년들은 외부세계에 대하여 거의 모든 사항을 인지할 수 있으며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구별할 수 있다. 또한 영상물 내에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별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미디어를 통하여 급속한 사회화가 진행되므로 이러한 사회화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내용, 가령 부모로부터의 절대적 독립, 성인세계에 대한 비판, 종교적 문제에 대한 논쟁 등이 주제인 영상물에는 이 등급을 부여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 또한 이 등급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영상물에서 직접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내용적 측면과 아울러 당해 영상물에 포함되어 있는 배후의 사상적 측면도 고려된다.<sup>99)</sup>

#### (다) 15세관람가

15세관람가는 15세 미만의 관람객이 관람할 수 없는 영화(다만, 부모 또는 이에 준하는 보호자 동반시 관람가)를 의미하고, 이 등급에 해당하려면 (i)주제 및 내용을 15세 미만인 자가 가족·학교 및 이에 준하는 사회적 모임 등에서 얻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ii)대사 및 영상에 있어서 15세 미만인 자가 가족·학교 및 이에 준하는 사회적 모임 등에서 공개적이고 정상적인 활동 등을 통하여 접할 수 없는 수준의 선정성, 폭력성 등이 표현되어 있을 것 (iii)기타 15세 미만인

99) Vgl. *Höngel, Folker*, Kriterien für die Jugendprüfung, <http://www.spio.de/2FRAMES/FSK/FSK4.HTM>

자가 관람할 경우 정신적·육체적으로 해를 미칠 수 있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습 등에 관한 사항이 표현되어 있을 것에 해당되어야 한다.<sup>100)</sup>

미국의 경우에 이 등급과 가장 유사한 등급이 R등급이다. R등급의 경우 17세 이하는 부모나 성인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에만 관람이 허용되는 영화를 말한다. R등급 영화는 성인들이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부모들은 이들 영화의 관람을 위하여 아동을 동반하기 전에 이 영화에 대한 정보를 미리 지득할 것이 강하게 요구된다. R등급 영화는 격렬한 언어, 강한 폭력성, 선정적 장면 속의 노출 또는 약물남용 및 기타 요소들과 이들의 결합을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아동들에게 R등급 영화의 관람을 허용하기 전에 이러한 요소들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에 이 등급에 유사한 것이 “16세 이상 상영가 등급”이고, 이 연령층의 청소년층들은 다른 연령층보다도 더욱 영상물에 대한 구매나 시청이 활발한 세대이고 미디어를 통한 간접경험은 많으나 사회에 대한 직접경험은 거의 전무한 연령층이다. 따라서 이 연령층에게는 어느 세대보다도 미디어의 폐해가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이미 영상물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영상물의 내용이 폭력을 현실적으로 미화하고 있는지 또는 폭력을 오락의 일부로 표현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등급부여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 (라) 18세관람가

18세관람가는 18세 미만의 관람객이 관람할 수 없는 영화(단,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관람불가)를 의미하고, 이 등급에 해당하려면, (i)주제 및 내용을 18세 미만의 자의 일반적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것 (ii)대사 및 영상에 있어서 18세 미만의 자가 관람할 경우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폭력성이 직접적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을 것 (iii)기타 18세 미만의 자가 관람할 경우 정신적·육체적으로 해를 미칠 수 있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에 해당되어야 한다.

100) 영화·비디오 심의규정 제3조 참조

미국의 경우 NC-17등급이 유사한데, NC-17은 17세이하의 아동은 관람이 금지되는 영화를 말한다. NC-17은 17세 이하의 아동들이 관람하기에는 지나치게 성인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아동도 관람이 허용되지 않는다. NC-17 등급영화가 반드시 외설물이나 포르노물은 아니다. 외설물 또는 포르노물이라는 표현은 법률용어로서 이들의 사용은 법원의 판단을 거쳐 외설물 또는 포르노물로 판정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등급심사위원회는 외설물이나 포르노물이라는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NC-17 등급영화는 폭력성, 선정성, 변태적 행위, 약물남용, 기타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아동들의 관람이 허용되지 않는다. 독일의 경우 “청소년 상영불가 등급”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등급의 영상물들은 2003년 3월 30일까지는 “18세 이하 상영불가(Nichtfreigegeben unter 18 Jahren)”등급으로 표기되었으나, 2003년 4월 1일부터는 청소년 상영불가 등급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분류체계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적 내용이나 등급부여의 기준에는 변화가 없다. 따라서 당해 영상물이 폭력에 대하여 상세하게 묘사하거나 폭력자체가 영상물의 본래의 제작목적일 경우, 사적 제재(Selbstjustiz)를 일상화하는 경우, 폭력을 문제해결의 정당한 수단으로 표현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상영불가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성적인 표현에 있어서도 여성을 단순히 소비적인 욕망의 대상으로 표현하거나 다른 차별화된 감정적인 조건 없이 성욕을 유일한 내용으로 하는 경우 등 성적 표현이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청소년 상영불가의 등급을 부여받게 된다.<sup>101)</sup>

#### (마) 제한상영가

우리 나라의 경우 미국이나 독일 등과 달리 “제한상영가”라는 등급을 두고 있는데, 제한상영가에 해당하려면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단,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관람불가)로

101) Vgl. *Hönge, Folker*, Kriterien für die Jugendprüfung, <http://www.spio.de/2FRAMES/FSK/FSK4.HTM>

서 등급분류기준 내용 및 표현기법이 18세관람가 기준을 벗어나 과도하게 일반국민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반사회적인 내용인 경우이어야 한다.

### (3) 문제점과 개선방안

위에서 살펴본 미국 및 독일의 등급분류 종류와 그 심의기준에 관련하여 우리 나라의 심의기준은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실무상 등급부여에 있어서 심의위원 사이에 상호 현저한 견해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높다. 그러므로 차후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한 심의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산업의 발달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영상물등급제도에 수반하여 우리 나라 영화진흥법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3가지의 경우를 지적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제한상영가제도이고, 두 번째는 영화진흥법의 연소자 개념에 대한 것이며, 세 번째는 등급분류심사에 있어서 사업자 등에 의한 자율심사제도의 도입에 관한 것이다.

#### (가) 제한상영가제도의 폐지

영화에 제한상영가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청소년의 보호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등급구분을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제한상영가제도가 실효성(제도적 차원과 경제적 차원 등에 비추어)을 거둘 수 있는지도 의문이기 때문이다. 본래 영상물등급제도는 이용자에게 해당 영상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영상물 등의 예술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음란물의 판단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결국 영상물등급제도의 제한상영가 도입은 영화에 대한 등급보류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응한 개선방안으로 음란성이 문제되는 영화에 대하여 어쩔 수 없이 18세관람가에 해당하는 등급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음란성이 문제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사법기관의 판단을 맡겨두어야 할 문제에 해당된다.

## (나) 청소년 개념의 변경

올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청소년의 개념을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 개념을 준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음악산업진흥법(안)’과 ‘게임물 및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안)’에도 동일하다). 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제2조제8호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 개념을 차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념정의의 장점은 그 동안 청소년보호법과 음비계법에서 연소자와 청소년이라는 개념을 달리 사용한 것을 통일한 점에서 타당하다고 평가된다.<sup>102)</sup> 그렇지만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 개념을 도입한 것은 현행 영화진흥법의 연소자 개념과 음비계법 제2조제3호의 청소년 개념을 확대하여 규제를 강화한 것에 해당되고 또한 청소년보호법의 비통상적인 연령계산 방법을 도입하는 것도 문제된다.

먼저, 영화진흥법의 연소자 개념에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를 포함시키고 있는데,<sup>103)</sup> 이와 같은 입법이 타당한 것인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102) 종래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청소년의 연령에 관한 입법상의 문제점을 다룬 사례가 있다. 즉 대법원은 『구 청소년법 제2조제1호가 청소년의 연령을 종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높임과 아울러 비디오물감상실을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로 정하여 청소년법상으로는 19세 미만자의 비디오물감상실 출입을 금하도록 하였으면서도, 여전히 구 음반법상으로는 비디오물감상실 출입을 금하는 대상을 연소자에 해당하는 18세 미만자로 한정된 관계로, 비디오물감상실업자가 자신의 업소에 18세의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 행위에 관한 행정상 제재 여부를 따짐에 있어서 그 행위는 구 음반법에 의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구 청소년법에 의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게 되는 등 형식적으로는 두 법률 규정 상호간에 모순과 충돌이 있는 것 같은 형국이 초래되었고, 나아가 기록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위 구 청소년법이 1999. 7. 1.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9. 10. 27. 피고 소속 문화공보실 주관으로 원고 등에게 18세 미만자 출입금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면서 같은 취지의 표시를 업소에 부착하라는 교육자료를 배부하는 등 피고 역시 어느 규정을 준수할 것인지에 관하여 혼란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가 자신의 비디오물감상실에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가 관련 법률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었던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보았다(대판 2002. 5. 24. [2001두3952]).

103) 마찬가지로 현행 음비계법의 청소년 개념에 대한 정의의 부당성을 지적하지 않을

다른 외국의 사례(독일의 청소년보호법) 등에 비추어 이례적이고 실무상에서도 청소년의 확인 이외에 고등학교의 재학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법집행의 실효성을 훼손함), 무엇보다도 18세 이상의 자를 청소년으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만 18세 이상의 자를 청소년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다.

다음으로, 청소년보호법은 제2조제1호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에서 소위 연19세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청소년 개념의 설정은 우리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례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 개념은 통상적인 연령의 계산방법과 차이가 있는데, 청소년보호법의 제정당시 만 18세미만의 자로 한정된 것을 만 19세미만의 자로 높이는 과정에서 연 19세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만 18세미만의 자를 청소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고, 만19세미만의 자로 높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

#### (다) 자율심의제도의 도입

우리 나라의 영화진흥법과 음비계법에서 등급분류와 그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자에 의한 자율적인 등급부여제도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은 제12조제1항에서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여부를 결정하고 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그 결정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여 사업자 등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를 두고 있는 것에 그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2003년 4월 1일부터 당해 영상물이 정보프로그램(Infoprogramm), 교육프로그램(Instruktionsprogramm) 또는 학습프로그램(Lehrprogramm)에 해당하고 영상물이 명백히 어린

---

수 없다. 즉 음비계법 제2조제13호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사람(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의 청소년에 대한 개념정의에서는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자를 청소년이라 하고 예외적으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8세 이상의 자를 별도로 청소년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청소년의 성장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프로그램 공급자는 당해 프로그램에 대하여 스스로 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일 프로그램 공급업자가 이러한 자율등급부여 규정을 남용하거나 위반하여 정보, 교육, 학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영상물에 대하여 이러한 등급을 스스로 부여한 경우에는 각 주의 최고청소년청에서는 당해 프로그램 공급업자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할 수 있으며, 당해 사업자는 형법 또는 행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당해 사업자는 이러한 위험성을 피하기 위하여 자율심사협회에 등급부여를 위임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독일처럼 관련조치를 마련한 후 영화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진 사업자에게 영화가 명백히 정보제공이나 교육제공 등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등급을 표시하여 유통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 Ⅲ. 영화의 상영

우리 나라의 영화진흥법에 의하면, 영화가 상영되기 위해서는 그 상영 이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분류받아야 하고,<sup>104)</sup>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영화는 상영이 금지되며,<sup>105)</sup> 만약 상영등급의 분류를 받지 않은 채 영화를 상영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sup>106)</sup>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영화가 상영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그 상영금지 혹은 정지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sup>107)</sup> 이러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벌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sup>108)</sup> 또한 우리 나라의 영화진흥법은 영화상영관의 등록의무를 두고 있고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영화상영에

104) 영화진흥법 제21조제1항

105) 우리 나라의 영화진흥법은 (i)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영화 (ii)허위의 방법으로 상영등급을 분류받은 영화 (iii)분류받은 상영등급을 변조 또는 위반하여 상영하는 영화 (iv)상영등급을 분류받은 영화와 내용이 다르게 상영하는 영화 (v)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예고편 및 광고영화 (vi)상영신고를 하지 아니한 영화에 해당하는 경우 그 상영을 금지시키거나 정지시킨다(영화진흥법 제29조).

106) 영화진흥법 제41조제1항제2호

107) 영화진흥법 제29조제1호

108) 영화진흥법 제40조제3호

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한상영가 영화의 상영과 유통제한에 대하여도 규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상영등급을 분류받은 후에 상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00유로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sup>109)</sup>

#### IV. 등급분류기관

##### 1. 개 관

###### (1) 영상물등급제도의 변천

우리 나라의 경우 영상물등급심사기관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 지정되어 있고, 동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음비계법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그 동안 수차에 걸친 변화를 경험하여 왔고, 올해 음비계법의 분법화에 관련된 입법들에서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개선방안이 포함되어 있다.<sup>110)</sup> 영상물등급심의제도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연혁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 나라에서 영화에 대한 심의제도는 1962. 1. 20. 법률 제995호에 의해 영화법이 제정된 당시부터 도입되었다. 이 당시의 심의주체는 문공부장관이었고, 그 운영방식은 영화상영사전허가제를 채택하고 있었다. 그리고 1984. 12. 31. 법률 제3776호에 의해 영화법이 일부개정되면서 심의주체는 공연윤리위원회로 되었으며, 운영방식은 사전심의제의 형태를 띠었다. 그런데 1995. 12. 30. 법률 제5129호에 의해 영화법이 폐지되고 새로이 영화진흥법이 제정되면서도 이러한 사전심의제는 여전히 채택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 재판소는 1996. 10. 4. 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위헌제청 등의 사건에서 이러한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한 사전심의가 사전검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위헌선언하였다.<sup>111)</sup> 현

109) 독일의 청소년보호법 제28조

110) 올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개선과 관련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조항을 신설하여 영상물등급에 공정성을 강화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111) 현재 1996. 10. 4. [93헌가13등]

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결과 1997. 4. 10. 법률 제5321호에 의한 영화진흥법의 일부개정으로 상영등급부여제도(사전등급제)가 도입되었는데, 이러한 등급부여를 위한 심의주체는 종전의 공연윤리위원회에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로 바뀌었으며, 등급구분은 전체관람가, 12세관람가, 15세관람가, 18세관람가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등급부여보류제도가 신설되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급부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1999. 2. 8. 법률 제5929호에 의한 영화진흥법의 전문개정에서는 심의주체가 다시 영상물등급위원회로 바뀌었으며, 등급구분에 있어서도 ‘15세관람가’ 등급이 삭제되었고, 등급보류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변경되었다. 그런데 우리 재판소는 1999. 9. 16. 음반및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등 위헌제청사건에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에 의한 비디오물의 사전심의도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하여 구 음반및비디오물에 관한 법률(1997. 4. 10. 법률 제5322호로 개정되고, 1999. 2. 8. 법률 제5925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상의 조항들에 대해서 위헌선언을 하였다.<sup>112)</sup> 한편, 2000. 1. 21. 법률 제6186호에 의한 영화진흥법의 일부개정에서는 기존에 삭제되었던 ‘15세관람가’ 등급이 다시 신설되었다.

## (2) 영상물등급심의기구

영화에 대한 등급부여는 국가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국에서는 이를 관철하고자 민간기관(단체)에서 등급분류의 기준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해당 등급을 부여하는 국가도 있고(예컨대, 미국과 일본), 관련법령에서 등급의 종류와 그 표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위원의 구성에 민간전문가의 참여 및 그 구성방법의 특수성(추천방식) 등을 통하여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국가(예컨대, 독일)도 있다.

먼저, 미국의 경우 영화와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분류로서 가장 널리 수용하는 것이 미국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MPAA)에 의한 등급심사이다. 미국영화협회는 MGM, Columbia, Pa-

112) 현재 1999. 9. 16. [99헌가1]

ramount, Twentieth Century-Fox, Sony Pictures, Universal, 및 Warner Brothers를 포함한 주요 영화사로 구성된 민간단체로 실제로 회원들뿐만 아니라 비회원들도 자신들의 작품의 등급심사를 이 위원회에 의뢰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영화 및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분류는 민간단체에 의한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한다. 즉 영화나 비디오물의 제작자들은 등급심사를 위하여 자신들의 작품을 협회에 제출하도록 강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동 협회의 등급분류표시 즉 G, PG, PG-13 등은 연방상표법에 의해 등록된 상표이며 따라서 협회의 등급분류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표시가 협회의 동의없이 사용될 수는 없다. 극장의 운영자들은 1968년 현재와 같은 등급분류의 설립에 공동으로 참여하였으며 그 지침 안을 자발적으로 준수하였다. 1980년대 접어들면서 가정용 비디오 카세트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비디오 소매상들도 영화등급체계에 관한 자발적 지침에 동참하였다. 따라서 부모들은 등급체계를 통하여 자신들의 자녀가 관람하게 될 영화에 대한 정보를 얻었던 것과 동일하게 비디오 테이프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영화의 등급은 비디오 카세트의 포장과 카세트 자체 모두에 표시되었다.

다음으로, 독일의 경우 영화와 비디오의 규제기관은 방송과 달리 원칙적으로 자율기구로서 1948년에 영화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영화산업최고협회(Spitzenorganisation der Filmwirtschaft, 이하 SPIO)가 규제를 담당하며, 그 하부기관으로서 영화산업자율규제기구(Freiwillige Selbstkontrolle Filmwirtschaft, FSK)가 독자적인 심사규칙을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등급심사를 한다.<sup>113)</sup> 자율심사협회에 의해 부여된 등

113) 자율심사협회의 주요조직으로서는 먼저 자율심사협회의 제반업무와 영상물등급부여에 관한 원칙을 심의하고 개정하는 원칙위원회(Grundsatzkommission)와 제1심 등급부여기관으로서의 직무위원회(Arbeitsausschuss), 제1심인 직무위원회의 등급부여 결정에 대한 제2심 기관으로서의 주위원회(Hauptausschuss) 및 재심기관인 항소위원회(Appellationsausschuss)로 구성된다. 영상물이 온라인상으로 유통되거나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영상물들의 내용규제에 대하여는 멀티미디어서비스사업자들이 설립한 멀티미디어서비스제공자 자율심사협회(Freiwillige Selbstkontrolle Multimedia- Dienstanbieter e.V., FSM)가 담당한다. 멀티미디어서비스제공자 자율심사협회는 온라인상으로 유통되는 멀티미디어서비스에 대하여 내용상의 선정성, 사회상규 위배성, 또는 법률위반여부 등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기구이다. 멀티미디어서비스제공자 자율심사협회는 청소년매체보호주협약 제7조에 근거하여 설

급은 연방 각주에서 모두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자율심사협회에서는 자율심사협회원칙(FSK Grundsätze)을 제정하여 이에 의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등급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자율심사협회원칙에 의해 부여된 등급은 국가에 의해 반포된 법률은 아니지만 연방 내의 각 주에서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데에 그 특색이 있다.<sup>114)</sup>

마지막으로, 일본에서는 정부주도의 등급제는 없지만 민간부문에서는 자율규제의 일환으로서 영화윤리규정관리위원회에서의 등급제가 운영되고 있다. 즉 영화윤리규정관리위원회(소화 31년 12월 설립)는 영화제작, 수입 후 공개 전 단계에서 영화윤리규정(映畫倫理規定)에 기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그 대상은 극장영화뿐만 아니라 극장영화가 비디오화된 것도 포함된다. 영화윤리규정에 따라 분류되는 등급은 모두 4가지이며, 등급의 표시는 매체별로 다르게 이루어진다. 즉 신문, 잡지, 차내 광고 등의 표시는 반드시 로고마크와 문언을 표기하여야 하며, 포스터 및 TV CF에 있어서의 표시는 로고 마크만으로 하며 이 때 문언은 생략할 수 있다.

## 2. 영상물등급위원회와 헌법재판소의 판단

### (1) 구성 및 운영

우리 나라의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음반·비디오물·게임물 및 공연물과 그 광고·선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는 등급심의기관으로 설립되었다.<sup>115)</sup> 즉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이라는 내용물에 대한 등급심사를 함께 해당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영상물등급위원회는 (i)영상물등의 등급분류 및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ii)영상물등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유통·시청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 등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립되었으며, 비록 자율규제기구이기는 하지만 다른 청소년보호기관이나 형사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 하에 멀티미디어서비스에 대하여 자율적인 규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114) v. *Hartlieb, Horst*, Handbuch des Film-, Fernsehen- und Videorechts, München 3. Aufl. 1991. S. 63f.

115) 음비계법 제5조

(iii)위원회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iv)영상물등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v)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직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되거나 위탁받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들 업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영상물의 등급분류이다. 영화진흥법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 영화진흥법 제23조에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우리 나라의 영상물등급위원회는 특이한 방식으로 위원을 위촉하고 있는데, 음비게법 제7조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영상물·청소년·법률·교육 및 언론분야와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여 대한민국예술원장에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위촉에 대한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 (2) 헌법재판소의 판단

과거 공연법에서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심사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검열가능성의 여지를 두고 남겨두고 있다. 그 이유와 관련해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를 받기 위하여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는데, 이들 중에서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는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관련하여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고(공연법 제18조 제1항),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구성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공연법 제18조 제2항, 공연법시행령 제22조), 국가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공연법 제30조)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권이 심의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

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비록 그의 심의 및 등급분류활동에 있어서 독립성이 보장된 기관이라 할지라도(공연법 제23조), 그것이 검열기관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심의기관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단지 심의절차와 그 결과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형태의 심의절차에 요구되는 당연한 전제일 뿐이기 때문이다. 국가에 의하여 검열절차가 입법의 형태로 계획되고 의도된 이상, 비록 검열기관을 민간인들로 구성하고 그 지위의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해서 영화진흥법이 정한 등급분류보류제도의 법적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보류제도는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라는 요건도 충족시킨다.’<sup>116)</sup>고 보았다.

### 3. 문제점과 개선방안

위에서 살펴본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지적한 것처럼 심의기구의 비검열성은 우리 나라만의 고유한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외국의 사례, 특히 우리 나라와 유사한 심의제도를 가진 독일의 경우를 참고하여 우리 나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 비디오물, 음반 및 게임물이라는 상호차별화 된 내용물을 함께 심사하고 있는데, 하나의 심의기구에서 이처럼 다양한 콘텐츠를 등급분류하는 것이 최근 콘텐츠시장의 팽창에 부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의 콘텐츠시장(특히, 게임물)은 급격히 팽창하고 있고 보다 전문화 된 등급부여기관이 요구되어 왔기 때문이다. 즉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이들 콘텐츠를 독점적으로 심의해야 할 이유는 없으며 세계적인 추세에도 반드시 부합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해당 콘텐츠에 대한 등급심의기구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데, 올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음비계법의 분법화 법안들에서는 콘텐츠에 따라서 심의기구는 한정하고 있지만 심의기구의 다양성은 보장하려는 시도가 있다(예컨대, 영상물, 음악 및 게임물로 구분하여 심의기구를 달리하고 있음).

116) 현재 2001. 8. 30, [2000헌가9]

둘째, 헌법재판소는 과거 공연법하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검열기관의 특성을 인정될 수도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그 근거로 표현물의 제출 의무, 행정주체에 의한 사전심사절차, 강제수단을 그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였다. 이들 논거중에서 검열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행정주체에 의한 사전심사이고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일면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위헌가능성을 희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방안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선출을 달리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영상물등급관리위원회의 구성은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의 일방적인 추천을 통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입법례는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선출에 있어서 왜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이 독점적으로 추천권을 가지는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시민단체나 민간협회 등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추천받아 대통령(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추천받은 자가 법률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었다면 임명 의무를 강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영화진흥법에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부여에 대한 재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을 하고(동일기관) 그 심의위원도 동일하다. 따라서 재심제도는 사실상 거의 무의미하다고 볼 정도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적어도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재심을 하도록 한다면, 참여하는 위원을 달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제 3 절 비디오물

#### I. 영업의 신고 또는 등록

##### 1. 개 관

영화와 비디오물의 유통규제에 있어서 유통방법이 확연히 구별되어 유통규제에 차이가 발견된다. 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관련사건에서

영화와 게임물의 차이점을 언급하고 있지만, 게임물과 비디오물이 상호 유사한 형태로 유통되고 있어서 비디오물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게임물이라는 용어 대신에 비디오물로 바꾸어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즉 영화와 비디오물은 그 매체적 특성, 영업 및 유통방법이 다르다는 점이 고려되며, 영화의 경우에는 그 영업장소와 영업방법 및 영상테이프의 유통방법이 대중에게 노출되는 공개적인 형태로 수행되기 때문에 사회여론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고 따라서 관할 행정당국이 영화업의 현황을 파악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다. 예컨대, 영화필름의 경우 그 무단복제나 대량복제유통이 쉽지 않지만,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영화에 비하여 그 유통경로, 영업장소 및 영업방법이 소규모인데다 개별적, 분산적, 폐쇄적이어서 공중에 쉽게 노출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그 결과 공중(여론)에 의한 사회적 통제가 어려워 대량복제의 가능성이나 은밀하게 불법 유통되기 쉽고 이에 대한 청소년들의 매체접근도 훨씬 용이하다라는 결론이 도출된다고 헌법재판소는 보았다.<sup>117)</sup> 따라서 이와 같이 영화와 비디오물의 영업장소, 영업형태, 유통경로, 지적소유권의 침해태양, 청소년보호를 위한 대책 필요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만큼 서로 다른 법률에서 서로 다른 형태로 규율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유통현상을 기술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수긍할 수 있지만 영화와 비디오물(게임물) 사이의 규제에 대한 논리비약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 즉 영화는 유통이 필립이기에 무단복제나 대량유통이 쉽지 않다고 하나, 이러한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고 또한 비디오물과 유통규제를 하기가 어려워 그에 대하여 보다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리(규제의 용이성 기준)를 수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오늘날 영화는 필립의 형태로 유통될 여지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영화와 비디오물의 특성, 즉 영화는 극장이라는 공공장소에서 유통되고 비디오물은 통상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에서 이용제공되므로 이에 부합하는 규제의 방법, 정도 등이 결정

117) 헌법재판소는 영화와 게임물과의 사이에 차이점에 대하여 이와 같은 논리를 주장하였다(헌재 2002. 2. 28, [99헌바117]).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영화와 비디오물의 유통차이도 규제의 방법, 정도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따라서 비디오물의 영업을 하는 자는 영화를 업으로 하는 자와 달리 규율하여 왔고 그 규제의 정도에 있어서도 차이를 두어 왔다. 즉 비디오물 판매업이나 비디오물 대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음비계법에 의하여 어떠한 신고나 등록의무도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비교하여 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야 하고,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 2. 종래 등록업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비디오물에 관한 영업을 규제에 대한 사례는 아니지만, 종래 게임물관매업의 등록과 관련한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단을 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규정은 통계를 통한 정책자료의 활용, 행정대상의 실태파악을 통한 효율적인 법집행을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수긍되고, 나아가 이 사건 처벌규정은 등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방법의 적정성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허가제가 아니라 등록제로 규정하여 게임물의 판매에 관하여 단지 형식적 심사에 그치도록 함으로써 그 규제수단도 최소한에 그치고 있다. 또 등록사항도 게임물 판매업을 하는 자로서 당연히 준비하고 예상할 수 있는 게임물의 외형 및 판매업자의 신상에 관한 객관적 정보에 한정되어 게임물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이 사건 등록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달리 번잡한 준비나 설비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게임물 판매업자의 위와 같은 등록의무는 이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입법목적과 비교하여 볼 때 법익의 균형을 상실하고 있지도 아니하다』고 보았다.<sup>118)</sup> 어떠한 영상저작물에 대한 규제의 정도는 근본적으로 해당 관련산업의 필요성과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는 사안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차원에서 당시에는 매우 강한 규제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합헌성을 인정된 것으로 사료된다.

118) 헌재 2002. 2. 28, [99헌바117]

## II. 등급분류제도

### 1. 개 관

비디오의 경우 영화와는 달리 사적영역에서 그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비디오는 다양한 영상저작물을 테이프나 CD 등에 담아서 배포함으로써 누구나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비디오물의 이용자 중에는 상당수의 아동이나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들을 음란성이나 폭력성 등이 수반되는 비디오물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 방안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바로 비디오제작업자 스스로 정확한 등급을 표시하여 자율적으로 유통하는 방안일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영화처럼 자율심의제도나 해당 등급부여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과 독일의 경우에는 우리 나라와 달리 사업자에 의한 자율적 심사가 강조되어 왔다.

먼저, 미국의 경우 몇몇 주에서는 비디오업계 모두가 참여하는 종합적인 자율심사체계의 출현을 기다리지 않고 아동의 음란물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영화협회의 등급체계와 유사한 등급심사를 입법화하고 있다. 많은 주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비디오 대역업자와 판매업자들은 미국영화협회의 초기 등급체계와 유사한 자체 등급체계를 세우고자 하였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비디오들이 전혀 등급 표시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등급 불표시의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의 발매 비디오들이 소규모 독립제작자들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이들은 제작비에 따라 심사비용을 산출하게 되고 그에 따라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미국영화협회의 등급결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제작자들이나 감독들은 영화협회에 등급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이미 자신의 비디오물이 NC-17 등급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게 되고, NC-17 등급이 가져오는 부정적 이미지를 회피하기를 원하였다. 왜냐하면 NC-17 등급이 도입되기 전 과거 NC-17 등급에 해당하는 X 등급은 포르노 산업이 사용하는 XXX 등급과 연계되어 포르노물을 연상

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성인물을 포함하고 있는 비디오 제작자들은 영화협회의 등급심사를 꺼려하게 된다. 많은 비디오들이 등급표시를 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최초에 R등급을 받기 위하여 원작품을 편집하였던 영화들이 편집된 부분을 추가하여 등급표시없이 비디오의 형태로 발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자율심사를 원칙으로 하는 미국등급심사의 특징상 많은 외국영화들이 등급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 비디오물이 이처럼 등급표시없이 발매되고 대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입법이 진행됨에 따라 몇몇 독립된 회사들은 1988년 독립비디오프로그램업협회(Independent Video Programmers Association, IVPA)를 창설하고 동협회에서 제출된 비디오의 등급심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비디오제작자, 배급자들에게 의한 이러한 자율적 움직임이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완전히 배제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더 나아가 새로운 등급체계가 가져올 수 있는 혼동 가능성으로 인하여 비디오협회에 의한 등급심사에 부정적 분위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독립비디오프로그램협회의 심사는 미국영화협회의 등급심사체계와 비교할 때 더 저렴하면서도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대체적인 심사체계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독일의 경우 1980년에 이르러 비디오물의 유통이 활성화되면서 연방비디오협회(Bundesverband Video e. V, BVV)에 소속된 비디오프로그램 공급업자들은 영화의 예에 있어서와 같이 자율적으로 비디오의 등급심사문제와 청소년 유해영상물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그리하여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기 2년 전인 1983년에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BVV와 SPIO간의 협의가 완료되었고, 이 협의사항에 기초하여 당시 임시적으로 이미 영화관상영물로 지정된 2,700여개의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부여를 한 것을 시발로 비디오물에 대하여도 자율심사협회에서 등급을 부여하기 시작하였다. 1985년 청소년보호법에서는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영화는 물론이고, 모든 비디오물과 아울러 영화 및 비디오물에 상응하는 모든 영상물에 대하여 연령에 따른 등급을 부여받을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래 영

화에만 한정되어 있던 자율심사협회의 직무영역은 영화와 비디오, 또는 이에 상응하는 모든 영상물로 확대되게 되었다. 1995년 이 규정과 현재의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새로운 멀티미디어 기술의 발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디오물만이 아니라 CD-ROM, DVD, 레이저디스크(Laserdisc) 등의 새로운 영상물에도 적용되어 이러한 영상물들도 역시 자율심사협회에 의한 등급부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따라서 현재에는 영화적인 기법을 이용한 화면을 포함하는 모든 디지털영상물들도 자율심사협회에 의한 등급심사를 받아야 한다.<sup>119)</sup>

## 2. 등급분류의 종류와 그 기준

### (1) 등급의 기준

우리 나라의 경우 비디오물의 관람등급은 (i)전체관람가(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것) (ii)12세관람가(12세미만의 사람은 관람할 수 없는 것) (iii)15세관람가(15세미만의 사람은 관람할 수 없는 것) (iv)18세관람가(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것) (v)등급보류로 분류한다.<sup>120)</sup> 미국의 경우 비디오물도 영화의 등급분류에 통상적으로 따르지만 비디오물에 한정하여 별도의 등급분류도 마련되어 있다. 즉 1988년 창설된 독립비디오프로그램업협회(Independent Video Programmers Association, IVPA)의 영화자문위원회에서도 제출된 비디오의 등급심사를 한다. 영화자문위원회에 제출된 비디오는 관객에 대한 적절성에 따라 C(Children, 아동물), F(Family 가족물), M(Mature, 성인물), MM(Very Mature, 매우 성인을 위한 내용), MMM(Extremely Mature, 극도의 성인물), X(포르노물)의 여섯개 중의 하나의 표시를 받게 된다. 등급분류 이외에 독립비디오프로그램업협회는 보다 특별한 경고표시를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L은 공격적 언어에 대한 경고, EL은 극도의 언어(Extreme Language)에 대한 경고, V는 폭력성에 대한 경고, EV는

119) 청소년보호법 제12조 및 제14조 참조

120) 음비게법 제20조제3항 및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영화·비디오 심의규정 제2조제2항 참조

극도의 폭력성에 대한 경고(Extreme Violence), S는 선정적 내용에 대한 경고, EPS(Explicit Sexual Content)는 명백히 성적인 내용임에 대한 경고, N은 누드에 대한 경고, EN은 극도의 나체 공개에 대한 경고, SA(Substance Abuse)는 금지약물 남용에 대한 경고를 표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영화와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는 공통된다. 다만, 최근 독일의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어 청소년에 대한 유해물의 접근이 매우 제한되었다. 즉 2003년 4월 1일 이전에 “18세 이하 상영불가”등급의 연령등급이 2003년 4월 1일 부터는 “청소년 상영불가(Keine Jugendfreigabe)”등급으로 변화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공개적으로 상영되는 영화에 있어서 큰 의미가 없으나, 비디오물에 있어서는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영상물에 대한 등급부여를 받았다고 해서 비디오물에 동일한 기준으로 청소년 상영불가 등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따로 자율심사협회에 의해 비디오물에 대해서만 등급을 부여받을 수도 있다.<sup>121)</sup> 결과적으로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동일한 영상물이 “청소년 상영불가”관정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같은 내용의 영상물이 비디오로 제작되어 판매될 때에는 이와 같은 등급을 부여받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었다.

## (2) 등급의 기준

위에서 살펴본 비디오물의 등급분류와 관련해서 각국은 영화의 등급과 동일한 것은 비디오물에도 차용하고 있다. 다만, 우리 나라의 경우 특이한 등급유형인 등급보류의 등급과 관련해서 음비계법에서는 비디오물이 (i)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 (ii)폭력·음란 등의 과도한 묘사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iii)국제적 외교관계, 민족의 문화적 주체성 등을 훼손하여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충분한 내용검토를 위하여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등급분류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122)</sup> 이와 같은 등급보류제도는 근본적으로 등급보류에 해당하는 내용이 삭제 또는 수정될 때까지 무한정 계속하여 등급의 부여를 거부하

121) 독일의 청소년보호법 제12조 및 제14조제4항 참조.

122) 음비계법 제20조제5항 및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영화·비디오 심의규정 제4조 참조.

여 배포를 금지하고 있다. 과연 영화의 등급보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동 제도의 폐지와 비디오물에 대하여 등급보류를 계속하여 유지되어야 하는가는 의문이고 현재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이 진행중에 있다.

### 3. 등급의 표시

영화와 마찬가지로 모든 비디오물에 대하여 등급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는 독일과 우리 나라이다. 현행 음비계법은 제37조제1항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자는 당해 비디오물마다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한 자의 상호 및 분류된 등급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sup>123)</sup> 청소년보호법에서도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sup>124)</sup>

## Ⅲ. 문제점과 개선방안

위에서 살펴본 ‘영화진흥법’의 개선방안과 유사하게 교육용 비디오물 등의 경우에 사업자에 의한 자율등급부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이 필요하고, 또한 청소년의 개념을 변경하여 18세미만의 자를 청소년으로 변경하는 개선이 요구된다. 아울러 영화처럼 비디오물의 경우에도 등급보류제도를 삭제하여 헌법에 부합하도록 함이 필요하다. 즉 등급보류제도는 영화의 경우에 이미 삭제되었는데, 비디오물의 경우에만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가 문제된다. 또한 등급보류제도를 두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왜냐하면 음란물과 청소년이용가사이의 영역에 해당될 수 있는 비디오물의 유통금지는 행정적 규제목적(청소년보호)을 벗어난 것이고 이를 규제해야 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또한 영화와 비디오물이 비록 유통방법에서 영화의 경우 공공장소이고 비디오물의 경우 사적 공간에서 이용되고 있어서 비디오물의 규제가

123) 음비계법 제37조제1항

124) 청소년보호법 제14조제1항

완화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영화와 비디오물사이의 등급보류제도는 달리 다루어져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비디오물의 등급보류제도는 영화와 마찬가지로 위헌성의 가능성이 높다.

## 제 5 장 영상산업의 진흥

## 제 1 절 개 설

앞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종래 영화는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에 해당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파악하여 국가의 간섭(예컨대, 검열제도 등)을 배제하여 왔다. 즉 영화는 문화적·예술적인 요소가 강조되어 개인의 행동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우선되어 왔고, 최근에서야 비로소 영상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영화의 진흥에 대한 각종시책과 입법이 마련되어 왔다. 즉 오늘날 영상저작물은 순수한 예술이나 표현물이라는 사고를 넘어서 하나의 새로운 산업으로 보아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영화는 다른 표현매체와 달리 대규모의 자본과 시설에 의해 제작되고 있고, 영화의 영향력은 광범위하고 직접적이며 강력하여 각국이 자국의 영화산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자국의 문화를 세계에 널리 보급하고자 이를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지원·육성하고 있어 이를 기업화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야 할 필요성 또한 크다.<sup>125)</sup>

따라서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영화진흥법을 마련하여 영화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나라의 영화진흥법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영화진흥에 관련된 입법이 아니다. 즉 우리 나라의 영화진흥법은 영화의 유통에 관한 입법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유통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고, 영화진흥에 관한 것은 제3조의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3장의 영화진흥위원회 및 제6장의 영화진흥금고 등에 불과하며 그 내용도 대부분 포괄적인 형태로 되어 있다. 올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서도 현행 영화진흥법과 음비계법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어서 영상산업의 지원에 대한 입법사항이 포괄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이와 달리 독일의 경우에는 영화진흥법을 마련하여 영화산업을 진흥하고 있는 점에서 공통되

125) 현재 1996. 8. 29, [94헌바15] 참조.

나, 독일의 경우는 부록에서 볼 수 있듯이 순수한 영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입법이다. 즉 독일의 영화진흥법은 우리 나라의 영화진흥법과 달리 영화의 진흥분야를 구체적·개별적인 영역으로 나누어서 진흥을 구체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관련조항도 세분화되어 있다. 결국 우리 나라의 영화진흥법에서 도입하고 있는 일반적·포괄적 진흥입법은 장차 보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그 진흥대상과 그 진흥방법 및 진흥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차원에서 독일의 영화진흥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는 독일의 영화진흥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 제 2 절 영화산업

### I. 진흥시책·진흥기구·진흥금고

우리 나라의 영화진흥법은 제3조제2항에서 진흥시책, 제14조제1항에서 영화진흥위원회의 업무 및 제35조제1항에서 지원대상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여 그 진흥의 대상과 진흥방법 및 진흥범위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상황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진흥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을 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산업진흥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진흥을 저해하거나 또는 진흥기구에 의한 자의성이 문제될 수도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독일의 영화진흥법은 진보된 형태의 입법에 해당된다.

####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우리 나라의 영화진흥법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영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화진흥기본계획에는 (i)한국영화진흥의 기본방향 (ii)영화제작의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제작기반 확충,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iii)영화배급의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iv)한국영화의 수출과 국제적 진출에 관한 사항 (v)영화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사항 (vi)영화인의 양성에 관한 사항 (vii)영화진흥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확충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

인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viii)영화의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ix)기타 영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sup>126)</sup>

## 2. 영화진흥위원회

우리 나라의 경우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영화산업의 진흥을 그 설립목적으로 한다.<sup>127)</sup> 영화진흥위원회는 (i)영화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사항 (ii)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iii)위원회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iv)영상제작관련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v)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에 관한 사항 (vi)영화진흥금고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vii)한국영화 진흥 및 영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viii)영화의 유통배급에 관한 사항 (ix)한국영화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x)예술영화, 애니메이션영화, 소형영화 및 단편영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 (xi) 한국영화의 무상영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xii)영화관객의 불만 및 청원에 관한 사항 (xiii)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sup>128)</sup>

독일의 경우에도 영화진흥공사는 영화산업의 구조와 영화의 창조적·예술적 품질을 진흥시키는 것을 의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는 (i) 영화진흥 및 영화산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조치의 시행 (ii)영화산업의 지원조치 시행. 특히 시장조사와 저작권법상 이용권의 침해방지 조치, 청소년 영화의 제작기획에 대한 지원 그리고 영화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원 (iii)독일영화의 국제화, 독일영화의 국내배급 및 시장에서의 정당한 평가 그리고 국외에서의 경제적·문화적 확산에 대한 지원 (iv)독일과 외국의 공동제작 지원 (v)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화제작자와 텔레비전 방송국과의 공동제작 지원 (vi)영화산업과 관련 연방정부에 대한 자문을 하도록 하고 있다.<sup>129)</sup>

126) 영화진흥법 제3조제2항 참조

127) 영화진흥법 제7조제1항

128) 동법 제14조제1항 참조

129) 독일의 영화진흥법 제1조

### 3. 영화진흥금고

우리 나라의 경우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영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영화진흥금고를 설치하고 있으며, (i)한국영화의 창작·제작 진흥 관련 지원 (ii)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iii)소형·단편영화 제작 지원 (iv)영화상영관 시설의 보수·유지 및 개선 지원 (v)위원회가 인정하는 영화관련단체 및 시민단체의 사업 지원 (vi)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sup>130)</sup> 독일의 영화진흥법도 진흥기금은 이 법에서 정한 특정된 진흥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고 진흥기금의 교부나 지급에 대한 청구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sup>131)</sup>

## II. 영화의 제작진흥

영화의 제작지원은 영화진흥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한국영화의 창작·제작 진흥 관련 지원」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여기에서 한국영화라 함은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가 제작한 영화와 한국영화로 인정된 공동제작영화를 의미한다. 이와 비교하여 독일은 지원대상영화를 특정하고 있는데, 일반영화의 경우 상영시간이 79분이상, 아동영화의 경우 59분이상을 프로그램이라고 특정하여 지원대상으로 하고 또 다시 유럽경제공동체조약의 체결국가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을 것, 독일어로 제작될 것 및 감독 등의 국적이 독일이나 유럽경제공동체조약의 가입국가에 해당될 것 등의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영화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거나, 윤리나 종교적 감정을 침해하거나, 또는 성관계의 내용이나 잔인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묘사하는 경우에 진흥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sup>132)</sup>

130) 영화진흥법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참조

131) 독일의 영화진흥법 제14조

132) 독일의 영화진흥법 제19조 참조

### 1. 추천영화

독일의 경우에는 소위 추천영화(예컨대, 150,00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영화)에 대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sup>133)</sup> 또한 다큐멘터리영화, 어린이영화 및 처녀작에 대하여도 일정한 점수(예컨대, 어린이영화와 처녀작의 추천점수는 50,000점, 다큐멘터리영화는 25,000점)를 책정하여 추천영화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134)</sup> 추천영화의 경우 최고 2,000,000유로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135)</sup>

### 2. 프로젝트영화

독일의 경우 영화제작 계획이 시나리오 및 제작진과 배역 명부를 근거로 판단할 때 독일영화의 수준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화에 대하여 진흥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무이자 대출금이 250,000 유로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영화제작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제작비용을 감안하여 타당성이 인정될 때에는 1,000,000 유로까지 지급할 수 있다.<sup>136)</sup>

### 3. 단편영화

우리 나라의 영화진흥법은 필름의 규격에 관계없이 상영시간이 40분을 넘지 않는 영화를 단편영화라고 정의하고 있고<sup>137)</sup>, 또 영화진흥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소형·단편영화 제작 지원」이라고 하여 진흥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도 상영시간이 최대한 15분을 넘지 않는 영화와 일정한 어린이영화에 한하여 단편영화로 취급하여 지원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sup>138)</sup>

133) 독일의 영화진흥법 제22조 참조

134) 독일의 영화진흥법 제23조제1항 참조

135) 독일의 영화진흥법 제23조제4항

136) 독일의 영화진흥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137) 영화진흥법 제2조제8호

138) 독일의 영화진흥법 제41조 참조

#### 4. 시나리오

우리 나라의 영화진흥법은 시나리오의 창작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 독일의 경우에는 시나리오가 영화의 수준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 영화의 시나리오 제작을 위한 기금을 시나리오 작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sup>139)</sup> 시나리오에 대한 진흥기금은 보조금 형식으로 최대한 25,000 유로까지 지급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50,000 유로까지 지원할 수 있다.<sup>140)</sup>

### Ⅲ. 영화배급(또는 판매)의 진흥

우리 나라의 영화진흥법은 제14조제1항에서 영화의 유통배급에 관한 사항을 영화진흥위원회의 업무대상으로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극장에서 첫 상영 이후 1년 이내에 100,000 점의 추천점수를 획득한 경우 영화배급자에게 새 영화의 배급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sup>141)</sup> 이 경우 진흥기금은 (i)복사본 제작과 광고비와 같은 사전비용 (ii)영화산업 측면에서 모범적인 광고를 위한 비용 (iii)아동영화 판매를 위한 특별비용 (iv)기존 판매시장의 확장과 새로운 시장의 개발을 위한 비용 (v)판매를 개선하기 위한 계약상 합의된 공동작업을 위한 비용 (vi)근본적인 경영합리화 조치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sup>142)</sup>

### Ⅳ. 영화상영의 진흥

우리 나라의 영화진흥법은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영화상영관 시설의 보수·유지 및 개선 지원」이라고 하여 극장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i)영화관의 현대화와 시설개선 또는 산업구조개선을 위한 영화관 신설 (ii)영화관 부문의 모범적이고 새로운 시도의 구현

139) 독일의 영화진흥법 제47조제1항

140) 독일의 영화진흥법 제47조제2항

141) 독일의 영화진흥법 제53조제1항 참조

142) 독일의 영화진흥법 제53조제3항 참조

(iii)계약상 합의된 영화관의 공동작업 (iv)영화관 자문 (v)인구 20,000명 정도의 지역이나 지역의 일부에서의 상영을 위한 영화 복사본 제작의 경우를 위하여 진흥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143)</sup>

## V. 그 밖의 진흥조치

### 1. 인재양성

우리 나라의 영화진흥법은 제3조제2항에서 인력양성 등에 관한 사항도 진흥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 영화진흥공사는 영화계의 예술, 기술 그리고 영업 부문 신진인력의 재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흥기금을 지급할 수 있다.<sup>144)</sup> 또 진흥기금은 교육주체에게 보조금으로 지급될 수 있으며, 재교육이 높은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교육주체 이외의 신청자에게도 보조금 형태나 전체적 또는 부분적인 대출금 형식으로 지급될 수 있다.<sup>145)</sup>

### 2. 연구·합리화 및 개혁의 진행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의 영화진흥법은 연구 등에 대한 지원을 진흥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sup>146)</sup> 독일의 경우 영화진흥공사는 영화부문의 연구, 합리화 및 혁신을 위한 목적으로 진흥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진흥기금은 이 법의 다른 규정에 의한 지원이나 다른 공적자금의 지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만 지급될 수 있다.<sup>147)</sup>

### 3. 영화의 의무상영제도

우리 나라의 영화진흥법은 진흥조치와 관련해서 한국영화의 의무상영 제도라는 특이한 수단을 도입하고 있다. 즉 한국영화의 의무상영제도는

143) 독일의 영화진흥법 제56조제1항 참조

144) 독일의 영화진흥법 제59조제1항

145) 독일의 영화진흥법 제59조제2항

146) 영화진흥법 제3조제2항제2호 참조

147) 독일의 영화진흥법 제60조제1항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2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sup>148)</sup> 이 제도는 한국영화의 진흥을 위한 직접적이고 강력한 조치에 해당되지만, 영화관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경영구조를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합헌성을 인정하였는데, 그 판단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하여 『영화법 제26조는 개봉관의 확보를 통하여 국산영화의 제작과 상영의 기회를 보장하여 국산영화의 존립과 발전의 터전을 마련하여 주기 위한 것으로 공연장의 경영자에 대하여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나 그 제한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연간상영일수의 5분의 2에 한정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제한이 공연장의 경영자에게 주어진 것은 영상상품을 최종적으로 공급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므로 영화인, 영화업자 혹은 영화수입업자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로 공연장의 경영자만을 차별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보았다.<sup>149)</sup>

둘째, 위임입법의 한계와 관련해서 『영화법 제26조는 공연장의 경영자가 일정한 기간 국산영화를 상영할 것을 전제로 하여 다만 국산영화의무상영일수라고 하는 구체적 사항을 특정하여 연간상영일수를 기준으로 이를 대통령령에 정할 것을 위임하고 있는바, 비록 위 규정이 의무상영일수의 상한이나 하한을 명시적으로 설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률규정의 취지에서 볼 때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이 연간상영일수의 일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보았다.<sup>150)</sup>

셋째, 경제질서 및 행복추구권과 관련하여 『헌법 제119조제2항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가 개인과 기업의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것이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질서를 의미하는 것은

148) 영화진흥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참조

149) 헌재 1995. 7. 21, [94헌마125]

150) 헌재 1995. 7. 21, [94헌마125]

아니다. 따라서 입법자가 외국영화에 의한 국내 영화시장의 독점이 초래되고 국내 영화의 제작업은 황폐하여진 상태에서 외국영화의 수입업과 이를 상영하는 소비시장만이 과도히 비대하여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서 이를 방지하고 균형있는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산영화의무상영제를 둔 것이므로 이를 들어 헌법상 경제질서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 공동체의 이익과 무관하게 무제한의 경제적 이익의 도모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제적 고려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국산영화의무상영제가 공연장 경영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sup>151)</sup>

## VI. 문제점과 개선방안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나라의 영화진흥법은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시책과 영화진흥위원회 그리고 영화진흥기금 등을 입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이라고 사료된다. 그렇지만 독일의 영화진흥법과 비교하여 볼 때 그 지원대상과 지원방법 및 지원범위 등이 다소간 모호하다. 따라서 향후 입법개선에서는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지원대상과 지원방법 등을 명문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 우리 나라의 영화진흥법은 그 진흥대상으로 한국영화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단순히 한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이 요건이 적절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경우에는 단순한 거주나 주소외에 독일어로 제작될 것, 독일인이나 유럽경제공동체조약 체결국 국민의 실질적 참여 등을 요건으로 하여 국내영화의 진흥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우리 나라의 경우 한국영화의무상영제도를 마련하여 연간상영일수의 5분의 2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제도는 영화의 상영에 대한 직접적이고 강력한 규제에 해당되지만 근래 국내 영화의 질적 향상과 한류열풍으로 한국영화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극장

151) 헌재 1995. 7. 21, [94헌마125]

경영자의 불만이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장차 한국영화가 국내시장에서 자립할 수 있는 시점에 도달한 후에는 폐지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제 3 절 비디오산업

#### I. 개 관

종래 비디오산업은 영화산업의 부차적인 산업이고 그 규모 또한 상대적으로 작다고 하여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그렇지만 VOD와 같은 새로운 유통방식의 도입으로 그 잠재적 규모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또 비디오의 유통방식이 극장을 통하여 유통되는 영화와는 확연히 차별화되어 있어서 관련산업의 진흥시책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차별화되는 측면도 있어서 비디오물 시장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음비계법에서는 비디오산업의 진흥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문화관광부장관은 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그 진흥시책에는 (i)진흥시책의 기본방향 (ii)창작활동의 활성화 (iii)수출촉진과 관련산업의 고용창출 (iv)관련기술의 개발 및 기술수준의 향상 (v)유통시설의 확충, 유통업체의 전문화 및 유통구조의 개선 (vi)관련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 및 운영 (vii)전문인력의 양성 (viii)관련분야 인프라 구축 및 집적지의 조성·운영 (ix)위법하게 제작되거나 판매·대여·배포·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되는 비디오물에 대한 지도·단속 (x)위법하게 제작·유통·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되는 비디오물의 자율감시활동의 지원 (xi)그 밖에 관련업소의 건전한 발전을 포함시키고 있다.<sup>152)</sup>

#### II. 판매의 진흥

우리 나라의 경우 음비계법에서는 비디오물의 판매에 대한 지원을 위한 명시적인 규정을 찾기는 어렵다. 다만, 음비계법 제45조에서 모범적

---

152) 음비계법 제3조 참조

인 유통관련업자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아래에서 살펴본 영화진흥공사에 의한 비디오의 제작지원과 판매지원 및 각종 비용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즉 독일의 경우 영화진흥법은 영화진흥공사로 하여금 제작된 영화를 영상매체로 판매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i)제작비용 (ii)광고를 위한 비용 (iii)외국어판 제작비용 (iv)어린이 영화 판매를 위한 특별비용 (v)기존 판매시장의 확장과 새로운 시장의 개발을 위한 비용 (vi)판매를 개선하기 위한 계약상 합의된 공동작업을 위한 비용 (vii)근본적인 경영합리화 조치를 위한 비용의 경우에 진흥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153)</sup>

### III. 대여의 진흥

또한 독일의 영화진흥공사는 (i)성인에게만 출입이 가능한 곳을 제외한 비디오대여업소의 현대화와 시설개선 또는 산업구조개선을 위한 비디오대여업소의 신설 (ii)비디오대여업소에서 특별히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적합한 비디오가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 (iii)비디오대여업소 부문에서의 모범적이고 새로운 시도의 구현 (iv)비디오대여업소 부문에서의 계약상 합의된 공동작업 (v)비디오대여업소에 대한 자문의 경우를 위하여 진흥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154)</sup>

### IV.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

우리 나라의 경우 음비게법에서는 비디오물 산업의 진흥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sup>155)</sup> 위에서 살펴본 진흥에 관련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문화관광부장관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영화와 비디오물을 구분함이 없이 영화진흥공사에서 진흥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153) 독일의 영화진흥법 제53b조제1항

154) 독일의 영화진흥법 제56a조제1항 참조

155) 음비게법 제4조제1항 참조

## V. 문제점과 개선방안

영화와 비디오물은 근본적으로 내용물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고 유통방법의 차이에서 차별화되어 있다. 따라서 영화산업의 진흥은 비디오산업의 진흥과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영화산업의 발달을 위해서는 비디오물의 유통과 관련산업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향후 영화와 비디오물을 실질적으로 통합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영화와의 유통방법에 관련된 차이는 비디오물의 유통 등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필요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행 음비게법처럼 영화진흥위원회와 별도로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를 두는 것은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영화와 비디오물이 유통방법에 차이가 있고 따라서 진흥방법에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하여도 비디오물은 영화의 또 다른 형태의 유통에 해당됨은 부인할 수 없다. 결국 차후 추진되어야 할 영화와 비디오물의 실질적인 통합법에서는 각각 별도의 진흥위원회를 두고서 관련산업을 진흥하기는 부적합하며, 영화와 비디오물을 통합하여 영화로 규율하고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 제6장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최근 영상콘텐츠 시장의 급성장과 영상산업의 발달은 영상저작물에 관련된 입법의 체계적·종합적인 개선을 요구한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영화와 비디오물에 관련된 입법체계의 복잡성과 그 규율내용의 모호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영상저작물의 입법체계와 관련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오늘날 영상산업의 발달과 영화시장의 급성장을 고려할 때, 영상저작물에 관한 입법체계의 개선은 영상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저작권법의 특례조항, 음비게법의 비디오물에 관련된 조항, 영화진흥법 및 영상진흥기본을 통합하여 새로운 통합입법을 고려할 수 있다. 올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영화와 비디오물을 함께 규율한다는 차원에서 타당하나, 이 법안은 영화와 비디오물의 형식적으로 통합한 것에 불과하고 영상저작물의 보호와 유통 및 산업진흥을 실질적으로 통합하는 입법안이 요구된다.

둘째, 영상저작물의 보호를 규정하는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영상화계약을 보충하고자 하고 있으나, 관련내용이 미흡하여 독일의 저작권법처럼 보다 강화된 내용의 입법이 요구된다. 예컨대,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영화의 유통을 규정하고 있는 ‘영화진흥법’은 교육영화 등의 경우에 사업자에 의한 자율등급부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이 필요하고, 또한 연소자라는 개념 대신에 18세미만의 자를 청소년으로 변경하는 개선이 요구된다. 마찬가지로 비디오물의 유통을 규정하고 있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도 ‘영화진흥법’과 유사한 내용의 개선이 요구되며, 아울러 비디오물의 등급보류제도를 삭제하여 헌법에 부합하도록 함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위촉은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의 독점적 추천권을 시민단체 또는 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대통령의 임명에서도 법령상 자격을 갖춘 경우에 임명을 의무화하여 등급

## 제6장 결론

제도의 검열성을 희석하는 것이 요구된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재심제도도 원심과 재심에서 심의위원을 달리하여 실질적인 재심이 가능하도록 함이 필요하다.

넷째, 영화와 비디오물에 관련된 산업진흥은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하여 그 지원방법과 지원대상을 특정하여 입법화하고 관련된 진흥기구도 일원화함이 요구된다. 즉 영화와 비디오물의 실질적인 통합으로 영화와 비디오물의 진흥기구를 일원화 한 다음에 그 업무의 구체화와 개별화를 통하여 실질적인 진흥을 가능하도록 함이 필요하다.

# 부 록

# 독일의 영화진흥법

제정 2003. 12. 22. (연방법률공보 I, 2771면)  
공포 2004. 8. 24. (연방법률공보 I, 2277-2297면)

## 제 1 장 영화진흥공사

### 제 1 절 설립 · 업무

제 1 조 [영화진흥공사] ① 영화진흥공사는 연방을 총괄하는 영화진흥기관으로서 독일영화의 국내외에서의 성공을 위하여 독일 영화산업의 구조와 독일 영화의 창조적 · 예술적 품질을 진흥시킨다. 영화진흥공사는 연방직속의 공법인이다.

② 영화진흥공사는 베를린에 둔다.

제 2 조 [영화진흥공사의 업무] ① 영화진흥공사는 다음 각 호를 업무로 한다.

1. 독일영화의 진흥 및 독일영화 산업구조의 개선을 위한 조치의 시행
2. 독일 전체경제에서 영화산업의 중요한 위치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의 시행. 특히 시장조사와 저작권법상의 이용권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 청소년 영화제작 기획에 대한 지원 그리고 연방차원의 공공영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원
3. 독일 영화제작의 국제적 지향점의 개선과 이에 따른 독일 영화의 국내 배급 및 시장에서의 정당한 평가 그리고 국외에서의 경제적 · 문화적 확산에 대한 지원. 영화진흥공사는 독일 영화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독일 영화산업의 중앙 업무기구에 속하며 조직 측면에서 독일영화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중앙 자문기관을 지원한다.

4. 독일과 외국의 공동제작 지원
5. 독일 극장영화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영화산업과 텔레비전 방송국간의 공동작업 지원
6. 독일 영화의 중요성과 관련된 중앙정부 차원의 문제점에 대한 연방정부의 자문. 특히 영화 부문 관련유럽공동체 내에서의 영화산업 지원과 관련조치들의 합리적인 조화를 위한 자문
7. 영화진흥에 관한 연방과 주의 합의와 협조에 기여
  - ② 영화진흥공사는 다른 영화진흥기관에 대한 진흥조치를 시행하고 그 대가로 비용을 수수할 수 있다. 독일연방공화국이 국제적 또는 초국가적 기구의 회원으로서 취하게 되는 영화부문에서의 조치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영화진흥공사는 제2절의 절차에 따라 영화진흥을 위한 지원조치를 시행한다.

## 제 2 절 기관 · 상임위원회

제 3 조 [영화진흥공사의 기관] 영화진흥공사의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사장
2. 이사회
3. 관리위원회

제 4 조 [사장] ① 사장은 1인으로 한다. 사장은 제1과 제2의 직무대행을 둔다. 사장과 직무대행은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관리위원회에 의해 5년을 임기로 위촉된다. 재위촉은 허용된다. 관리위원회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위촉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사장은 이사회와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신의 책임 아래 영화진흥공사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사장은 재판상 그리고 재판 외 영화진흥공사를 대표한다. 사장에 의하거나 직무대행 공동으로 이루어지거나 한 직무대행이 권한 위임에 따라 행한 의사표시는 영화진흥공사를 구속한다. 사장은 이사회의 동

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대리인을 위촉할 수 있다.

- ④ 25,000 유로 이하의 지급 건에 대해서는 사장에 의해 위촉된 2명의 대리인이 영화진흥공사를 대리할 수 있다.
- ⑤ 영화진흥공사의 사장, 직무대행 그리고 직원은 영화산업 분야에서 영업을 하거나 자신이나 타인의 계산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영화산업 부문에 관여하는 상사회사의 사원이 될 수 없다.

제 5 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9인의 이사로 구성된다.

- ② 이사회의 대표이사는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직한다. 이사 중 1인은 독일 연방하원에서 선출하며, 1인은 연방정부가 임명하는 관리위원으로 한다. 관리위원은 각 1인의 이사를 관리위원회에 파견된 영화 제작자, 영화배급자, 영화상영관, 비디오산업, 민영 텔레비전방송국 그리고 공영방송국의 각 대표들로 구성된 집단의 다수결에 따라 각각 자신의 재임기간에 한하여 선임한다.
- ③ 제2항 제3문에 의해 선임된 이사의 자격은 자신을 선임한 단체가 영화진흥공사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의무의 이행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 ④ 이사회는 사장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이사회는 관리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이사회는 사장과 그 직무대행의 직무계약에 대해 의결한다. 대표이사는 영화진흥공사와 사장 사이의 직무계약 체결, 기타 법률관계 그리고 영화진흥공사와 사장 사이의 법적 분쟁에 있어서 영화진흥공사를 대표한다. 이사회는 연간회계보고의 제출기한을 정한다.
- ⑥ 이사회는 5인의 이사가 출석하면 의결할 수 있다. 이사회는 단순과반수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이사는 이사회의 다른 이사에게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 ⑦ 이사회는 정관을 제정한다.

제 6 조 [관리위원회] ①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33인으로 구성된다.

1. 독일 연방하원이 선출하는 3인
2. 연방상원이 선출하는 2인
3. 문화와 대중매체를 관할하는 최고위 연방행정청이 임명하는 2인
4. 독일 영화상영관 중앙협회와 씨네로파협회가 공동으로 임명하는 3인
5. 키노 협회 - 독일 극장영화상영관 협동조합과 지역영화제작 연방협회가 공동으로 임명하는 2인
6. 영화배급자협회가 임명하는 2인
7. 시청각미디어연방협회와 연방비디오·미디어전문상이익협회가 임명하는 각 1인
8. 독일연방공화국공영방송국협회(ARD)와 제2독일공영텔레비전방송국(ZDF)이 임명하는 각 1인
9. 민영방송 및 통신협회가 임명하는 2인
10. 독일극영화제작자협회와 신독일극영화제작자협회가 공동으로 임명하는 3인
11. 다큐멘터리영화협회가 임명하는 1인
12. 독일텔레비전제작자연방협회가 임명하는 1인
13. 영화·텔레비전 기술협회가 임명하는 1인
14. 서비스업연합노동조합과 독일저널리스트협회가 공동으로 임명하는 1인
15. 독일텔레비전·영화감독연방협회가 임명하는 1인
16. 단편영화협회가 임명하는 1인
17. 독일시나리오작가협회가 임명하는 1인
18. 개신교회와 카톨릭교회가 임명하는 각 1인
19. 독일영화수출업자협회가 임명하는 1인

관리위원의 선출과 임명에는 여성이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② 각 위원별로 1인의 직무대행이 선출 또는 임명된다. 위원이나 직무대행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하는 때에는 그 임기의 잔여기간에 대하여

후임자를 임명한다. 직무대행은 해당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문화와 대중매체를 관할하는 최고위 연방행정청은 관리위원과 그 직무대행을 5년의 임기로 임명한다. 연방문화·대중매체담당관은 제1문에 의한 임명 통보를 받고 난 후 14일 이내에 그 임명을 수용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한다.

④ 관리위원회는 그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관리위원회는 정관을 제정한다.

⑤ 관리위원회는 영화진흥공사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모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하여 의결하고, 영화진흥공사의 회계를 승인한다. 관리위원은 계약내용이나 지시에 구속되지 않는다.

⑥ 관리위원회는 각 회계연도의 상반기 내에 사장과 이사의 해임에 대하여 의결한다. 이사회는 구성원인 자는 이사의 해임에 대한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⑦ 관리위원회는 17인의 위원이 출석하면 의결할 수 있다. 관리위원회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단순과반수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⑧ 관리위원회는 이사회나 7인의 관리위원의 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소집된다.

제 7 조 [교부위원회] ① 교부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한다. 교부위원회는 제64조 제2항에 따라 사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 아닌 한 프로젝트영화 진흥을 위한 지원과 제59조와 제60조에 따른 진흥조치에 대하여 의결한다.

② 교부위원회는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교부위원회의 위원은 영화부문의 전문가이어야 하며 고도의 실질적인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교부위원 중 1인은 제정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교부위원은 각자 직무대행을 둔다. 교부위원은 누구의 지시도 따를 의무가 없다.

부 록

- ③ 교부위원회 위원은 최장 3년을 임기로 임명되며 1회에 한하여 재임명될 수 있다. 제8조에 따른 임명권자는 매 2회마다 한번은 여성을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이 요건에 대해서는 각 임명권자가 그 구성상의 이유로 인하여 주기적으로 또는 특정 임기에 여성을 파견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그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원 임명시 교부위원회 위원장과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그 이유는 교부위원회에 공지되어야 한다.
- ④ 교부위원회는 그 위원 가운데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교부위원회는 내규를 제정하고 그에 대하여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교부위원회는 6인의 위원이 출석하면 의결할 수 있다. 교부위원회는 위원의 다수결에 따라 의결한다.

제 8 조 [교부위원회의 구성] 교부위원회의 위원과 그 직무대행은 다음 각 호의 기구 혹은 단체가 각각 정해진 인원만큼 임명한다.

- 1. 독일 연방하원: 1인
- 2. 문화와 대중매체를 관할하는 최고위 연방행정청: 창조예술 분야의 1인
- 3. 독일 영화상영관 중앙협회, 씨네로파협회, 키노 협회 - 독일 극장 영화상영관 협동조합 및 지역영화제작 연방협회: 공동으로 1인
- 4. 독일극영화제작자협회, 신독일극영화제작자협회 및 다큐멘터리영화협회: 공동으로 1인
- 5. 독일텔레비전·영화감독연방협회: 2인. 그 가운데 1인은 단편영화협회와의 협의 아래 임명한다.
- 6. 독일시나리오작가협회: 1인
- 7. 영화배급자협회와 배급협회: 공동으로 2인
- 8. 시청각미디어연방협회와 연방비디오·미디어전문상이익협회: 공동으로 1인
- 9. 공영방송국: 공동으로 1인
- 10. 민영방송 및 통신협회: 1인

위원이나 직무대행이 퇴임하는 때에는 그 후임자가 임명되어야 한다. 이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내규에서 정한다. 제5조 제3항의 규정은 교부위원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8a조 [소위원회] ① 교부위원회는 특히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진흥분야를 포함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영화판매의 진흥 (제53a조)
2. 영화가 수록된 영상매체(제53b조)와 비디오대여업소(제56a조)의 판매 진흥
3. 영화상영의 진흥 (제56조)
4. 영화시나리오의 진흥 (제47조)

소위원회는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영화부문의 전문가이어야 하고 고도의 실질적인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각 위원은 누구의 지시에도 구속되지 않는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과 그 직무대행은 최장 3년을 임기로 교부위원회에서 선출되며, 1회에 한하여 재선출 될 수 있다. 각 해당분야의 전문협회는 선출될 위원별로 각각 최소한 2인의 후보를 제청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부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이어야 한다.

제9조 [제척] ① 각 기구와 위원회의 구성원이 불공정한 직무집행을 할 것으로 의심할 만한 내용의 제3자와의 계약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히 제3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진흥기금의 교부에 관한 결정을 포함한 어떠한 결정과정에도 참여할 수 없다. 행정절차법 제20조는 이 경우에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반하여 이루어진 결정은 그 제척대상 구성원의 표결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한 무효이다.

### 제3절 정관·회계·감독

제10조 [정관·내규] ① 영화진흥공사의 정관은 관리위원회가 제정한다. 정관 제정은 3분의 2 다수결로 이루어지며 이는 최소한 위원 전체의

과반수이어야 한다. 영화진흥공사의 정관과 각 기구의 내규는 문화와 대중매체를 관할하는 최고위 연방행정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정관은 관리위원회의 위원과 그를 대신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직무대행에 대한 일당, 숙박비, 교통비의 지급과 직무수행비용에 대한 월보수를 정할 수 있다. 또한 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위원회의 구성원이나 그를 대신하여 참석하는 직무대행에 대한 일당, 숙박비, 교통비
2. 교부위원회의 구성원이나 그를 대신하여 활동하는 직무대행에 대한 신청심사에 따른 보수

③ 정관은 이 법이 정하지 않고 있으며 연방 예산관련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영화진흥공사의 예산의 수립과 집행, 회계, 결산과 회계심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한다.

제11조 [회계와 예산] ① 관리위원회는 매년 회계연도 시작 전에 검소하고 경제적인 재정운영의 원칙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다. 예산에는 차기 회계연도의 영화진흥공사의 모든 예상 수입과 지출이 목적과 항목을 구분하여 망라되어야 한다. 예산은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예산은 문화와 대중매체를 관할하는 최고위 연방행정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적시에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은 검소하고 경제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의 지출은 관리위원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동의는 영화진흥공사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직접 지출의무를 가지거나, 영화진흥공사가 이행하여야 할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임에도 이를 사전에 예상하지 못하였고 즉시 이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회계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다음 해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때에는 관리위원회의 동의에 따라 지출한다.

③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 [결산] ① 사장은 종료된 회계연도 내의 모든 수입과 지출 및 영화진흥공사의 자산과 채무 그리고 그 변동사항에 대하여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결산서는 문화와 대중매체를 관할하는 최고위 연방행정청에 제출되어야 한다.

② 영화진흥공사의 회계는 장부관리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결산서는 상법상의 대자본회사 관련 규정에 따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속서류 그리고 사무보고서를 포함하며 재산증감변동계산서도 갖추어야 한다.

③ 결산서는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법인에 의하여 심사된다. 심사자는 영화진흥공사의 비용으로 그 추천에 따라 문화와 대중매체를 관할하는 최고위 연방행정청에 의해 위촉된다. 심사는 문화와 대중매체를 관할하는 최고위 연방행정청의 지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심사보고서는 관리위원회, 문화와 대중매체를 관할하는 최고위 연방행정청 그리고 연방회계에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13조 [감독] ① 영화진흥공사는 문화와 대중매체를 관할하는 최고위 연방행정청의 법규감독을 받는다. 감독청은 영화진흥공사의 업무집행이 현행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지시를 할 권한을 가진다.

② 영화진흥공사는 감독청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그 활동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③ 감독청은 영화진흥공사가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특별수탁자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게 하거나 스스로 집행할 권한을 가진다.

## 제 2 장 영화진흥

제14조 [진흥기금의 목적구속] 진흥기금은 특정된 진흥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진흥기금의 교부나 지급에 대한 청구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될 수 없다.

## 제 1 절 영화제작의 진흥

제15조 [총칙] ① 영화는 상영시간이 79분 이상, 아동영화는 상영시간이 59분 이상이면 프로그램에 해당된다.

② 진흥기금은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영화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된다.

1. 제작자의 주소나 사무소 혹은, 제작자가 주소나 거소를 유럽공동체 내의 다른 국가 또는 유럽경제공동체조약 체결국가 내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사가 국내에 있으며 영화계획의 실행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경우
2. 영화 시나리오상 다른 언어로 예정되어 있는 대사 부분은 예외로 하고, 최소한 영화의 최종판이 독일어로 제작되는 경우
3. 영화제작시 스튜디오 촬영과정에서 이용된 스튜디오 및 제작기술 그리고 제작 후 과정에서 이용된 기술 용역사가 그 사무소를 국내에 혹은 유럽공동체 내의 다른 국가 또는 유럽경제공동체조약 체결국가 내에 두고 있는 경우. 다만 주제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의 야외촬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스튜디오 촬영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분량까지 해외에서 촬영될 수 있다. 영화의 대부분 내용이 다른 국가를 고유무대로 촬영될 때에는 사장이 비용문제상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스튜디오 촬영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분량 이상도 국외의 스튜디오에서 촬영될 수 있다. 제2문과 제3문의 규정에 따른 분량산정은 촬영시간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진다.
4. 감독이 독일인이거나 헌법 제116조상의 독일인인 경우 또는 감독이 독일의 문화영역에 속하거나 유럽공동체 내의 다른 국가 또는 유럽경제공동체조약 체결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5. 영화가 독일어로 국내에서 혹은 제22조 제3항상의 영화제에서 독일작품으로 개봉되는 경우

문화와 대중매체를 관할하는 연방정부 담당관은 유럽공동체 위원회 규정에 배치되지 않는 한 제3호 제1문과 달리 국내 스튜디오 및 제작

기술 그리고 제작 후 과정에서 이용되는 기술 용역사가 비용의 최대한 100분의 80까지 이용할 것을 조건부로 진흥기금이 교부되도록 시행령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

③ 감독이 제2항 제4호와 달리 독일인이 아니거나 독일의 문화영역에 속하지 않거나 유럽공동체 내의 다른 국가 또는 유럽경제공동체조약 체결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시나리오작가나 주연급 배우 2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영화제작관계자가 독일인이거나 독일의 문화영역에 속하거나 유럽공동체 내의 다른 국가 또는 유럽경제공동체조약 체결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진흥기금이 지급될 수 있다.

④ 사장은 영화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결과, 특히 국내와 국외에서의 경제적인 효과 측면에서 예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1항,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진흥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국제공동제작] ① 진흥기금은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영화로서 제1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 아래 이 법의 적용범위 밖에 사무소 또는 주소를 두고 있는 제작자 1인 이상과 공동으로 제작되고 있거나 제작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된다.

1. 독일연방공화국에 의해 체결된 2개국 혹은 다국 간의 영화에 관한 협약 중 공동제작 관련 규정에 합치될 것
2. 그러한 조약이 존재하지 않거나 공동제작에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외국의 자본참가에 비해서 제15조 제2항 제1호상의 제작자의 자본참가가 상당하고 헌법 제116조상의 독일인이거나 독일의 문화영역에 속하거나 유럽공동체 내의 다른 국가 또는 유럽경제공동체조약 체결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영화참여자가 예술부문과 기술부문에 기여하였으며, 나아가 독일어가 주도하는 영화의 경우 국내에서 혹은 제22조 제3항상의 영화제에서 독일작품으로 개봉되었을 것

② 예술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의 참여의 경우에는 최소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헌법 제116조상의 독일인이거나 독일의 문화 영역에 속하거나 유럽공동체 내의 다른 국가 또는 유럽경제공동체조약 체결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 주연급 배우 1인과 조연급 배우 1인 혹은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주요 역할의 배우 2인
2. 1인의 조감독 혹은 1인의 예술부문이나 기술부문 스태프
3. 1인의 시나리오작가 혹은 1인의 극본담당자

제16a조 [국제공동자금조달] 진흥기금은 제1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 아래 국외에 주소나 사무소를 둔 1인 이상의 제작자와 함께 제작되고 있거나 제작된 그리고 제15조 제2항 제1호상의 제작자가 그 제작을 위해 단지 자금상으로만 출자한 프로그램을 내용으로 하는 영화에 대해서도, 독일연방공화국에 의해 체결된 2개국 혹은 다국 간의 협약이 이러한 참여를 규정하고 있고 제15조 제2항 제1호상의 제작자의 출자가 협약상 규정된 최소지분에 상응하면 지급된다.

제17조 [연방경제수출관리청의 확인서] ① 연방경제수출관리청은 제15조 제2항 제1호상의 제작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제작자의 영화가 제15조 제2항이나 제3항, 제16조 또는 제16a조의 규정에 합치하거나 제15조 제4항에 따른 예외결정이 존재한다는 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문의 신청은 공동제작(제16조)이나 공동자본투자제작 참여(제16a조)의 경우 늦어도 촬영개시 2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신청자가 연방경제수출관리청의 거부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기존 결정을 번복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 영화진흥공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영화진흥공사가 동의를 거부하는 때에는 문화와 대중매체를 관할하는 최고 위 연방행정청의 최종결정을 얻어야 한다.

② 연방경제수출관리청은 제작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제작자의 영화가 제15조 제2항이나 제3항, 제16조 또는 제16a조 규정에 합치하게 될 것이라는 점과 신청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 계획에 따라 촬영

이 이루어질 경우 필요한 요건이 충족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사전 프로젝트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확인서는 영화의 진흥적격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17a조 [국제 공동제작 계획의 진흥적격] ① 진흥기금은 제16조 혹은 제16a조상의 영화에 대해서 제15조 제2항 제1호상의 제작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된다.

1. 유럽 이외 국가의 제작자가 참여하는 공동제작의 경우 신청 전 5년 이내에 단독으로 또는 다수가 제작에 참여한 영화의 공동제작자로서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영화를 유럽공동체 내의 다른 국가 또는 유럽경제공동체조약 체결국가에서 제작하였을 것
2. 제16조 제1항 제1호와 제16a조의 경우 영화의 전 제작비용의 최소한 100분의 20 그리고 제16조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최소한 100분의 30을 분담하였을 것

② 사장은 제작자가 신청인으로서의 전문적인 자격을 갖추었음에 의심이 없고 영화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가 예외를 정당화시키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면제해 줄 수 있다.

③ 제16a조상의 영화는 독일연방공화국에 의해 체결된 2개국 혹은 다국 간의 협약이 공동자본투자제작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그리고 다른 참여자가 그 주소나 사무소를 두고 있는 국가들과 상호주의가 확보되고 공동자본투자제작에 허용된 자금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④ 제16a조의 경우 제15조 제2항 제1호상의 제작자의 자금 분담이 전체 제작비용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진흥기금의 할당과 관련하여 고려되지 않는다.

⑤ 진흥기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15조 제2항 제1호상의 제작자의 자금 분담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 [복사본의 제작] 진흥기금은 국내 혹은 유럽공동체 내의 다른 국가 또는 유럽경제공동체조약 체결국가에서의 사용을 위한 복사본이,

이를 위한 기술상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 국내 또는 유럽공동체 내의 다른 국가 또는 유럽경제공동체조약 체결국가에 있는 복사본제작소에서 만들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복사본 제작에 대하여 지급될 수 있다. 문화와 대중매체를 관할하는 연방정부 담당관은 유럽공동체 위원회 규정에 배치되지 않는 한 제1문과 달리 국내의 복사본제작소를 이용하는 경우에 진흥기금이 최대한 비용의 100분의 80 까지 지급되도록 시행령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

제19조 [진흥부적격 영화] 진흥기금은 추천영화나 영화 또는 앞으로 제작될 영화의 내용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되거나 윤리나 종교적 감정을 해하는 경우에는 지급될 수 없다. 이와 같은 내용이 극의 구성, 시나리오, 연출, 연기력, 영상연출 혹은 편집을 고려할 때 전체에서 단지 작은 부분만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성관계의 내용이나 잔인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거칠고 과장된 방식으로 묘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제20조 [단편영화와의 공동상영] 진흥기금을 지원 받아 제작되었고 프로그램에 해당되며 상영시간이 110분 이하인 영화는 첫 상영시부터 5년간, 영화관에서 정식으로 상영된 바 없는 상영시간 15분 이하의 영화(단편영화)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과 공동으로 상영되어야 한다.

1. 국내나 유럽공동체 내의 다른 국가 또는 유럽경제공동체조약 체결 국가에서 제작되었을 것
2. 청소년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등급이나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영화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에 해당되는 등급을 부여받았을 것

제21조 [보존] ①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영화의 제작자는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독일연방공화국에 기술적 흠이 없으며 원본과 동일한 내용의 복사본을 무상으로 제출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복사본은 연방기록보관소에 이 법에서 규정하는 영화진흥 목적을 위하여 보관된다. 복사본은 영화 연구 목적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될 수 있다.

### 제 1 관 추천영화의 진흥

제22조 [추천영화의 진흥] ①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영화가 150,000점 이상의 추천점수를 얻게 되면(추천영화) 그 영화의 제작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추천점수는 관객동원에서의 성과와 국제적으로 중요한 영화제에서의 성과 및 수상을 근거로 결정된다. 비스바덴 영화평가소의 인 증은 제1문에서 말하는 추천점수 100,000점에 해당된다.

② 관객동원성과에 따른 추천점수는 국내 영화상영관에서 첫 상영 후 1년 동안의 유료 입장객 수를 그대로 점수화 한다. 이에 는 정상적으로 입장료를 지불한 관객의 수만 산입된다. 관객동원성과만으로 추천점수를 부여하는 경우에 추천영화가 되기 위해서는 유료 입장객 수가 150,0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영화제에서의 성과와 수상을 근거로 추천영화를 결정할 때에는 국내에서 적어도 50,000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였을 것을 전제로 한다.

③ 영화제에서의 성과와 수상에 따른 점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부여한다.

1. 독일영화상, 골든 글로우브상, 아카데미상(Oscar) 또는 칸, 베를린 또는 베니스의 영화제에서의 경쟁부문 주요 상의 수상은 각 300,000 추천점
  2. 유럽영화상 또는 국제적으로 의미 있는 영화제에서의 경쟁부문 주요상 수상, 독일 영화상이나 골든 글로우브상 혹은 아카데미상에서의 후보 선정 및 칸, 베를린 또는 베니스의 영화제에서의 주 경쟁부문에의 참여는 각 150,000 추천점
  3. 그 밖의 국제적으로 의미 있는 영화제의 주 경쟁부문 참가 혹은 유럽영화상에서의 후보 선정은 각 50,000 추천점
- 추천점수의 계산에 있어서 동일한 영화제에서 수상한 영화에 대한

후보 선정은 점수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호, 제3호에 해당되는 영화제의 범위는 관리위원회의 지침으로 정한다. 그 범위를 정할 때에는 영화제의 문화적 의미 외에도 국내에서의 관객동원 성과와 국외 판매를 위한 광고효과도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영화제에서의 수상이나 참가 그리고 그 밖의 상에 대해서는 해당 영화가 국내에서 정식 첫 극장 상영이 이루어지기 1년 전부터 상영 후 2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만 고려의 대상으로 한다. 해당 영화가 국내에서의 정식 첫 극장 상영 이후에 영화제에 참가하였거나 혹은 영화제에서 성과를 얻거나 수상을 하였다면, 제2항 제1문에 따른 점수에 부가해서 영화제 참가 혹은 성과의 발생 이후 2년 이내에 동원된 관객 수도 고려된다.

- ④ 제1항에 의한 진흥기금의 액수는 최고 2,000,000 유로로 한다.
- ⑤ 국제 공동제작의 경우에는 제16조 또는 제16a조에 따른 부담액수까지만 기금으로 지급될 수 있다.
- ⑥ 추천영화 진흥을 위해 할당된 금액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제작자에게 개별 영화의 추천점수의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제23조 [다큐멘터리영화, 어린이영화 및 처녀작] ① 어린이영화와 처녀작에 있어서는 제22조제1항의 판단기준이 되는 추천점수를 50,000점, 다큐멘터리영화에 있어서는 25,000점으로 한다. 처녀작이란 감독이 처음 단독으로 극장영화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는 영화를 말한다. 다큐멘터리영화와 어린이영화에 있어서 추천점수는 국내 영화상영관에서의 첫 상영 이후 처음 4년 동안의 입장객 수에 상응한다. 다큐멘터리영화와 어린이영화에 있어서는 비상업적인 상영장소의 경우에도 그 입장객수의 2/3를 관객으로 계산한다. 어린이영화 혹은 처녀작이 50,000점의 추천점수를 그리고 다큐멘터리영화가 추천점수 25,000점을 넘었으나 150,000점에 달하지는 못한 경우에는 이를 150,000점의 추천점수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② 영화제에서의 성과와 수상을 근거로 추천영화를 결정할 때에는 다큐멘터리영화, 어린이 영화 혹은 처녀작의 경우에 국내에서 적어도 25,000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였을 것을 전제로 한다. 관리위원회는

그 밖의 어떤 국제적 또는 전국적으로 의미 있는 영화제에의 참가가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확정된 성과에 덧붙여 부가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지를 지침으로써 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영화와 다큐멘터리영화에 있어서의 영화제의 관행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 제24조 [신청] ① 추천영화에 대한 진흥기금은 신청에 의해 지급된다. 신청권자는 제15조 제2항 제1호의 제작자이다.
- ② 신청은 늦어도 제22조 제2항 제1문과 제23조 제1항 제3문의 기간 경과 후 3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신청은 신청인이 영화진흥공사에 추천영화가 첫 상영된 해 다음해의 1월 31일 까지 추천영화 진흥기금을 청구할 의사를 통보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③ 신청인은 제15조, 제16조 그리고 제18조의 요건이 충족됨을 입증하여야 한다.

- 제25조 [승인·지급] ① 진흥기금 승인 결정은 회계연도 종료 후 첫 3개월 이내에 직전 회계연도 종료 전에 기금 지급 승인 요건을 입증한 제작자에게 확정·통보된다.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1문의 기간보다 앞서서 미리 승인 결정을 할 수 있다.
- ② 특정 영화가 추천점수를 충분히 획득하였음이 확실한 경우에는 영화공사의 사장은 영화공사 예산 상태에 따라 전년도 추천점수의 100분의 70까지 미리 승인할 수 있다.
- ③ 영화진흥공사는 진흥기금이 이 법의 규정에 상응하도록 사용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즉시 진흥기금을 지급한다. 기금수령인에 대하여 의심이 갈 때에는 영화진흥공사는 기금을 민법 제372조 내지 제386조의 규정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
- ④ 진흥기금의 승인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이들 조건은 기금지급 시까지 추완될 수 있다.
1. 새 영화가 이 법 시행 당시의 독일 국내의 통상적인 가격으로 임대될 것

2. 새 영화의 영화관에의 임대료가 유럽경제공동체 내의 국가가 아닌 외국영화의 임대 또는 그의 상영에 종속되어 있지 않을 것
3. 새 영화의 제작비용의 충당에 있어 상당한 자금지원을 하는 배급자의 위험부담이 적절히 감소될 것
4. 제작자가 새 영화계획을 실행함에 있어 적절한 범위 내에서 신진기술인력과 영업인력을 고용할 것
5. 새 영화의 제작자가 공영방송국 혹은 민영텔레비전방송국과의 사용계약에 있어서 적어도 5년 이후에는 텔레비전이용권이 제작자에게로 복귀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것.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계약에서 텔레비전이용권의 복귀를 7년까지의 기한으로 합의할 수도 있다. 이는 특히 제작자가 영화를 위해 공영방송국과 민영텔레비전방송국으로부터 평균 이상의 높은 자본참가를 받았을 때 가능하다.
6. 제작자가 추천영화나 제32조에 따른 진흥기금을 지원 받은 영화에 대한 권리를 외국에 양도할 때에는 독일영화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독일영화산업의 중앙업무기관에 기부금을 납부할 것. 기부금은 1,500,000 유로까지의 순 매상고에 대하여 100분의 1.5로 한다. 1,500,000 유로를 초과하는 매상고 부분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26조 [지급거부] ① 영화진흥공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진흥기금의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영화의 제작을 위한 합법적인 자금조달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2. 신청인이 이미 이 법에 따른 진흥기금을 통해 자금이 조달된 추천영화 또는 영화제작계획의 자금조달 및 제작과정에서 또는 영화의 배급, 판매나 비디오판매와 관련하여 경영관리의 근검성 원칙을 침해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영화 진흥의 경우 제작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이거나 1인 회사로서 그 유일한 사원이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이고, 납입된 기본자본이나 종자본이 100,000 유로 미만인 경우

4. 진흥기금이 새 영화 제작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공동제작의 경우에는 제작비용에 대한 독일의 참여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제작비용이 전년도에 영화진흥공사의 지원을 받은 영화의 평균 제작비용보다 적고 그 판매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사장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5. 제32조에 따른 지원이나 다른 영화진흥기관으로부터의 지원을 받은 제작자가 새 영화 제작비용 중 제34조에 따른 자신의 분담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 ② 제1항 제2호 규정은 그에 따른 지급거부 사유가 발생한 후 5년 이상이 경과된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제27조 (삭제)

제28조 [기금사용] ① 제작자는 진흥기금에 대한 지급승인 이후 2년 내에 그 기금을 제15조 또는 제16조상의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새 영화의 제작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흥기금을 수혜한 제작자가 다른 제작자의 영화제작계획에 참가할 때에는 그 진흥기금 전액을 새 영화에 투자해야 한다. 영화진흥공사는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또한 제1문의 제작자는 제작비용에 대한 적절한 자기분담분을 입증하여야 한다.

③ 기금이 제16조 또는 제16a조에 따른 참가지분 100분의 50 이하의 공동제작에 대하여 승인된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참가지분이 적어도 100분의 50에 달하거나 다른 공동제작자의 참가지분을 상회하는 경우에만 지급될 수 있다.

④ 사장은 신청에 따라 100,000 유로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체 금액의 100분의 75까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위하여 기금이 사용되도록 허용할 수 있다.

1. 소품 조달, 시나리오 작성이나 개발 또는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새 영화 제작을 위한 준비로서 특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2. 자기자본의 증장기적 증식을 위한 기업 구조개선을 위한 경우. 기업의 자본이 특정 새 영화 제작을 위해 투자되는 경우에는 기금 전액이 자본증식에 투자되어도 된다.

기금이 자본증식을 위해 사용될 경우에는 신청 시 기업의 경영상태에 대한 확인 가능한 입증서류도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제29조 [기금반환] ① 제작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진흥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기금이 제15조, 제16조, 제18조 또는 제19조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영화의 제작에 사용된 경우
2. 기금이 본질적으로 중요한 조건에 관한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지급된 경우
3. 제25조 제4항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제26조의 지급거부조건이 추후에 갖추어졌을 경우
4. 제작자가 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5. 제26조 제1항 제4호 제1문의 지급거부조건이 갖추어지거나 제26조 제1항 제4호 제2문에 따른 예외결정으로 확정된 제작자의 부담분이 준수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영화가 영화진흥공사 또는 공적 자금으로 운용되는 다른 진흥기관에 의해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5호에 따른 반환은 각 진흥기금액의 비율에 따라 행해진다.

② 영화진흥공사는 반환청구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정해진 예외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기금의 즉각적인 회수가 상대방에게 매우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회수가 지체되더라도 반환청구 행사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권의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그러나 적절한 이자가 부과되고 담보가 설정되지 않으면 청구권 행사를 유예할 수 없다.
2. 회수가 불가능할 것이 확실하거나 회수비용이 반환금액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환청구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3. 기금의 회수가 상대방의 개별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너무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이는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한 배상이나 담보 반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제30조 [비디오와 텔레비전이용권] ① 이 법에 의하여 추천영화, 프로젝트영화 또는 판매를 위한 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해당 영화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영화의 제작과 보급의 각 단계별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국내나 국외에서 독일어판 영상매체나 텔레비전을 통하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스스로 이용할 수 없다.

1. 영상매체를 통한 사용의 경우 국내에서의 정규 영화상영관에서의 상영 시작 (정규 첫 상영) 후 6개월
2. 개별 영화에 대한 개인적 이용 방식에 따른 시청이나 유료 영화프로그램 형식으로 제공되는 경우 정규 첫 상영 이후 1년
3. 유료 텔레비전의 경우 첫 상영 이후 18개월
4. 암호코드화 하지 않는 텔레비전을 통한 방송의 경우 첫 상영 이후 24개월

② 영화산업 전체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이사회는 제작자의 신청에 의해 제1항의 보호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보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사회에 결정으로 단축될 수 있다.

1. 영상매체를 통한 사용의 경우 5개월
2. 개별 영화에 대한 개인적 이용 방식에 따른 시청이나 유료 영화프로그램 형식으로 제공되는 경우 6개월
3. 유료 텔레비전의 경우 12개월
4. 암호코드화 하지 않는 텔레비전을 통한 방송의 경우 18개월

③ 영화산업 전체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이사회는 예외적인 경우에 제작자의 신청에 의해 만장일치의 결정으로 제1항의 보호기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단축할 수 있다.

부 록

1. 영상매체를 통한 사용의 경우 4개월
  2. 개별 영화에 대한 개인적 이용 방식에 따른 시청이나 유료 영화프로그램 형식으로 제공되는 경우 4개월
  3. 유료 텔레비전의 경우 6개월
  4. 암호코드화 하지 않는 텔레비전을 통한 방송의 경우 6개월. 공영방송국이나 민영텔레비전방송국과의 협력을 통해 제작된 영화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호기간을 텔레비전방송국이 영화를 수령한 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 ④ 보호기간은 이사회의 결정 이전에 이미 영화가 기금신청 당시에 사용되기 시작한 경우에는 더 이상 단축될 수 없다.
- ⑤ 특별한 공익과 영화산업상의 이익이 있는 영화로서 제작비용이 특별히 많이 들고(제34조 6항) 텔레비전방송국의 자본참가가 평균이상으로 많은 경우 이사회는 3분의 2 이상 다수결로 보호기간의 단축을 촬영 전에 미리 결정할 수 있다.
- ⑥ 보호기간이 준수되지 않은 때에는 기금지원결정은 취소되거나 철회되어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지급된 기금은 회수되어야 한다.
- ⑦ 이사회는 보호기간 만료 이전의 이용이 그 이용의 유형이나 시점 및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보호기간 설정의 근본취지 측면에서 별 문제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기금수혜자의 신청에 의해 만장일치의 결정으로 제6항의 조치를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이는 진흥기금이 아직 승인되지 않았거나 지불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리위원회가 지침으로 정한다.
- ⑧ 제29조 2항의 규정은 본 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⑨ 특히 광고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처럼 극히 부분적인 장면만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a조 [유럽공동체 국가 영화의 포함] 상호주의가 보장되는 경우 제 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마다 유럽공동체 국가의 영화를

3편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내에서의 관객 수만을 판단기준으로 한다.

제31조 [채무보증] ① 영화진흥공사의 사장은 제작자의 신청에 의해 제 22조 이하 또는 제32조 이하에 따라 지원되는 영화를 위하여 사전 또는 중간 자금지원을 하고자 하는 은행이나 이들 영화의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텔레비전방송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채무를 보증할 수 있다.

1. 공적 자금으로 운용되는 다른 진흥기관 또는 텔레비전방송국에게 중도자금을 지원하는 은행의 미지급 채무
2. 영화의 미완성에 따른 제작자의 텔레비전방송국에 대한 계약상의 자금반환채무

② 제1항의 채무보증을 위해서는 공적 자금으로 운용되는 진흥기관의 재정지원 계획이나 제작자와 텔레비전방송국 사이의 자본참여 합의 내용이 확인되어야 한다.

③ 채무보증을 통하여 영화진흥공사가 부담하게 되는 위험이 평균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할 사유가 존재할 때에는 채무보증을 부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영화진흥공사는 채무보증 부담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영화진흥공사에 대한 제작자의 상환의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리위원회 지침으로 정한다.

## 제 2 관 프로젝트영화의 진흥

제32조 [진흥기금] ① 프로젝트영화를 위한 진흥기금은 영화제작 계획이 시나리오 및 제작진과 배역 명부를 근거로 판단할 때 독일 영화의 수준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지급된다. 지원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재능을 갖춘 신인들의 프로젝트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② 진흥기금으로는 조건부로 상환이 가능한 무이자 대출금이 250,000

## 부 록

유로까지 지급된다. 진흥기금은 영화제작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제작비용을 감안하여 타당성이 인정될 때에는 1,000,000 유로까지 지급될 수 있다.

③ 프로젝트영화를 위한 진흥기금의 지원대상에는 극장상영 뿐 아니라 텔레비전 방송에도 적합한 유형의 영화와 영화계 후속세대가 기술진과 영업진 속에 적절하게 포진되어 제작되는 영화가 적절한 범위 내에서 포함되어야 한다.

④ 지원대상에 적합한 영화를 모두 다 지원할 수 없을 때에는 교부위원회가 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영화를 선정한다. 특정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기금지원을 3회 이상 받고 그 가운데 제39조에 따른 상환액이 100분의 30에 달하는 것이 없을 때에는 다른 신청인이 기금지원에 우선권을 가진다.

⑤ 공동제작 방식으로 실행되어야 할 영화제작계획에 대한 지원은 제15조 제2항 또는 제16조에 따른 참가지분이 적어도 100분의 50에 달하거나 다른 공동제작자의 참가지분을 상회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⑥ 영화산업과 관련된 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에 주소 혹은 사무소를 두고 있는 제작자와의 공동제작으로 실행될 영화제작계획은 그 상호성이 담보되는 경우에 기존 기금지원 외에 부가적인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제5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문화와 대중매체를 관할하는 연방정부 담당관은 영화진흥공사의 의견을 참고하여 지원대상 영화제작계획의 종류와 수 및 지원금의 종류와 액수를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 [신청] ① 프로젝트영화에 대한 진흥기금은 신청에 의해 지급된다. 신청권자는 제작자이다.

② 신청은 영화제작계획에 대한 설명과 제15조 및 제16조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됨을 보여주는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시나리오, 제작진과 배역 명부, 비용과 재정계획 및 배급계약 또는 배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이 첨부되어야 한다.

③ 제2항 제2문과 제32조 제1항과 달리 기금 액수 100,000 유로까지의 신청에 있어서는 해당 제작계획이 독일 영화의 수준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달리 입증할 수 있을 때에는 시나리오 및 제작진과 배역 명부의 제출이 면제될 수 있다.

제34조 [제작자의 자기분담분] ① 프로젝트영화에 대한 기금 지원은 제작자가 재정운용계획에서 소명하고 영화진흥공사가 승인한 비용 가운데 자기분담분을 제작규모, 자본규모 그리고 지금까지의 제작자의 제작경력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수준으로 하되 적어도 전체비용의 100분의 15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공동제작에 있어서는 독일 제작자에게 부담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자기분담분을 산정한다. 이는 방송국의 협력 아래 제작되는 영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② 자기분담분은 자기자본이나 제작자가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대출금 형식의 타인자본의 형태로 조달될 수 있다. 제작자 본인의 노무는 자기자본으로 본다.

③ 제작자 본인의 노무란 제작자, 임원, 감독, 주연배우 또는 카메라맨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영화제작에 기여하는 일을 말한다. 소설, 시나리오 또는 영화음악처럼 제작자가 영화제작에 이용하는 자기 자신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도 제작자 본인의 노무로 본다. 제작자 본인의 노무는 일반적인 시장가격 수준으로 환산하여 재정운용계획에 소명되고 영화진흥공사가 승인한 비용 기준으로 100분의 10까지만 산입될 수 있다.

④ 자기분담분은 제작자 본인의 노무에 대한 통상적인 시장가격의 반대급부이거나 제2항에서 말하는 타인자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기금지원이나 공적 진흥프로그램에 근거한 기금지원 또는 공법상의 법인이나 하나 또는 다수의 공법상의 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법상의 법인으로부터의 기금지원을 통하여 조달될 수 없다. 방송국이 텔레비전이용권을 영화제작 이전에 취득하고 그 비용 지급을 서면으로 약속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반대급부가 행해진 것으로 본다. 이러한 텔레비전이용권에 대한 반대급부를 영화진흥공사로

## 부 록

부터 승인된 재정운용계획상의 비용에 산정함으로써 자기분담분이 100분의 10 이하로 내려가게 해서는 아니된다.

⑤ 영화진흥공사는 신청에 의하여 제작자의 처음 2편의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해서 제4항 제1문에 대한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⑥ 영화진흥공사는 제작비용이 전년도에 제32조에 의한 지원을 받은 영화제작계획의 평균의 2배를 초과할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제1항 제1문과 제2항 제3문에 대한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 제35조 (삭제)

제36조 [지원예정확인] ① 영화진흥공사는 시나리오, 제작진과 배역 명부 및 비용과 자금조달 계획에 근거하여 자금조달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영화제작계획에 대해서도 기금이 지원될 예정임을 확인해 줄 수 있다(지원예정확인). 지원예정확인은 서면으로 한다. 제33조 제3항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② 지원예정확인은 자금조달이 확실해 졌다는 사실이 6개월 내에 입증되지 않거나 지원예정확인의 전제조건이 존재하지 않거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 취소된다.

제37조 [지급거부] ① 영화진흥공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진흥기금의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영화제작계획을 위한 합법적인 자금조달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2. 신청인이 이미 이 법에 따른 진흥기금을 통해 자금이 조달된 추천 영화 또는 영화제작계획의 자금조달 및 제작과정에서 또는 영화의 배급, 판매나 비디오판매와 관련하여 경영관리의 근검성 원칙을 침해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영화 진흥의 경우 제작자가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1인 회사의 유일한 사원이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이고 납입된 기본자본이나 종자본이 100,000 유로 미만인 경우

② 제1항 제2호 규정은 그에 따른 지급거부 사유가 발생한 후 5년 이상이 경과된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38조 [최종심사] ① 영화진흥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영화의 내용이 제출된 시나리오와 본질적으로 일치하는지 여부
2. 영화의 제작진과 배역이 제출된 명부와 근본적으로 합치하는지 여부
3. 영화가 극의 구성, 연출, 연기력, 영상연출 그리고 편집을 고려할 때 독일영화의 품질 개선에 기여하기에 적합한지 여부
4. 영화가 제19조에 위반하지 않는지 여부
5. 영화가 제15조, 제16조 그리고 제18조의 요건에 상응하는지 여부

② 제작자는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화진흥공사에 심사용 복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영화진흥공사는 제작자가 자신으로부터 연유하지 않은 이유로 인하여 기한을 준수할 수 없음을 소명하는 때에는 그 제출기한을 최대한 1년간 연장해 줄 수 있다.

제39조 [대출금의 상환] ① 대출금은 영화를 통한 제작자의 수익이 영화진흥공사로부터 승인된 영화제작비용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면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그 초과수입분의 100분의 10은 우선적으로 상환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영화를 통한 제작자의 수익이 영화진흥공사로부터 승인된 영화제작비용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면, 그 초과수입분의 100분의 20을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영화를 통한 제작자의 수익이 영화진흥공사로부터 승인된 영화제작비용을 초과하면 대출총액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그 초과수입분의 100분의 50을 상환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영화진흥공사 뿐 아니라 주정부영화진흥기금으로부터도 지원을 받은 영화의 경우에는, 영화를 통한 제작자의 수익이 영화진흥공사로부터 승인된 영화제작비용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면, 영화진흥공사와 주정부영화진흥기금으로부터의 대출금을 그 비율에 따라 동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영화진흥공사는 제작자가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자기분담분을 가지는 경우 더 유리한 상환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② 나아가 대출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상환되어야 한다.

1. 영화가 제38조 제1항의 요건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 부 록

2. 제작자가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제작자가 진흥기금의 목적에 상응하는 사용을 입증하지 않은 경우
  4. 기금이 본질적으로 중요한 조건에 관한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지급된 경우
  5. 제작자가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제25조 제4항에 따라 부과된 조건이 지켜지지 아니하는 경우
- ③ 제29조 제2항의 규정은 본 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 ④ 제작자는 제1항에 따라 상환된 금액이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새 영화의 제작을 위해 그에게 다시 지급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천영화의 진흥에 관한 규정, 특히 제28조 제4항을 준용한다.
- ⑤ 영화의 첫 상영 이후 5년이 경과하면 상환의무는 소멸한다.

## 제40조 (삭제)

### 제 3 관 단편영화의 진흥

- 제41조 [진흥기금] ① 영화진흥공사는 상영시간이 최대한 15분을 넘지 않는 영화 및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영화의 제작자에게 영화가 청소년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등급을 부여받고, 나아가 비스바덴 영화평가소의 인증을 받거나, 등급 판정 후 2년 이내에 독일 단편영화상, 영화진흥공사 단편영화상, 프리드리히-빌헬름-무르나우 단편영화상 또는 독일경제영화상을 받거나 관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규정된 상을 받거나 영화제에서 성과를 올리게 되면 진흥기금을 지급한다. 감독이 처음 단독으로 감독책임을 지는 영화이거나 대학교에서 제작된 영화인 경우에는 상영시간이 15분 이상 45분 이하이더라도 제1문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은 본 항의 경우에 준용된다.
- ② 단편영화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받을 자격을 갖춘 모든 영화에 동일하게 배분한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제42조 [신청] ① 진흥기금은 신청에 의해 지급된다. 신청권자는 제작자이다. 제작자가 공법상의 법인이나 하나 혹은 여러 공법상의 법인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참가한 사법상의 법인인 때에는 신청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 신청은 늦어도 해당 영화의 수상 연도 다음 해의 12월 31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수상 연도 다음 해의 1월 31일 이후에 이루어진 신청에 대해서는 그 다음 해에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신청서에는 제41조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 제43조 (삭제)

제44조 [승인, 지급] ① 진흥기금 승인 결정은 늦어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다.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1문의 기간보다 앞서서 미리 승인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지급에 대해서는 제2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 [기금사용] 제작자는 진흥기금에 대한 지급승인 이후 2년 내에 제15조 또는 제16조상의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새 영화의 제작, 상영 시간 15분 이내의 단편영화의 제작, 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는 새 어린이 영화의 제작 또는 제15조 제2항이나 제16조상의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새 영화의 제작에 전액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장은 신청에 의해 기금이 소품 조달, 시나리오 작성이나 개발 기타의 방법으로 새 영화를 준비하는 데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46조 [기금반환] ① 제작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진흥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제작자가 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2. 기금이 제19조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영화의 제작에 사용된 경우

3. 기금이 본질적으로 중요한 조건에 관한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지급된 경우

② 제29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 4 관 시나리오의 진흥

제47조 [진흥기금] ① 영화진흥공사는 해당 시나리오가 독일 영화의 수준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영화의 시나리오 제작을 위한 기금을 시나리오 작가에게 지급한다. 시나리오가 다른 기구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② 시나리오에 대한 진흥기금은 보조금 형식으로 최대한 25,000 유로까지 지급된다. 특별한 경우에는 50,000 유로까지 지원될 수 있다.

③ 영화진흥공사는 시나리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추가적인 지원금으로 30,000 유로까지 제작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2조 제4항의 규정은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8조 [신청] ① 진흥기금은 신청에 의해 지급된다. 제47조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대한 신청권은 작가와 제작자가 공동으로 가지며, 제47조 제3항에 따른 지원에 대한 신청권은 제작자가 가진다.

② 신청서에는 제작계획에 대한 설명(대화장면 방식으로 묘사한 요약 설명)이 첨부되어야 하고, 제47조 제3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시나리오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49조 [승인·지급] 진흥기금은 지급승인 이후에 절반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시나리오의 심사 및 인수 후에 지급한다.

제50조 [시나리오의 사용] 진흥기금의 지원을 받는 신청자는 해당 시나리오를 제15조, 제16조 또는 제16a조상의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영화의 제작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시나리오를 영화제작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제51조 [최종심사] ① 영화진흥공사는 시나리오가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과 본질적으로 일치하는지를 심사한다.

② 신청자는 자신이 작성한 시나리오를 신청서에 기재된 완성일이 경과한 후에 심사용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 제2항 제2문의 규정은 본 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2조 [반환] ① 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반환되어야 한다.

1. 제51조 제1항의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신청자가 제51조 제2항 제1문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기금이 본질적으로 중요한 조건에 관한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승인 또는 지급된 경우
  4. 시나리오가 제50조에 반하여 사용된 경우
- ② 제29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 2 절 판매의 진흥

제53조 [판매의 진흥] ① 독일극장에서 첫 상영 이후 1년 이내에 100,000 점의 추천점수를 획득한 제15조, 제16조 또는 제16a조상의 영화 배급자에게는 제15조, 제16조 또는 제16a조상의 새 영화의 배급을 위한 진흥기금이 보조금으로 지급된다. 추천점수는 제22조 제1항 제2문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② 영화제에서의 성과와 수상을 참작할 경우에는 제22조와 제23조를 준용한다.

③ 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1. 복사본 제작과 광고비와 같은 사전비용
2. 이례적이거나 영화산업 측면에서 모범적인 광고를 위한 비용
3. 어린이 영화 판매를 위한 특별 비용

부 록

- 4. 기존 판매 시장의 확장과 새로운 시장의 개발을 위한 비용
- 5. 판매를 개선하기 위한 계약상 합의된 공동작업을 위한 비용
- 6. 근본적인 경영합리화 조치를 위한 비용

④ 제22조 제2항 제2문과 제23조 제1항 제4문은 본 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⑤ 진흥기금의 계산에는 최대한 600,000 명의 입장객 수와 최대한 1,200,000 점의 추천점수가 산입될 수 있다. 추천영화 판매의 진흥을 위해 할당된 금액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배급자에게 개별 영화의 추천점수의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제53a조 [프로젝트 진흥] ① 영화진흥공사는 제15조, 제16조 또는 제16a조상의 영화의 배급이나 판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 충당을 비롯하여 필요에 따라 진흥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복사본 제작과 광고비와 같은 사전비용 또는 예외적인 경우에 국외 판매를 위한 복사본 제작 비용
- 2. 복사본 제작, 복사본의 자막 제작, 국외판매를 위한 외국어판의 제작 또는 이례적이거나 영화산업 측면에서 모범적인 광고를 위한 비용
- 2a. 어린이 영화 판매를 위한 특별 비용
- 3. 기존 판매 시장의 확장과 새로운 시장의 개발을 위한 비용
- 4. 판매를 개선하기 위한 계약상 합의된 공동작업을 위한 비용
- 5. 근본적인 경영합리화 조치를 위한 비용

②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2a호의 진흥기금은 조건부로 상환이 가능한 무이자 대출금으로 지급된다. 제1항 제1호에 따른 대출금의 최고액수는 600,000 유로로 하며, 제1항 제2호와 제2호a에 따른 대출금의 최고금액은 150,000 유로로 한다.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조치를 위한 보조금의 최고액수는 100,000 유로 그리고 이를 위한 대출금의 최고액수는 300,000 유로로 한다. 예외적인 경우에는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조치를 위하여 해당 소위원회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대출금 대신 200,000 유로까지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대출금의 만기는 5년 이하이다.

- ③ 프로젝트영화 진흥지원을 신청한 영화제작계획과 관련하여 신청 당시에 이미 배급자가 프로젝트에 적절하게 참여함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프로젝트영화 진흥에 대한 결정 시점에 150,000 유로 이하의 판매 진흥을 위한 지원이 예정되어 있음을 미리 확인해 줄 수 있다.
- ④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2호a에 따른 기금지원의 경우에 자기분담분은 신청자의 능력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며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 ⑤ 제32조 제4항의 규정은 본 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 ⑥ 판매진흥 지원은 이를 위해 설정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제3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영화나 국가간의 배급에 관한 조약의 규정에 의거하여 유럽공동체 내의 다른 국가에서 또는 그 외의 다른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에 대해서도 그 상호성이 담보되는 한 이루어질 수 있다.
- ⑦ 제1항 제3호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비용은 제68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지원액의 100분의 20까지 사용할 수 있다. 배급업, 비디오업 또는 극장업의 조합 사이에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영화진흥공사의 사장이 개별 사안에 대하여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제53b조 [비디오산업의 프로젝트 진흥] ① 영화진흥공사는 제15조, 제16조 또는 제16a조상의 영화가 녹화된 영상매체의 판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 충당을 비롯하여 필요에 따라 진흥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작비용
2. 이례적이거나 모범적인 광고를 위한 비용
3. 외국어판 제작비용
4. 어린이 영화 판매를 위한 특별 비용
5. 기존 판매 시장의 확장과 새로운 시장의 개발을 위한 비용
6. 판매를 개선하기 위한 계약상 합의된 공동작업을 위한 비용
7. 근본적인 경영합리화 조치를 위한 비용

제5호 및 제6호와 관련해서는 독일의 클래식영화와 일정 범위 내에서의 외국영화도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중점적 지원의 대상은 현재의 독일영화에 대한 광고이어야 한다.

② 제53a조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은 본 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항 제5호와 제6호에 따른 비용은 제67a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원액의 100분의 20까지 사용할 수 있다. 배급업, 비디오업 또는 극장업의 조합 사이에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영화진흥공사의 사장이 개별 사안에 대하여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제54조 [신청] ① 진흥기금은 신청에 의해 지급된다. 신청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3조에 따른 진흥기금의 경우 그 사무소를 유럽공동체 내의 다른 국가나 유럽경제공동체조약의 체결국가 내에 두고 있는 배급업자 또는 판매업자. 신청은 신청자가 영화진흥공사에 영화가 첫 번째 상영된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진흥기금을 신청할 뜻이 있음을 고지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25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본 호에 준용한다.

2. 제53a조 제1항에 따른 진흥기금의 경우 그 사무소를 유럽공동체 내의 다른 국가 또는 유럽경제공동체조약 체결국가에 두고 있는 제66a조상의 영화가 녹화된 영상매체의 배급업자나 판매업자

② 신청서에는 계획된 작업의 내용을 기재하고 비용계획과 자금조달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3a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작업의 경우와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제15조와 제16조의 요건도 입증되어야 한다.

제55조 [반환] ① 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반환되어야 한다.

1. 제작자가 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2. 기금이 본질적으로 중요한 조건에 관한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지급된 경우

② 제29조 제2항과 제39조 제5항의 규정은 본 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 3 절 영화상영의 진흥

제56조 [진흥기금] ① 영화진흥공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위하여 진흥기금을 지급한다.

1. 영화관의 현대화와 시설개선 또는 산업구조개선을 위한 영화관 신설
2. 영화관 부문의 모범적이고 새로운 시도의 구현
3. 계약상 합의된 영화관의 공동작업
4. 영화관 자문
5. 인구 20,000 명 정도의 지역이나 지역의 일부에서의 상영을 위한 영화 복사본의 제작

② 진흥기금은 보조금으로 지급되며, 활용가능한 기금액의 100분의 50까지는 모든 신청자에게 고루 분배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은 직전 회계연도에 각 신청자가 동원한 관객 수의 비율대로 분배한다. 문화와 대중매체를 관할하는 연방정부 담당관이 수여하는 극장프로그램상을 받거나, 직전 회계연도에 제15조 제2항 또는 제16조에 따른 영화 상영을 통하여 독일영화 관객 시장점유율의 2배의 가치를 획득한 영화관의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관람객 수를 2배로 계산한다. 제2문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 영화관의 경우에는 관람객 수를 4배로 계산한다. 기금은 회계연도가 경과한 후 3개월 이후에 지급된다.

③ 영화진흥공사는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해서는 무이자 대출금 형태로 그리고 제1항 제3호와 제4호의 조치를 위해서는 보조금 형태로 진흥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대출금은 일반적인 경우에 200,000 유로까지 그리고 제작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예상비용에 비추어 합당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50,000 유로까지, 10년 이하를 만기로 지급될 수 있다. 제1항 제3호에 따른 조치를 위한 보조금은 최대한 200,000 유로까지 그리고 제1항 제4호에 따른 조치를 위한 보조금은 최대한 5,000 유로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 제4항의 규정은 본 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영화상영 진흥을 관장하는 소위원회는 신청에 의해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급되는 대출금이 일반 상영장의 디지털 영화상영장으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보조금으로 전환해 줄 수 있다.

④ 영화진흥공사는 제1항 제5호를 위한 지원금을 보조금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지원대상 영화와 영화관의 선정 및 복사본의 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영화진흥공사가 지침으로 정한다. 제63조 제2항의 규정은 본 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6a조 [비디오대여업소의 진흥] ① 영화진흥공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위하여 진흥기금을 지급한다.

1. 형법 제184조 제1항 제3a호와 청소년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인에게만 출입이 가능한 곳을 제외한 비디오대여업소의 현대화와 시설개선 또는 산업구조개선을 위한 비디오대여업소의 신설
2. 비디오대여업소에서 특별히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적합한 비디오가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
3. 제1호 규정에 의한 비디오대여업소 부문에서의 모범적이고 새로운 시도의 구현
4. 제1호 규정에 의한 비디오대여업소 부문에서의 계약상 합의된 공동작업
5. 비디오대여업소에 대한 자문

② 영화진흥공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조치를 위해서는 무이자 대출금 형태로 그리고 제1항 제4호와 제5호의 조치를 위해서는 보조금 형태의 진흥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대출금은 일반적인 경우에 50,000 유로까지 그리고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예상비용에 비추어 합당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0,000 유로까지, 10년 이하를 만기로 지급될 수 있다. 제1항 제4호에 따른 조치를 위한 보조금은 최대한 25,000 유로까지 그리고 제1항 제5호에 따른 조치를 위한 보조금은 최대한 2,500 유로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 제4항의 규정은 본 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7조 [신청] ① 진흥기금은 신청에 의해 지급된다. 신청권자는 영화관이나 비디오대여업소를 경영하는 자이다. 제56조 제1항 제3호와 제56a조 제1항 제4호의 경우 동업자도 공동으로 신청권을 가진다. 제2

문과 제3문의 규정은 유료로 그러나 비영업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자에게 준용된다.

② 신청서에는 계획된 조치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비용계획과 자금조달계획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제56조 제2항과 제56a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은 신청자가 영화진흥공사에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내에 진흥기금을 신청할 뜻이 있음을 고지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58조 [반환] ① 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반환해야 한다.

1. 제작자가 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2. 기금이 본질적으로 중요한 조건에 관한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지급된 경우

② 제29조 제2항의 규정은 본 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 4 절 그 밖의 진흥조치

제59조 [재교육 진흥] ① 영화진흥공사는 영화계의 예술, 기술 그리고 영업 부문 신진인력의 재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흥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진흥기금은 교육주체에게 보조금으로 지급될 수 있다. 재교육이 높은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교육주체 이외의 신청자에게도 보조금 형태나 전체적 또는 부분적인 대출금 형식으로 지급될 수 있다.

③ 영화진흥공사는 기금지원의 종류와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지침으로 정한다. 제63조 제2항의 규정은 본 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④ 제32조 제4항의 규정은 본 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60조 [연구·합리화와 개혁 진흥] ① 영화진흥공사는 영화부문의 연구, 합리화 및 혁신을 위한 목적으로 진흥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른 진흥기금은 이 법의 다른 규정에 의한 지원이나 다른 공적 자금의 지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지급될 수 있다.

부 록

- ② 영화진흥공사는 제1항에 따른 진흥기금의 종류와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지침으로 정한다. 제63조 제2항의 규정은 본 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 ③ 제32조 제4항의 규정은 본 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61조 [신청] ① 제59조와 제60조에 따른 진흥기금은 신청에 의해 지급된다. 신청권자는 본 절의 진흥조치를 실행할 의사가 있고 이를 실행하기에 적합한 자이다.

- ② 신청서에는 실행에 옮길 진흥조치의 내용, 목적 및 그 실행의 종류와 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비용계획과 자금조달계획은 조치의 종류와 범위에 따라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첨부되어야 한다.

제62조 [반환] ① 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반환해야 한다.

1. 제작자가 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2. 기금이 본질적으로 중요한 조건에 관한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지급된 경우
- ② 제29조 제2항의 규정은 본 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5 절 일반 절차규정

제63조 [절차규정] ① 영화진흥공사는 신청요건과 이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신청기간 및 첨부된 입증자료의 발급시기, 종류 그리고 형식 등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지침은 경영관리의 근검성의 원칙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지침의 제정은 관리위원회에서 3분의 2 다수결로 이루어지며 이는 최소한 위원 전체의 과반수이어야 한다. 지침은 문화와 대중매체를 관할하는 최고위 연방행정청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제64조 [결정권] ① 교부위원회는 제2항에 의거하여 사장이 결정권한을 가지는 경우가 아닌 한 프로젝트영화의 진흥(제32조 내지 제40조), 시나리오의 진흥(제47조 내지 제52조), 판매의 진흥(제53a조 내지 제55조), 영화상영의 진흥(제56조 내지 제58조) 그리고 그 밖의 진흥조치(제59조 내지 제62조)에 대하여 결정한다.

② 사장은 제22조 내지 제31조, 제37조, 제39조, 제41조 내지 제46조, 제52조, 제53조, 제55조, 제56조 제2항, 제58조 그리고 제62조의 경우에 대하여 그리고 제1항의 경우에 포함되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 결정한다. 또한 사장은 액수 20,000 유로 이하의 프로젝트 진흥 조치에 대하여 결정한다.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 제2항에 따른 기금지원에 대해서 승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사장의 통지가 있고 나서 2주 이내에 3인 이상의 이사가 서면으로 관리위원회의 결정을 그 위원장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가 사장을 대신하여 결정한다.

제65조 [이의제기에 대한 판단]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회 자체의 결정 및 제19조를 근거로 한 제22조와 제23조의 사항에 대한 사장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하여 판단한다. 사장의 결정에 대한 그 밖의 이의 제기에 대해서는 사장이 판단한다.

② 교부위원회는 위원회 자체의 결정과 소속 소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하여 판단한다.

③ 이의의 대상이 되는 결정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변경되어야 할 경우에 대한 결정은 그 이의의 대상이 되는 결정이 내려진 것과 동일한 다수의 결정으로 내려진다. 그와 같은 다수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가 기각된 것으로 본다.

### 제 3 장 재정 · 기금의 사용

#### 제 1 절 재 정

제66조 [영화부과금] ① 상영시간 58분 이상의 영화를 유료로 상영하는 자는 각 상영관별로 연간 이익이 75,000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각 상영관의 입장권 판매 이익으로부터 영화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영화부과금은 연간이익이 125,000 유로 이하인 경우 연간이익의 100분의 1.8, 연간이익이 200,000 유로 이하인 경우 연간이익의

부 록

100분의 2.4 그리고 연간이익이 200,000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연간 이익의 100분의 3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거한 연간이익의 등급분류는 전년도의 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이익이 전년도의 일부 기간 동안에만 있었던 경우에는 전년도의 월평균 이익에 12를 곱한 금액을 연간이익으로 한다. 전년도에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월간 이익을 기준으로 제2문의 방식에 따라 계산하여 연간이익의 등급을 정한다.

④ 영화부과금은 매월 각각 다음 달의 10일까지 영화진흥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영화상영자가 영화관의 임차인 또는 지상권자이고 영화상영을 통한 이익에 따라 임대료 또는 지료가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임대료 또는 지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이익금액을 영화부과금만큼 감액하여야 한다.

제66a조 [비디오산업의 영화부과금] ① 저작권자로서 상영시간 58분 이상의 영화를 수록한 영상매체를 독일연방공화국 내에서 임대나 도매를 통해 유통시키거나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프로그램공급자)는 자신의 이익에서 영화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교육, 취미, 직업 교육 및 여행 분야의 특별이익프로그램과 여러 음악작품을 연결하고 영상화한 영상매체에 대해서는 부과금 의무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저작권자로서 상영시간 58분 이상의 영화를 개별 전자통신 방식을 통해 유료로 상영하는 자에게 준용한다.

③ 영화부과금은 순이익이 30,000,000 유로 이하인 경우 순이익의 100분의 1.8, 순이익이 60,000,000 유로 이하인 경우 순이익의 100분의 2 그리고 순이익이 60,000,000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순이익의 100분의 2.3으로 한다.

④ 영화부과금은 매월 각각 다음 달의 10일까지 영화진흥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6b조 [결정에 대한 불복] 제66조와 제66a조에 따른 부과금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와 행정소송은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67조 [방송국과 민영텔레비전방송국의 부담금과 그 밖의 기부금] ① 공영방송국과 민영텔레비전방송국의 부담금 기타 납부금에 대해서는 영화진흥공사와 합의하여 정한다. 부담금은 제67b조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② 상영시간 58분 이상의 영화를 고정된 프로그램 내에서 시청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시청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상영하고 요금을 징수하는 상영자의 부담금 기타 부과의무에 대해서는 영화진흥공사와 합의하여 정한다.

③ 영화진흥공사는 기부목적이 제2조의 목적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기부자가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영화진흥공사의 수입으로 계상하고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제 2 절 수입의 사용

제67a조 [비디오산업의 영화부과금의 사용] ① 비디오산업의 영화부과금에 의한 영화진흥공사의 수입은 행정비용과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한 비용을 비례에 따라 공제한 후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100분의 20은 제53b조에 따른 영화가 수록된 영상매체의 판매 진흥을 위하여
2. 100분의 5는 제56a조에 따른 비디오대여업소의 진흥을 위하여
3. 100분의 7.5는 제53조에 따른 진흥을 위하여. 이 가운데 최소한 4분의 1은 국외 판매의 진흥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100분의 7.5는 제53a조에 따른 진흥을 위하여. 이 가운데 최소한 4분의 1은 국외 판매의 진흥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그 외의 수입은 제6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67b조 [방송국과 민영텔레비전방송국의 부담금의 사용] ① 방송국과 민영텔레비전방송국의 부담금에 의한 영화진흥공사의 수입은 행정비용과 제2조 제1항에 따른 과제의 실행을 위한 비용을 비율에 따라 공제한 후 프로젝트영화 진흥(제32조)을 위하여 영화공사와 체결하는 협약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방송국과 민영텔레비전방송국은 영화진흥공사와의 협약을 통해 그 제작계획의 내용이 독일 텔레비전프로그램의 품질과 시청자의 인기를 증대시키기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고품질 텔레비전방송에 적합한 프로젝트영화, 다큐멘터리 그리고 어린이영화를 제작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100분의 25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지원금은 프로젝트 진흥, 시나리오 진흥 또는 개발 진흥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8조 [진흥의 종류에 따른 지원금의 분배] ① 영화진흥공사의 수입은 제67a조와 제67b조에 따른 사전공제를 고려하고 행정비용과 제2조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비율에 따라 공제한 후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100분의 48.5는 추천영화 진흥(제22조)을 위하여
2. 100분의 6은 프로젝트영화 진흥(제32조)을 위하여
3. 100분의 2는 단편영화 진흥(제41조)을 위하여
4. 100분의 2는 시나리오 진흥(제47조)을 위하여
5. 100분의 10은 제56조 제2항에 따른 진흥, 100분의 8은 제56조 제3항에 따른 진흥을 위하여 그리고 100분의 2는 제56조 제4항에 따른 진흥을 위하여
6. 100분의 10은 제53조에 따른 진흥을 위하여. 그 가운데 최소한 4분의 1은 국외판매 진흥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7. 100분의 10은 제53a조에 따른 진흥을 위하여. 그 가운데 최소한 4분의 1은 국외판매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8. 100분의 1.5는 재교육의 진흥과 그 밖의 조치(제59조와 제60조)를 위하여

- ②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수입 및 과소 지출로 인하여 남는 금액은 그 퍼센트 비율에 따라 제1항과 제67a조에 규정된 조치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③ 대출금 상환을 통해 유입되는 자금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목적분야의 기금으로 적립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예외는 관리위원회가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재량범위 안에서 결정한다.
- ④ 국제 공동제작에 대한 자본참가의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진흥을 위해서 각 진흥 부문에 배당된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사용할 수 없다. 사용되지 않은 기금은 제1항 제1호의 기금으로 다시 적립되어야 한다.
- ⑤ 제32조 제6항에 따른 진흥을 위해서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100분의 25 이상을 사용할 수 없다. 사용되지 않은 기금은 제1항 제2호의 기금으로 다시 적립되어야 한다.
- ⑥ 제53a조 제6항에 따른 진흥을 위해서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사용할 수 없다. 사용되지 않은 기금은 제1항 제6호의 기금으로 다시 적립되어야 한다.

제68a조 [그 밖의 과제를 위한 사용] 영화진흥공사의 수입에서 100분의 12 이상이 제2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제69조 [관리위원회의 권한] ① 진흥기금의 전반적인 운용 및 각 진흥 부문별 기금 배분과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한 결정권한은 관리위원회에 속한다. 제67조에 의거하여 조성된 기금은 사용목적이 이를 명백히 허용하는 경우에 그 한도 내에서만 관리위원회가 결정권한을 가진다.

- ② 관리위원회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제67a조, 제67b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액 전체의 범위 내에서 제68조 제1항의 백분율을 100분의 25까지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재량범위). 연방 예산에서 영화진흥공사에 동일한 진흥목적에 위한 기금이 조성된 경우에는 제68조 제1항의 백분율은 100분의 20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모든 편차는 다른 항목의 편차 범위 안에서 조정되어 평형을 이루어야 한다.

③ 관리위원회는 사용되지 않은 기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의 동일한 진흥목적 항목으로 이월할 수 있다. 이월은 이를 통해 제67a조, 제67b조 및 제68조에 따른 각각의 개별 진흥목적에 위한 기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상향조정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영화진흥공사의 수입으로 계상하고 제67a조, 제67b조 및 제68조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정은 3분의 2 다수결로 이루어지며 이는 최소한 위원 전체의 과반수이어야 한다.

## 제 4 장 신 고

제70조 [보고] ① 이 법에 따라 영화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하거나 진흥기금을 수령한 자는 영화진흥공사에 그리고 연방경제수출관리청에 확인서를 신청한 자는 연방경제수출관리청에 이 법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1. 사무소나 거주지의 신설, 이전 및 폐지
2. 부과금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의 이익. 이 경우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소명하여야 한다.
3. 각 개별 국내 상업 영화에 대한 통상적인 시장가격을 지불한 유료 입장객의 수
4.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영화의 경우 비용과 매상.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신고는 영화진흥공사나 연방경제수출관리청의 요청에 따른다.

③ 제2항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신고는 매월 각각 다음 달의 10일까지 서면으로 그리고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항 제4호에 따른 매상에 대한 신고는 반기를 단위로 각 반기가 종료된 후 2개월 내에 한다.

④ 영화진흥공사에 의해 영업감독을 위임받은 자는 영업시간 또는 개장시간 동안 신고의무자의 토지, 영업장 및 점포에 들어가서, 시찰과

검사를 하고 신고의무자의 영업서류를 열람할 권한을 가진다.

⑤ 법인과 상사회사의 경우에는 법률, 회사계약 또는 정관에 따라 대표로서의 권한을 가지는 자나 그 수임자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수인하여야 한다.

⑥ 신고의무자는 자신의 신고가 자신이나 민사소송법 제38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친족으로 하여금 형사소추나 행정벌 부과에 위협에 처하도록 할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문제에 대한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⑦ 신고의무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화진흥공사는 영화부과금의 책정을 위한 사실확인을 추정에 의하여 할 수도 있고 지급된 진흥기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

⑧ 개별 신고내용은 문화와 대중매체를 관할하는 최고위 연방행정청의 요청에 따라 신고의무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상태에서 그에게 제공될 수 있다. 특정 영화의 국내 전체 또는 주에서의 관람객 수는 공표되어도 좋다.

제71조 [진흥보고서] 영화진흥공사는 제70조에 따른 신고 내용을 종합하여 매년 진흥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문화와 대중매체를 관할하는 최고위 연방행정청에 제출한다.

제72조 (삭제)

## 제 5 장 경과규정 및 부칙

제73조 [경과규정] ① 이 법에 따른 청구권으로서 2004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던 규정이 적용된다.

② 이 법 시행시 계속 중인 행정절차도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던 규정에 따라 규율된다.

부 록

- ③ 2003년 12월 31일 당시 임기 중인 관리위원회의 임기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2004년 1월 1일 이후 첫 번째 소집되는 관리위원회의와 함께 종료된다.
- ④ 추천영화가 2003년 1월 1일과 2004년 1월 1일 사이에 첫 번째로 상영되었거나 자발적 자기통제에 의해 사용이 허용된 경우에도 추천영화 진흥 지원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다.
- ⑤ 2004년 1월 1일 당시 임기 중인 교부위원회나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7조 제3항 혹은 제8a조 제2항 제2문에 따른 재임명에서 고려된다.

제74조 [UFI-특별자산의 이양] 1974년 5월 6일에 공포(연방법률공보 I, 1074면)되고 1978년 12월 11일에 개정(연방법률공보 I, 1957면)된 영화진흥법 제26조에 따른 “UFI-청산금” 특별자산은 영화진흥공사에 이양되고 소멸된다. 이양으로부터의 수입과 소득은 제68조 제3항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제75조 [영화진흥의 종료] ① 영화부과금의 징수는 2008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② 제22조, 제23조 그리고 제41조에 따른 진흥기금은 추천영화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첫 상영된 경우에만 지급된다. 제32조, 제47조, 제53조, 제53a조, 제53b조, 제56조, 제56a조 그리고 제59조에 따른 진흥기금은 2008년 회계연도에 마지막으로 지급된다.

③ 제22조, 제23조, 제41조 그리고 제53조에 따른 진흥기금에 대한 신청은 2009년 3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다큐멘터리영화와 어린이영화에 대한 지원 신청은 2012년 3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32조, 제47조, 제53a조, 제53b조, 제56조, 제56a조 그리고 제59조에 따른 진흥기금의 지급에 대한 신청은 2008년 9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④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영화에 대한 진흥기금의 지급에 대한 마지막 신청에 대해서 결정이 있고 나서, 영화진흥공사의 자산과 채무는 독일

연방공화국에 이양된다. 그 시점은 문화와 대중매체를 관할하는 최고 위 연방행정청에 의해 연방공보에 공지된다. 연방경제수출관리청은 영화진흥공사가 끝맺지 못한 나머지 과제를 수행한다. 영화진흥공사의 남은 자산은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제76조 (삭제)

제77조 [시행일] 2003년 12월 22일에 제정된 제4차 영화진흥법 개정법 제3조 참조.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참고문헌

### [국 내]

- 김문현, 영화에 대한 검열의 허용여부 및 검열의 개념, 고시연구 제26권 제9호, 1999. 9.
- 김수갑, 영화 사전심의제에 대한 위헌결정과 앞으로의 과제, 법학논집 (고려대학교법학연구소) 특별호, 1997.
- 김수일, 저작권법상의 영상저작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서울대), 1989.
- 김종원, 영화 검열과 표현의 자유, 시민과 변호사(통권 제66호), 1999. 7.
- 남궁승태, 영화에 대한 등급보류와 표현의 자유, 아·태공법연구 제6집, 1999.12.
- 문병록, 영화와 비디오의 함수관계, 영화 118, 1988년 5월
- 박선영,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의 위헌 여부, 법조 제45권제12호(통권 483호), 1996.12.
- 박성호,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규정의 해석상 몇가지의 문제점, 계간 저작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2. 가을호.
- , 현행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 계간 저작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1. 여름호.
- 방석호, 영상저작물 이용을 둘러싼 계약과 저작권법, 계간 저작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9. 여름호.

참 고 문 헌

- 박용상, 영화에 대한 사전검열의 금지 : 헌법재판소1996. 10. 4. 93  
헌가13등 결정, 재판의 한 길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화갑기념  
논문집), 박영사, 1998.
- 박원형, 영상저작물의 이용과 귀속, 계간저작권 1988. 여름호.
- 오승중, 시각적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판단(상), 계간 저작권, 저작권심의  
조정위원회, 2004. 가을호.
- 이영일, 영화개론, 상영문화사, 1964.
- 영화진흥위원회(편), WTO 뉴라운드 시대의 문화의 대응전략(연구보고  
2002-5), 2002.
- , 미주 및 유럽의 영화정책에 관한 연구(정책연구보  
고 2001- 2), 2002.
- 유지나, 영화 사전심의 위헌판결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보(통권  
제362호), 1996. 12.
- 임지봉, 출판물과 연극·영화·비디오물의 음란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법조 제49권제6호(통권 제525호), 2000.06.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 융합에 대비한 방송발전방안 수립,  
1999.
- 정연주, 영화상영등급분류보류와 언론·출판의 자유 - 헌재결 2001.8.  
30, 2000헌가9 영화진흥법 제21조 제 4 항 위헌제청사건을 중  
심으로 -, 헌법판례연구, 2003.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독일 저작권법, 저작권관련자료집 45, 2004.
- , 미국 저작권법, 저작권관련자료집 4, 1989.
- 최명기, 시청각 실연의 보호에 관한 연구, 계간 저작권, 저작권심의조  
정위원회, 1998. 12.

- 최현호,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상), 계간 저작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2. 봄호.
- ,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하), 계간 저작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2. 여름호.
- 현대호, 청소년보호법상의 매체물에 관한 개선방안, 현안분석(한국법제연구원), 2005.
- 홍성방, 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위헌 결정,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 황적인,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해석, 계간 저작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88. 봄호.
- 황적인·정순희·최현호, 저작권법, 법문사, 1988.
- 허희성, 신저작권법촉조개설, 법우사, 1988.

## [ 외 국 ]

### ◇ 미 국

- Barry J. Brett & Michael D. Friedman, A Fresh Look at the Paramount Decrees, 9 Ent. & Sports Law. 1 (1991).
- Howard M. Frumes, Surviving Titanic: Independent Production in an Increasingly Centralized Film Industry, 19 Loy. L. A. Ent. L. J. 523 (1999).
- Lance Simmens, Motion Picture Production: To Run or Stay Made in the U.S.A., 21 Loy. L. A. Ent. L. Rev. 357 (2001).

참 고 문 헌

Leon H. Keyserling, The New Deal and Its Current Significance in re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Policy, 59 Wash. L. Rev. 795 (1984).

Monica Karlene Douglas, Florida Legislates Its Slice of the Hollywood Pie: A Comparison of International Incentives for Film Production, 2 Transnat'l L. & Pol'y 307 (1993).

Richard P. Salgado, Regulating a Video Revolution, 7 Yale L. & Pol'y Rev. 516 (1989).

Stanley I. Ornstein, Motion Picture Distribution, Film Splitting, and Antitrust Policy, 17 Hastings Comm. & Ent. L. J. 415 (1995).

California Film Commission, Film California First Program-Overview and Guidelines, 2002.

◇ 독 일

Bermanseder, Markus, Wann sind Mediendienste dem Rundfunk zuzuordnen?, ZRP 30(1997), S. 330ff.

Engel-Flehsig, Stefan, Das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gesetz des Bundes und der Mediendienstestaatsvertrag der Bundesländer, ZUM 41(1997), S. 231ff.

Engel-Flehsig, Stefan/Maennel, Fritjof/Tettenborn, Alexander, Das neue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dienste-Gesetz, NJW 50(1997), S. 2981ff.

- Homman, Hans-Jürgen, Praxishandbuch Filmrecht, Berlin u.a. 2. Aufl. 2004.
- Hoffmann-Riem, Wolfgang, Der Rundfunkbegriff der Differenzierung kommunikativer Dienste, AfP 28(1996), S. 9ff.
- Hönge, Folker, Kriterien für die Jugendprüfung, <http://www.spio.de/2FRAMES/FSK/FSK4.HTM>
- Isensee, Josef/Kirchhof, Paul, Handbuch des Staatsrechts VI, Heidelberg 1989.
- Pieroth, Bodo/Schlink, Bernhard, Grundrechte Staatsrecht II, Heidelberg 18. Aufl. 2002.
- Ricker, Reinhart/Schiwy, Peter, Rundfunkverfassungsrecht, München 1997.
- Sachs, Michael, Verfassungsrecht II - Grundrechte, Berlin u.a., 2. Aufl. 2002.
- Starck, Christian, Zur notwendigen Neuordnung des Rundfunks, NJW 33 (1980), S. 1359ff.
- v. Hartlieb, Horst, Handbuch des Film-, Fernsehen- und Videorechts, München 3. Aufl. 1991.
- Viktor, Janik, Der deutsche Rundfunkbegriff im Spiegel technischer Entwicklung, AfP 31(2000), S. 7ff.

◇ 일 본

奥平康弘, 映畫と言論の自由, ジュリスト (임시증간 295-2호), 1964.04.

참고문헌

判例タイムズ社, 映畫の猥褻性の特色の有無, 判例タイムズ (21卷1號 (240)), 1970.01.

-----, 映倫の審査を通過した映畫が刑法17條にいうわいせつの圖畫に當らないとされた事例, 判例タイムズ(31卷 22號 (420)), 1980.10.

小田 滋, 映畫とラジオ : アメリカにおける言論の自由, ジュリスト(19號), 1952.10.

戸松 秀典, 映畫と言論の自由, 別冊 ジュリスト.

福井健策, 映畫『ビッグバン』の法的諸問題, 日米比較の視点による映畫製作・配給システムに關する法的考察. 1, NBL(662號), 1999.04.

宮澤浩一, 映畫倫理の自主規制機關である映倫管理委員會の審査を通過した一般劇場公開用の映畫について, 當該映畫は, 刑法175條にいうわいせつ圖畫に當らないとされた事例 : 日活ロマンポルノ映畫事件第1審判決. 判例時報 (925號), 1979.07.

村上政博, 特許ライセンスの日米比較(第3版), 弘文堂, 2000.